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제2호



2021. 1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제2호

2021.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2021년 조세행정 동향

I 서문(introduction) / 4

II 역할(responsibilities) 및 징수(collection) / 6

1. 조세행정당국(tax administrations)의 역할 6
2. 세수징수액(revenue collections) 8

III 등록(registration) 및 신원확인(identification) / 10

1. 등록 수준 10
2. 등록 채널 11
3. 타 정부기관과의 통합 12
4. 신원확인 관리 12
5. 국경을 넘어선 신원확인 13

IV 조세행정 평가(assessment) / 15

V 서비스(services) / 18

1. 서비스 수요관리 18

CONTENTS

2. 온라인 서비스 개발	20
3. 비디지털 서비스	25
4. 결합 서비스	26
5. 행동 통찰의 적용	27

VI 검증(verification) 및 의무 이행(compliance) 관리 / 29

1. 의무 이행 위험관리	29
2. 적용범위(coverage) 및 결과	34
3. 세무조사(audit) 업무의 가상환경 이전	35
4. 조세범죄 조사(investigation)	37

VII 징수(collection) / 39

1. 채권 징수 기능의 특징	39
2. 미납채권 징수 실적	41
3. 예방적(preventive) 접근	43
4. 코로나19 팬데믹 관점에서의 채권 징수	44

VIII 분쟁(disputes) / 45

1. 분쟁 예방(prevention)	45
2. 분쟁 해결(resolution) 검토 장치(review mechanism)	46
3. 분쟁 해결의 수행	47

IX 예산(budget) 및 인력(workforce) / 49

1. 예산 및 정보통신기술(ICT)	49
2. 인력	51

목 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55

- 1. 미국 55
 - 가. '휴가기반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55
 - 나. 코로나19 대응 직원 유지 크레딧에 대한 지침 공지 56
 - 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이 담긴 조세개혁 패키지 승인 57
 - 라. 디지털 서비스세에서 새로운 다자간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관한 합의 발표 58
 - 마.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2022년도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58
 - 바. 슈퍼펀드 화학세에 관한 고시 발표 61
- 2. 캐나다 62
 - 가. 2021년 예산법안 왕실 승인 62
 - 나. 특정 투자소득 신고서 제출에 대한 지침 발표 64
 - 다. 2022년 최대 연금 가능 소득 발표 66
 - 라.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법안 추진 67

II

유럽 / 69

- 1. 영국 69
 - 가. 특허박스 변경규정 적용유예기간(5년) 종료 69
 - 나. 불확실한 조세취급 보고규정 도입 70
 - 다. 보건사회돌봄세(HSC Levy) 도입 71
 - 라. 2021~22년 제2차 재정법안 발의 72
 - 마.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입장 확인 73

CONTENTS

2. 프랑스	74
가. 2022년도 예산안 발표	74
3. 독일	77
가. 경마복권법 개정안 공표	77
나. 2020~2021 조세정책 데이터 보고서 발간	78
다. 비협력 국가와의 지역 지정 시행령 공개	81
라. 코로나19 지원 세제 연장안 발표	82
4. 스페인	83
가.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표준 등 관보 게재	83
나.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세제지원 조치	84
다.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세항목 개정	85
라.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 조세 조치 시행	87
마. 2022년도 예산 초안 국회 제출	88
바.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개정	89
사. 전기세 감면 조치 연장	90
5. 그리스	90
가. 특정 섬에 대한 영구적인 부가가치세율 감면 공식 채택	90
나. 개인소득세의 감면기한 연장	91
다. 2022년도 예산 초안 국회 제출	92
6. 네덜란드	93
가. 코로나19 관련 세제혜택 연장에 관한 입장 발표	93
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과 관련된 Q&A 법령 발표	94
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95
라. 2022년 에너지세 추가 인하 법안 발표	96
마.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법안 채택	97
바. 2022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발표	98
7. 스위스	101
가.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101

목 차

나. 주택세 관련 법 개정안 제출	102
다. BEPS 글로벌 디지털세 실행 일정에 우려 표명	103
8. 스웨덴	104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104
9. 이탈리아	106
가. 코로나19 관련 관광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106
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대한 설명서 발행	107
10. 포르투갈	108
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연기	108
나. 2022년도 예산 초안 국회 제출	109
11. 아일랜드	113
가. 디지털세 국제합의에 유보 입장 표명	113
나. 2021년 코로나19 외 재정법안	115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116
라. 탄소세 인상 계획 이행 및 환경세 검토 예고	117
12. 노르웨이	118
가.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연장	118
나. 2022년 예산안 발표	118
13. 덴마크	121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121
14. 룩셈부르크	122
가. 지방사업세 결손금 이월공제 및 사회보장분담금 소득공제	122
나. 2022년도 예산안 및 조세계획 발표	123
15. 벨기에	124
가.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124
나. 탄소 배출 차량 관련 녹색화 법안 발의	125
다. 부가가치세 수정 법안 초안 발표	127

CONTENTS

16. 오스트리아	128
가. 치의산업 분야에서 250만유로 규모의 조세포탈 적발	128
나. 2022년 생태사회적 「조세개혁법」 발의	129
17. 핀란드	130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130
나. 2022년 예산안 세부사항 발표	131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33

1. 일본	133
가. 2020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발표	133
2. 중국	135
가.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발표	135
나. 주거용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발표	136
다. 성시유호건설세 세무행정 명확화 및 세제혜택 연장 발표	137
라.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간예납액 납부유예 발표	138
마. 조세환경에 관한 연구 발표	138
3. 싱가포르	139
가. 재택근무 관련 자산의 세무처리 지침 발표	139
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중재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 발표	141
4. 인도	142
가. 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 추가 연장안 발표	142
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143
5. 인도네시아	144
가.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144
나. 국내 투자자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145
다. 세법 개정안 통과	145
라. 세법 개정안 대통령 비준	146

목 차

6. 호주	148
가. 무형자산 국제거래 실무이행지침 초안 공개	148
나. 라이프스타일 자산(Lifestyle assets) 세무조사	150
다. 2019~20 기업 조세 투명성 보고서 발행 개정안 통과	151
7. 뉴질랜드	152
가. 결제정보 기반 사업소득 검증 강화	152
나. 암호자산(cryptoassets)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정비	153
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관련한 조세 해석서 발행	154

IV

국제기구 / 157

1. OECD	157
가. 디지털세 필라 1·2 골격 국제합의 사실 발표	157
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현황보고서 발행	159
다. 디지털세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공개	160
2. EU	162
가.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제출	162
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법안 제출	164
다. BEPS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지침 입법 계획	165
라. CbCR 지침의 공식 채택 최종 승인	165
마. 디지털세 필라 2 실행지침 발표	166

제1부

2021년 조세행정 동향

〈표 II-1〉 각국 경제에서 세수징수액의 비중	8
〈표 II-2〉 국별 세수징수액 구성 비중(2019년)	8
〈표 IV-1〉 2014~2019년 전자신고 및 납부율 비교	16
〈표 V-1〉 납세 서비스 채널 유형별 이용	18
〈표 V-2〉 온라인 서비스 관련 인프라 및 조직 사례	20
〈표 V-3〉 납세 서비스 채널 유형별 활용 현황	21
〈표 V-4〉 가상 지원(챗봇) 서비스 도입 사례	22
〈표 V-5〉 세무행정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사례	24
〈표 V-6〉 세무행정 관련 API 활용 사례	24
〈표 V-7〉 비디지털 채널 관련 납세자 지원 사례	26
〈표 V-8〉 세무행정 관련 결합 서비스의 도입 사례	26
〈표 V-9〉 세무행정 관련 행동 통찰력 도입 사례	28
〈표 VI-1〉 이행 위험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 사례	29
〈표 VI-2〉 세무행정상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	30
〈표 VI-3〉 위험에 대한 표적화 향상을 위한 분석기술 이용 사례	31
〈표 VI-4〉 대규모 납세자 관리 부서 또는 프로그램(LTO/P)의 중요성	33
〈표 VI-5〉 조사 업무의 가상/디지털 환경으로의 이동	36
〈표 VII-1〉 조세채권 징수에 필요한 기능	40
〈표 VII-2〉 조세행정당국별 부채 관리 개선 프로그램 및 도구	40
〈표 VII-3〉 조세행정당국별 조세채권 관리를 위한 연구	43
〈표 VIII-1〉 조세행정당국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분쟁 해결 사례	47
〈표 IX-1〉 2016~2019년 각국의 조세행정당국 운영 관련 지출 변화	49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I-1〉 미국 2022년 개인소득별 최고 세율 기준 변화	59
〈표 I-2〉 미국 2022년 공동신고 부부소득별 최고 세율 기준 변화	59
〈표 II-1〉 2021~2022년 프랑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75
〈표 II-2〉 제19기 연방국회가 제정한 주요 세법의 재정 영향 요약	79
〈표 II-3〉 사회정책적 조세법규의 재정적 영향 요약	80
〈표 II-4〉 네덜란드 2022년 전기세 부과 기준 변화	97
〈표 II-5〉 네덜란드 2022년 상속세 인적 공제액 변화	100
〈표 II-6〉 네덜란드 2022년 증여재산 공제액 변화	100
〈표 II-7〉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의 기대효과 예시	101
〈표 II-8〉 연방내각과 경제조세위원회의 주요 개선안	103
〈표 II-9〉 2022년 예산 초안의 개인소득세 구간	111
〈표 II-10〉 노르웨이 2022년 소득세 소득 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119
〈표 II-11〉 핀란드 2022년 소득세 소득 기준 및 누진세율	132
〈표 III-1〉 재택근무 관련 자산 공개시장가격 산정	140
〈표 III-2〉 소득세 과세구간 및 한계세율 개정 비교	146
〈표 III-3〉 소득세 과세구간 및 한계세율의 개정 전·후 비교	147
〈표 III-4〉 조세사면 프로그램 비교	147
〈표 III-5〉 세무상 고위험 무형자산 국제거래 관련 자산 공개시장가격 산정	149

그림목차

제1부

2021년 조세행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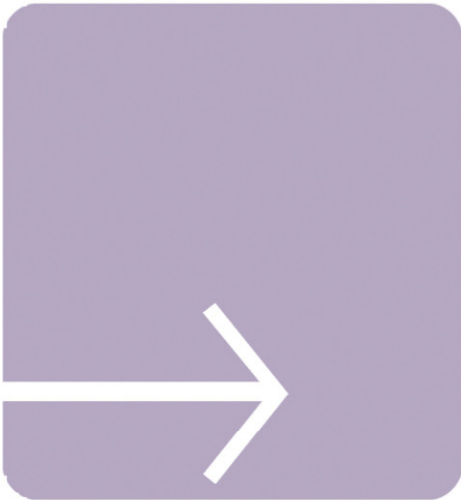
[그림 II-1] 코로나19 이후 조세행정당국의 추가 역할 부담 여부	7
[그림 III-1] 국가별 전체 인구 대비 개인납세자 등록 비율(2019년 기준)	10
[그림 III-2] 납세자가 이용 가능한 등록 채널(2019년 기준)	11
[그림 V-1]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면에서 디지털로 소통 전환이 이루어진 비중의 추정치 ..	19
[그림 VI-1] 조세 의무 이행 개선을 위한 기술 및 방법론의 사용 비율	30
[그림 VI-2] 대규모 납세자 관리 부서 또는 프로그램(LTO/P)의 여부 및 수행 업무	33
[그림 VII-1] 2019년 총 순세수 대비 총체납금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정부	41
[그림 VII-2] 2019년 총 순수익 대비 총연체금 비율이 100% 미만인 정부	42
[그림 VIII-1] 분쟁 해결 시 사용 가능한 검토 메커니즘(2021년)	47



제1부 2021년 조세행정 동향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 ▣ 2021년 조세행정 동향은 OECD의 Tax Administration 2021¹⁾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함
- ▶ Tax Administration 보고서는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가²⁾ 조세당국 간 정보공유 및 개선가능 영역 식별 목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며, 2004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2021년 제9회차 보고서가 발간됨
 - 2021년 보고서는 OECD 조세행정포럼³⁾ 회원국 53개국 및 기타 6개국⁴⁾(총 59개국)에 대한 세무정보를 비교·제시함
 - ▶ 동 보고서는 2020년에 수집된 제3차 ISORA⁵⁾ 조사내용에 기초함
 - 2020 ISORA 조사내용은 2018년 및 2019년 실적에 기초하고 있고, 동 조사내용은 국별로 제출한 원본 자료이며 OECD가 검증한 자료는 아님
 - 2018년 ISORA 조사 시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조사부터는 연단위 조사문항과 4~5년 단위 조사문항을 구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 ISORA 조사는 연단위 조사문항만을 다루고 있음
 - 조사문항 및 조사요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2018년 및 2019년의 데이터는 그 이전 기간의 데이터와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이하에서는 Tax Administration 2021 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챕터별 주요 내용을 요약함

1)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ef472b9-en>, 검색일자: 2022. 3. 18.

2)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정책행정센터(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3) OECD 조세행정포럼(Tax Administration Series)

4)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몰타, 모로코, 태국 등(6개국)

5) ISORA(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세무행정 국제조사)

I 서문(introduction)

-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등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조세행정에 활용하고자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촉진 시킴

 -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행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추이를 보임

 - 말레이시아 조세행정당국은 업무흐름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납세자 편의 증대 및 대량업무 프로세스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둠
 - 네덜란드 조세행정당국은 조세법령의 IT시스템 반영 지원을 위해 자연어⁶⁾에 기반한 산정규칙 추적시스템⁷⁾을 도입함으로써 산정규칙 검증을 용이하게 함
 - ▶ 코로나19는 조세행정당국의 기존 디지털 로드맵에 충격을 주었으며, 조세행정 업무 방식 및 납세자 관계 등에서 변화를 가속화함

 - 일부 국가는 핵심 역량 및 데이터 활용을 고려하여, 조세행정당국에 전통적인 조세 행정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역할을 부여함
- ▼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조세행정의 중심 업무가 적시성 있고 정확한 세액 징수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하의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봄

 - ▶ (제2장) 코로나19 이후 조세행정당국 업무범위의 변화 및 세수 관련 통계를 다룸
 - ▶ (제3장) 모든 납세자의 등록여부 확인과 관련한 조세행정당국의 업무 및 동 전문성이 디지털 신원 확인에 이용되는 방식을 다룸
 - ▶ (제4장) 기한에 따른 신고·납부와 신속한 환급을 위해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와 관련한 조세행정당국의 노력을 다룸
 - ▶ (제5장) 조세행정당국이 정교한 기술적 접근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행동을 조력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룸

6) 자연어 명칭은 Regelspraak(규칙언어)이며, 처리규칙이 자연어에 의해 정의됨

7) 시스템 명칭은 ALEF(Agile Law Execution Factory)임

- ▶ (제6장) 의무 불이행에 대처하는 방식의 변화를 다룸
- ▶ (제7장) 조세행정당국의 미납채무 징수 관리방식과 관련한 최근 특징을 다룸
- ▶ (제8장) 조세행정당국이 조세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고자 기존 분쟁절차의 개선을 위해 시도한 노력에 대해 다룸
- ▶ (제9장)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및 인력관리를 위한 조세행정당국의 노력을 다룸

II 역할(responsibilities) 및 징수(collection)

1 조세행정당국(tax administrations)의 역할

- ▣ 조세행정당국의 업무범위는 비(非)조세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고, 동 추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됨
 - ▶ 조세행정당국의 업무범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세 및 간접세 징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 업무범위는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옴
 - 추가되는 업무범위는 다음을 포함함: ① 납세자에게 복지혜택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 ② 학자금 등 대(對)정부채무 징수 ③ 도박·인구등록부 감독·관리 등 비(非)조세 영역
 - 예를 들어, 노르웨이 조세행정당국은 국가인구등록부(National Population Register)를 관리하며, 이를 2020년 가을에 디지털화하여 개인식별 관리를 강화함
 - ▶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행정당국의 역할은 ① 개인·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②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③ 정부에 대한 데이터 정보지원 등으로 한 차원 더 확대됨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조세행정당국에의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조세행정당국이 다음 사항을 보유하기 때문임: ① 개인·사업에 대한 과거부터의 연계 ② 장기간 대규모 운영 경험 ③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는 숙달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 ④ 광범위한 데이터
 - 예를 들어, 캐나다 조세행정당국은 코로나19 대응책인 캐나다 비상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도입 첫째 주에 350만건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였음
 - 아일랜드 조세행정당국은 2019년 도입한 실시간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시임금보조금제도(Temporary Wage Subsidy Scheme) 신청 건에 대해 신청 하루 만에 지급하였음
 - 싱가포르 조세행정당국은 자체 데이터 및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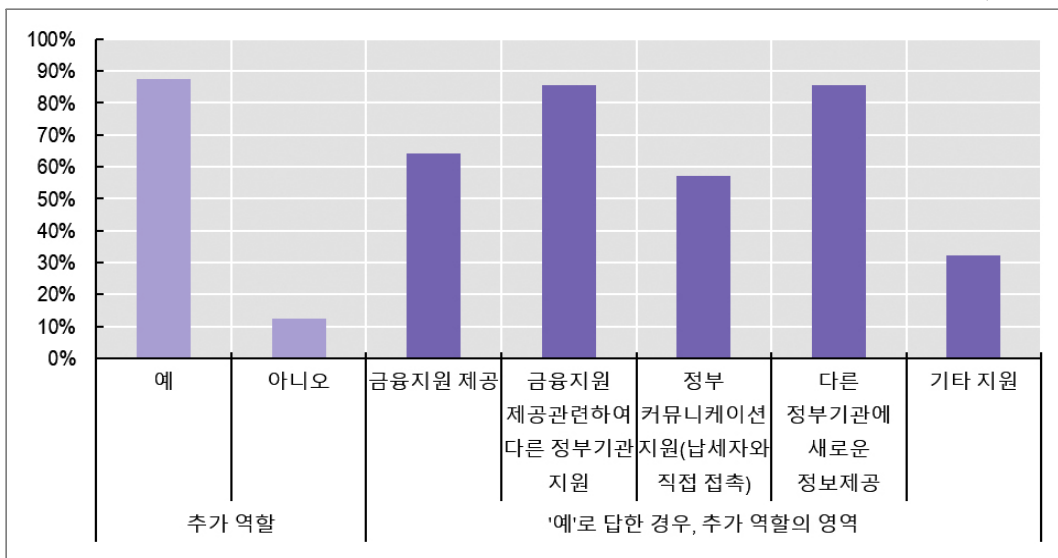
Family Development)의 금융지원 데이터를 기초로 저소득 납세자 집단을 식별하여 사전적으로 분납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음

▶ [그림 II-1]은 32개국 조세행정당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코로나19 이후 조세행정당국에 추가된 역할의 영역을 보여주며, 금융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기관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빈번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호주 조세행정당국은 자금지원이 필요한 산불피해 기업을 식별하거나 코로나19 지원책 모델링 시 필요한 호주사업등록부(Australian Business Registrar)상의 정보 및 납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정부기관들에 제공하였음
- 뉴질랜드 조세행정당국은 코로나19 대응책인 임금보조금(Wage Subsidy)을 집행하는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개발부 직원들이 정보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포털 시스템을 2020년 6월에 개발하였음⁸⁾

[그림 II-1] 코로나19 이후 조세행정당국의 추가 역할 부담 여부

(단위: %)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Figure 2.1, p. 42 재인용

8) 임금보조금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조세행정당국이 사회개발부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화통화 건수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35만건에 달함

2 세수징수액(revenue collections)

- ▣ 각국 경제에서 세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됨
 - ▶ 조세행정당국 순 세수징수액의 GDP 대비 비중 및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의 세계평균은 각각 20%, 56% 수준임⁹⁾
 - 상기 지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각각 약 13%와 55%의 실적을 기록하였음(〈표 II-1〉 참조)
 - 사회보장분담금을 조세행정당국이 징수하는지 여부가 세수징수액(〈표 II-1〉 참조) 및 순 세수징수액의 세수유형별 비중(〈표 II-2〉 참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고려가 필요함

〈표 II-1〉 각국 경제에서 세수징수액의 비중

(단위: %)

구분	GDP 대비 비중 ¹⁾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¹⁾	
	2018	2019	2018	2019
한국	12.6	12.7	55.1	55.1
미국	14.6	14.5	49.2	49.4
일본	10.1	10.2	28.9	29.7
중국	20.0	20.2	70.9	73.2
영국	26.8	26.8	73.1	73.4
독일	18.9	19.1	40.9	40.8

주: 1) 각각의 기준 수치에서 조세행정당국이 징수한 순 세수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국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순 세수징수액 합계액에서 (총수입) 부가가치세를 제거함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Table D.1 발췌, pp. 176~177.

〈표 II-2〉 국별 세수징수액 구성 비중(2019년)

(단위: %)

구분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분담금	기타
세계평균 ¹⁾	27.8	20.0	22.8	10.6	18.8

9) 2019년 59개국 기준임

〈표 11-2〉 의 계속

(단위: %)

구분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분담금	기타
한국	34.5	29.9	11.6	-	24.0
미국	51.0	7.3	-	38.7	3.0
일본	35.2	21.8	28.0	-	15.0
중국	5.2	18.6	31.0	19.3	25.9
영국	32.6	9.0	17.3	22.7	18.4
독일	49.3	14.4	27.8	-	8.5

주: 1) 2019년 59개국 기준임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Table D.2, pp. 178~179 및 Figure 2.4, p. 45 발췌

- ▶ 코로나19는 세수징수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보고서의 검토기간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한정되어 내용이 제한적임
- 코로나19가 세수징수액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경제활동의 감소 ② 실업률의 증가 ③ 정책지원(소비진작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 ④ 행정지원(납기연장 등)

III 등록(registration) 및 신원확인(iden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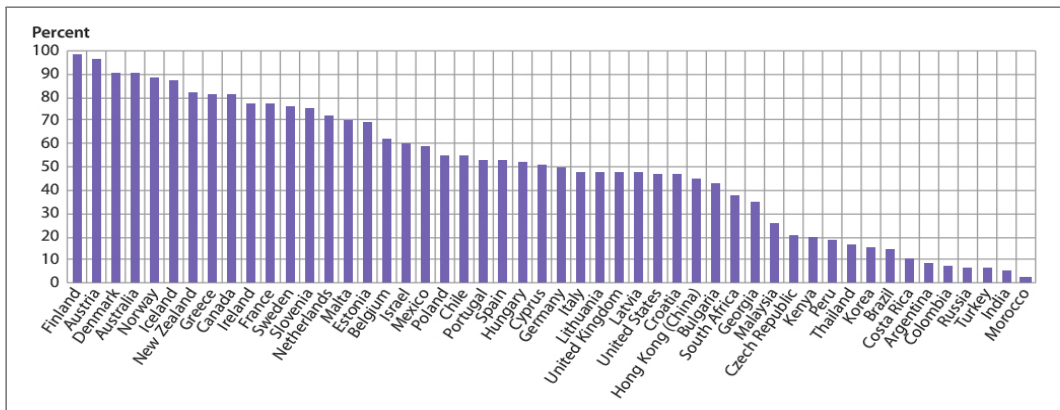
- ▣ 납세자를 등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자체 검증,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제3자 신고 및 대사 등 납세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 이 장에서는 납세자 등록 및 신원확인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쟁점인 등록 수준, 등록 채널, 타 정부기관과의 통합, 신원확인 관리, 국경을 넘어선 신원확인에 대해 설명함

1 등록 수준

- ▣ 조세절차상 의무를 설정하고 조치 및 개입을 모니터링하는 납세 시스템 내로 납세자를 진입시키는 납세자 등록 시스템은 조세행정당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 다음 [그림 III-1]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등록된 개인납세자 비율을 보여주며, 납세 시스템을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관리에도 함께 활용하는 북유럽 지역 국가에서 등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 국가별 전체 인구 대비 개인납세자 등록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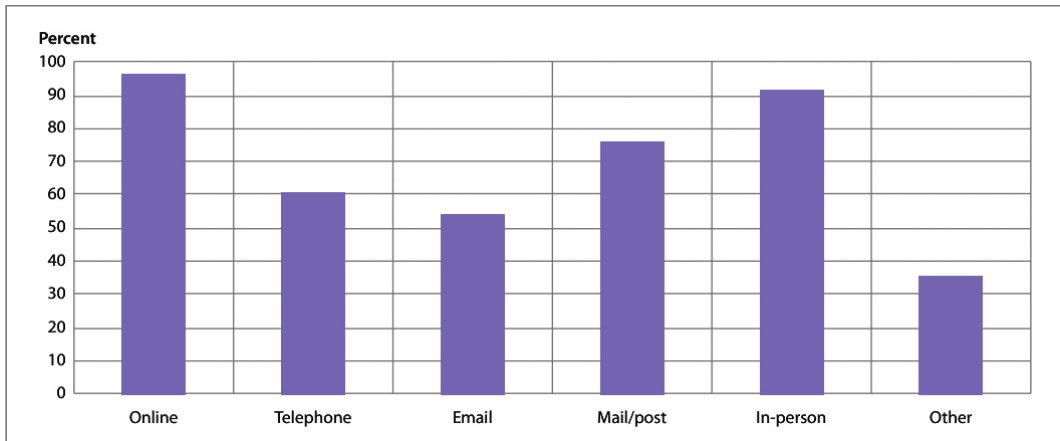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2021, p. 50.

2 등록 채널

- ▣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채널이 하나 이상 있으며, 조사 대상 국가 중 두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였음
- ▶ 디지털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라인은 현재 97%의 국가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등록 채널이며(그림 III-2 참조),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납세자 등록이 온라인으로만 허용되기도 함

[그림 III-2] 납세자가 이용 가능한 등록 채널(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2021, p. 51.

- ▶ 온라인 등록이 확대됨에 따라 비거주자도 해외에서 납세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이와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칠레는 2020년 7월부터 비거주자나 주소가 없는 인이 제공하는 유료 원격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플랫폼을 구현하여 온라인 등록을 제공함
 - 스웨덴은 2021년 영주권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납세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이미 시행중인 시스템의 업무 증대와 지연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납세자 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TAIS프로젝트를 개시함

3 타 정부기관과의 통합

- ▾ 각국 조세행정당국은 최신의 세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 타 정부기관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 ▶ 브라질은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하며, 현재 세관과의 데이터 교환에 활용하고 있음

- ▾ 타 정부기관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행정당국의 납세자 등록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함
 - ▶ 코로나19 위기 동안 각국의 행정부는 조세행정당국이 보유한 납세자 주소 및 은행 계좌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시민 및 기업에 지원을 제공함
 - ▶ 이외에도 법인의 신규 등록이나 자녀의 출생 등록과 동시에 납세 시스템에도 동시에 등록되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으로써, 동일한 식별 정보로 납세자가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 호주 조세행정당국이 제공하는 디지털 ID인 myGovID와 RAM은 호주 30개 정부기관의 70개 이상 온라인 서비스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
 - myGovID: 개인이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정부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ID임
 - RAM(Relationship Authorisation Manager): 이용자에게 사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승인서비스임

4 신원확인 관리

-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 정보의 획득에 대한 불법적인 시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신분 도용과 정보의 도난을 막기 위해 다단계 인증을 통해 실제 납세자 여부를 확

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 고유의 생체 정보를 사용하기도 함

- ▣ 페루 조세행정당국은 2020년 8월 납세자 디지털 단일 등록부를 통해 휴대전화와 같은 온라인 장치를 사용하여 납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으며, 이때 원격 지문 생체 인증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음
- ▶ 이용자가 지문을 촬영하여 업로드 후 신원 국가 등록소(National Registry of Identification and Civil Status)에서 이를 확인하면, 자신의 정보를 납세자 디지털 단일 등록부에 등록하고 조세행정당국의 온라인 접속 키(SOL)를 부여받을 수 있음

5 국경을 넘어선 신원확인

- ▣ 최근 각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영역을 넘어선 국경 간 거래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거래를 지원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 ▶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공유 경제의 확산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인 중소기업과 개인이 점차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시작하여 이들의 소득 흐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짐
- ▣ 이렇게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국제 조치 및 모델 규칙이 도입 혹은 제안되기도 함
- ▶ EU는 2014년 국경을 넘어선 신원확인 및 등록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자 신원확인 인증 및 신뢰 서비스(European Union's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를 도입함
- ▶ OECD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 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비거주자의 금융 계좌 정보는 계좌주의 과세목적상 거주지의 조세행정당국을 통해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
 - 공통보고기준과 맥락을 함께하는 다른 조치로는 미국의 FATCA(United State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있음
- ▶ 또한 OECD는 2019년 보고서 「공유 및 깃 경제(The Sharing and Gig Economy)」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모델 규칙을 발표함

- 플랫폼을 통해 숙박, 교통 및 개인서비스를 제공한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준수하고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소화된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V 조세행정 평가(assessment)

-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를 위해 과세로 인해 수반되는 안내·신고·납부·환급 등 조세행정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왔음
 - ▶ 디지털화로 인한 기술적 변화는 전자적 채널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 수행 및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 칠레 조세행정당국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적 채널을 통해 개인소득세 등 세목의 조세행정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데, 각 개인별로 납세의무 이행 정도에 대한 측정치를 색깔¹⁰⁾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 안에 납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조세행정당국은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약 1억명을 대상으로 빅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기한 알림 서비스를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신고기한 안에 납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 지난 20년 동안 과세로 인해 수반되는 조세행정의 발전에서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미리채움신고서의 제공임
 -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제3자 기관을 통해 획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신고서에 사전작성하여 신고 시 제공함
 - 처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소득 관련 과세정보만 포함되었으나, 제3자 기관이 제공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확대와 발전된 기술 적용으로 기부금, 본인 또는 자녀 교육비, 보험료, 대출 이자 등과 같은 공제 관련 과세정보도 포함하고 있음
 - ▶ 납세자는 미리채움신고서의 과세정보를 검토하고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거나, 소득, 공제항목 중 일부에 대해 수정 또는 추가 과세정보 제공 등 세무조정을 할 수 있음
 - ▶ 혹은 미리채움신고서를 검토만 하고, 무신고도 가능함

10) 칠레 조세행정당국은 신고완료인 경우는 회색으로, 신고기한인 경우는 초록색으로, 일부 이행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미이행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함

- 뉴질랜드 조세행정당국은 2019년에 급여, 금융소득 등만 있는 납세자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연말정산을 도입함
 - ▶ 최근에는 개인소득세에만 한정되었던 미리채움신고서 제공을 전자 송장시스템 등 기술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페루 조세행정당국은 2022년부터 전자 기록된 세금계산서,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미리채움신고서를 제공할 것임
 - 스페인 조세행정당국은 SII(Immediate Supply of Information) 시스템의 납세자 과세정보와 스페인 조세행정당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미리채움신고서를 제공하기 위한 파일럿테스트(pre-303)를 실시하였고, 350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미리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함
- ▣ 전자적 채널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과 미리채움신고서 제공 등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및 납부 이용을 증가시켰고, 기한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했음

〈표 IV-1〉 2014~2019년 전자신고 및 납부율 비교

구분		2014년	2019년	증감
전자신고	개인소득세(31) ¹⁾	66.1%	82.8%	+16.7%p
	법인세(34)	76.7%	94.2%	+17.5%p
	부가가치세(30)	84.7%	98.6%	+13.9%p
전자납부(49)		79.6%(2018년)	81.9%	+2.3%p

주: 1) () 안의 숫자는 평균치를 계산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한 각국의 조세행정당국 수를 말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CHAPTER 4. ASSESSMENT," 2021, pp. 61~69.

- ▣ 코로나19 위기 동안 상당수의 납세자가 심각한 현금 흐름 문제에 직면했거나, 여전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초과납부된 세액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문제로 부각됨
- ▶ 각국의 과세체계에서 일정 비율의 납세자가 세액을 초과납부하는 경우는 불가피하나, 화폐의 시간가치 측면에서 초과납부된 세액은 납세자에게 비용으로 인식되어 영업활동에서 현금흐름이 중요한 납세자가 초과납부된 세액의 환급이 지연되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 이에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가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환급 절차 자체를 자동화함
 - 조지아 조세행정당국은 2019년 2월, 자동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¹¹⁾을 도입하고 수정과 개선을 거듭하여 2020년 11월부터 자동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을 상용화함
 - 뉴질랜드 조세행정당국은 광학식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과 분석 기능을 가진 의사결정 프로그램(Decision Manager)을 도입하고 환급 처리를 자동화함
- ▶ 하지만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악용하는 조세범죄는 상당한 위협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 환급청구를 식별하는 위협기반 접근방식도 필요함
 - 싱가포르 조세행정당국은 환급 전과 후에 부가가치세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위험분석 모형을 환급에도 적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점수를 부여하여 환급을 악용하는 위협을 미리 식별·포착하고 있음

11)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과 조지아 조세행정당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역을 비교하여 저위험 신고와 고위험 신고로 분류하고 저위험 신고일 경우 '그린카드'를 배정하고 체납된 세액이 없다면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이체되나, 고위험 신고일 경우는 자동 환급이 불가능하며, 조지아 조세행정당국 소속 세무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환급이 가능함

V 서비스(services)

-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협력을 위해, 효과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과 함께 실시간으로 자가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도구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음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부서들은 다양한 대화형 도구와 함께 온라인 등록, 제출 및 납부 기능을 포함하는 확장된 범위의 납세자 자가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 일부는 외주업체가 내재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내 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함

1 서비스 수요관리

- ▼ 납세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납세 채널의 적합한 조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 2018년 대비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직접 방문을 비롯하여 전화·서면과 같은 기존 채널 이용은 감소하고, 온라인·이메일 등과 같은 디지털 채널 이용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 참조)

<표 V-1> 납세 서비스 채널 유형별 이용

(단위: 개, 건)

채널 유형	표본국가 수	2018	2019	증감률
세무대리인의 온라인 제출	31	943,968,722	1,140,362,160	+20.8%
전화	54	339,045,062	327,330,943	-3.5%
직접 방문	35	109,579,208	109,041,549	-0.5%
우편	21	50,372,394	49,137,284	-2.5%

〈표 V-1〉 의 계속

(단위: 개, 건)

채널 유형	표본국가 수	2018	2019	증감률
이메일	30	12,568,291	13,959,880	+11.1%
디지털 어시스턴트	29	10,942,071	21,793,351	+99.1%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 79.

▶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을 위해 전자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납세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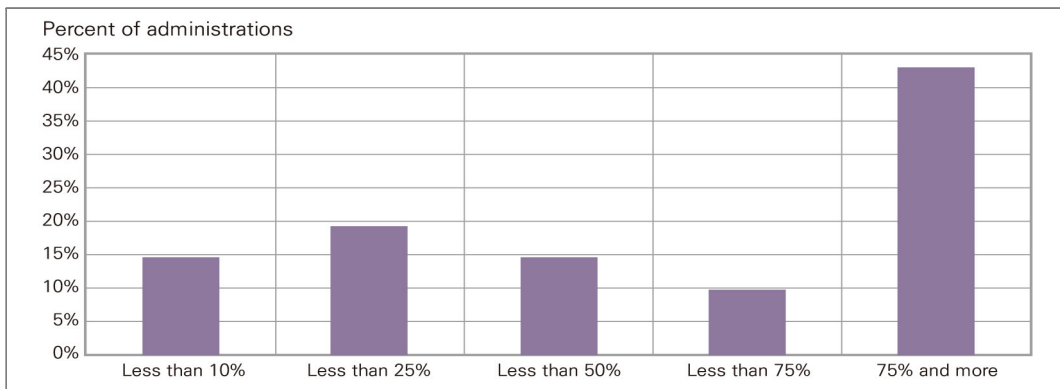
▣ 또한 2021년 OECD 보고서 「조세행정: 코로나19 환경에서 디지털 탄력성(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했다고 언급하고 있음

▶ 32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중 75% 이상의 소통을 대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였다고 밝힌 국가가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그림 V-1 참고)

▶ 또한 각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들이 대면 소통을 대체하기 위한 채널로 납세자 포털, 이메일, 전화, 앱 및 웹서비스(SNS, 라이브채팅) 등을 사용했다고 추정함

〈그림 V-1〉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면에서 디지털로 소통 전환이 이루어진 비중의 추정치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 79; OECD,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2021에서 재인용

2 온라인 서비스 개발

가. 온라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

- ▣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은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 혹은 조직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기도 함

 - ▶ 이러한 인프라는 챗봇 및 모바일 앱과 같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 납세자와 조세행정당국과의 상호 작용을 돕는 동시에, 자가처리를 늘리고 콜센터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채널 사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디지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이나 타 기관과 같은 제3자와 함께 협업하기도 하며, 일부 국가에서 이와 관련한 온라인 인프라를 확충한 바 있음

 - ▶ 호주의 Digital Partnership Office, 캐나다의 ADP3G(Application Development Platform 3rd Generation), 네덜란드의 민관협력 온라인 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표 V-2〉 참조)

〈표 V-2〉 온라인 서비스 관련 인프라 및 조직 사례

국가	인프라(조직)명	내용
호주	Digital Partnership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행정당국이 세금 납부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파트너 및 다른 정부 기관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웹서비스, API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Digital Partnership Office는 이러한 업체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캐나다	ADP3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중심 디지털 IT 서비스, API 관리, 상호 운용 역량, 자동화·DevOps·클라우드를 통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3세대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음

〈표 V-2〉 의 계속

국가	인프라(조직)명	내용
네덜란드	민관협력 온라인 서비스 시범사업	• 납세자가 작성하는 서류량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게 하는, 공공과 민간 간 거버넌스인 민관협력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82-83 내용 저자 요약

나.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활용

▼ 가상 혹은 디지털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세자 문의에 응대하고 자가처리를 지원 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함(〈표 V-3〉 참조)

- ▶ 챗봇과 같은 가상 지원,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API, 모바일 앱 등이 이러한 가상 및 디지털 지원 서비스에 해당함
- ▶ 기술 활용 단계 기준으로 API를 도입한 국가가 86%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상 지원이 46%, 인공지능이 38%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기술 도입 및 예정 단계까지 합산하면 가상 지원이 63%, 인공지능이 72%로, 현재 활용률이 가장 낮은 인공지능은 향후 그 사용이 급진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으나 대중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표 V-3〉 납세 서비스 채널 유형별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가상 지원 (챗봇 등)	인공지능 (머신러닝 포함)	API
기술 활용 단계	46	38	86
기술 도입 및 예정 단계	17	34	9
미도입	37	28	5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 83.

1) 가상 지원(챗봇)

- ▣ 각국 조세행정당국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문제 대응에 챗봇과 같은 가상 지원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표 V-4>와 같음
 - ▶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챗봇의 서비스 범위나 기능이 확대되고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스타리카나 스페인과 같이 신규로 도입한 국가 역시 존재함
 - ▶ 문의에 대해 완결된 응답을 보여주는 비율 또한 75~97%가량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표 V-4> 가상 지원(챗봇) 서비스 도입 사례

국가	서비스명	내용
호주	Al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월 시작된 호주 조세행정당국의 가상 지원(챗봇) 서비스로, 납세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일반 세금 및 연금 관련 문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수행함 - FAQ 목록의 질문을 선택하거나 텍스트 상자에 직접 질문을 입력하는 방식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의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Alex의 기능이 크게 향상됨 - 고객의 문의에 완결된 응답을 제공한 비율이 평균 94%에 달함
캐나다	Live Agent Chatb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에 단일 주제에 중점을 둔 첫 챗봇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는 긴급 혜택 정보와 일반 문의를 포함하는 등 주제가 확장됨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기존 콜센터 직원들을 활용해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시도함 - 납세자들의 채널 만족도를 높이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향후 챗봇 주제 확장 등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
코스타리카	TRAVI 내 챗봇 및 온라인 채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기존 온라인 납세 플랫폼인 TRAVI에 챗봇을 도입함 - 전자 청구, 키 관리, 암호키 등 문의 빈도가 높은 6개 주제에 대해 237개의 질문을 포함함 • 콜센터 직원 2인이 지원하는 온라인 채팅 기능 또한 추가됨
페루	SOF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세금영수증 복권과 소득세 환급의 두 가지 주제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자본과 소득과 관련한 세금이나 일부 납세 절차에 대한 조건 검색에 대한 응답까지 그 범위를 확장함 •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정확도와 응답 속도를 모두 개선하여, 2021년에는 97%의 효율성으로 248,125개의 메시지에 응답함 • 챗봇의 기술 구축과 콘텐츠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음

〈표 V-4〉 의 계속

국가	서비스명	내용
러시아	TAXI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연방 세무 서비스의 중앙 콜센터 DB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능형 웹채팅(챗봇) 서비스임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한 표준화된 답변을 24시간 제공하며, 75%의 답변 성공률을 보여줌
싱가포르	챗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조세행정당국은 기술청과 협력하여 AI기술과 자연어 처리(NLP)를 활용한 대화형 신고 챗봇을 도입함 택시 및 자가용 차량 운전자의 소득세 신고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21 과세연도에는 행사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스페인	가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인 조세행정당국은 2021년 개인소득세 포털에 사전 작성 신고서, 안내 비디오, 전단지, '전화하기' 옵션, FAQ 등의 기능이 포함된 가상 지원 서비스를 시작함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하여 11가지 주제에 대해, 답변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추가 질문을 하는 형식을 취함
영국	Webc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여 웹챗 서비스의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필요할 경우 전자적으로 영국 조세행정당국과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함 웹챗 이용 빈도가 코로나19 전후로 1일 4천건에서 3만 3천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동안 지속적으로 85%를 넘는 고객 만족도를 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챗 서비스를 위해 1천명 이상의 재택 근무 신규 직원을 교육하기도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84~87 내용 저자 요약

2) 모바일 앱

▣ 최근 조세행정당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는 주로 정보 제공이나 안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점차 납세자가 관련 기록이나 개인의 납세 계정에 접속하거나 조세행정당국과 소통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세무행정과 관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적용 사례로는 브라질의 Normas와 러시아의 My Tax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V-5〉에 정리함

〈표 V-5〉 세무행정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사례

국가	애플리케이션명	내용
브라질	Nor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1월 세금 및 관세 규정 모니터링을 위해 시작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임 • 사용자의 관심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규 규정이 발표될 경우 알림을 받아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음
러시아	My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소득세 납부를 위한 모바일 앱으로, 소득 기록 저장, 고지서 발행, 세금 납부의 기능이 내장됨 • 신고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과 관련된 은행 및 디지털 플랫폼 등이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게 하는 API도 포함하고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87~88 내용 저자 요약

3) API

▣ 각국 조세행정당국은 대체로 내부적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나, API를 활용하여 외부 개발자가 이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연결함으로써 서비스를 확장하기도 함

- ▶ API는 시스템과 사람 및 사물을 직접 접근 없이 연결하므로, 시스템 및 DB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시스템 손상 위험을 감소시킴
- ▶ 앞선 〈표 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API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채널로, 많은 국가들이 조세행정당국과 타 정부부처, 그리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API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표 V-6〉 참조)
 - 호주의 경우 전 정부기관 차원에서 API 제공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호주의 조세행정당국 역시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 게이트웨이와 같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V-6〉 세무행정 관련 API 활용 사례

국가	내용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때 관광객 확인을 위해 허가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조세행정당국의 AP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표 V-6〉 의 계속

국가	내용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부가가치세 양식에 온라인 가이드가 내장되며, 해당 지침을 기업의 회계 시스템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전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부터 '세금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러시아 조세행정당국이 API를 통해 납세자의 회계 및 납세 프로그램에 원격 접근할 수 있게 함 의무 사항은 아닌 선택적 서비스이며, 납세자의 거래에 조기 경고 신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사 및 모니터링을 제공함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제출 솔루션이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 내에서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변환하고 목록에 배치할 수 있도록 API를 활용함 상품 및 서비스세(GST) 신고 시에도 신고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 목록을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에서 API 서비스를 통해 조세행정당국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세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Making Tax Digital 전략에 있어서, 납세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록을 유지하고 링크를 사용하여 직접 세금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API를 활용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생활 중심으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에서 API를 제공하는 것이 호주의 정부의 전체적인 비전임 호주 조세행정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API와 그 복잡성에 맞게 디지털 채널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보다 간결하고 가벼운 API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게이트웨이에 투자하기도 함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조세행정당국은 국 내부 및 타 정부부처, 제3자 공급업체 또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API와 관련한 표준과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인 API Center of Excellence를 두고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88-91 내용 저자 요약

3 비디지털 서비스

- ▼ 앞선 사례들과 같이 많은 국가들에서 납세 관련 서비스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신규 서비스에 접근이 곤란한 납세자가 존재할 수 있음
 - ▶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도 여전히 필요함
 - ▶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조지아와 같이 비디지털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거나

콜센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비디지털 채널과 관련한 납세자 지원을 개선시킨 사례가 존재함(〈표 V-7〉 참조)

〈표 V-7〉 비디지털 채널 관련 납세자 지원 사례

국가	내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0월 조세행정당국에서 Digital Mailroom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비디지털 채널을 포함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신된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시킴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콜센터를 현대화된 건물로 이전하고 인프라를 전면 업그레이드함 접수된 통화의 관리는 특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성능 보고서 생성을 통해 이루어짐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92-93 내용 저자 요약

4 결합 서비스

- ▣ 세무당국이 다른 부처 및 외부 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데이터나 플랫폼을 결합하거나 공유하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세무당국과 사회보장기관 등은 신원 관련 최신 정보와 함께 금융 및 고용 정보 등 거래에 관련한 자료를 수신하거나 제3자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 간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 중국의 부동산 등기 원스톱 서비스, 프랑스의 납세 관련 공동 온라인 포털 마련, 싱가포르의 국가 디지털 신분증, 스웨덴의 이민절차 간소화 디지털 솔루션 등에서 이러한 결합 서비스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표 V-8〉 참조)

〈표 V-8〉 세무행정 관련 결합 서비스의 도입 사례

국가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등기 시 조세행정당국과 부동산 등록기관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부동산 등기 신청자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결과물을 발행할 수 있음 2020년 말까지 현금 이상 모든 도시에서 해당 서비스가 구현되었으며, 부동산 등기 처리 기간을 5일 이내, 일반 세무 관련 처리 기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함

〈표 V-8〉 의 계속

국가	내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사회보장기여금 및 세금 징수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의 목표 중 하나로 공공 재정일반총국(DGFIP), 세관, 사회보장기여금 징수조합(URSSAF)의 공동 온라인 포털을 통한 납세 프로세스 단순화를 설정함 • 공통 온라인 포털은 2022년 초 기업에 개방될 예정임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디지털 ID로 시민과 기업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와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국가 디지털 신분증(National Digital Identity)을 마련함 • 개인용 ID인 SingPass와 법인용 ID인 CorpPass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온라인 거래를 단순화하는 MyInfo 서비스도 포함됨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조세행정당국, 이민청, 사회보험청, 공공고용청은 스웨덴 이민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으로 마련함 • 취업 허가 및 이사 정보, 노동 시장 및 사회 시스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92-93 내용 저자 요약

5 행동 통찰의 적용

- ▾ 자발적인 납세 순응을 위해 행동 통찰을 활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세금 관리 전략으로 주류화되는 추세임
 - ▶ 심리학, 신경과학 및 행동경제학 등의 원리를 사용하여 개인이 정보를 취득, 처리 및 반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행동 통찰이라고 하며, 이를 근거로 인간 행동에 기반한 실용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음
 - ▶ OECD의 *Tax Administration 2019*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 다룬 국가의 3분의 2가 행동 통찰과 관련한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 2021년에는 기존 사례에 캐나다의 코로나19 재정지원 사례와 헝가리의 중소기업 과세 간소화 사례가 추가되어 다음 〈표 V-9〉과 같이 정리함

〈표 V-9〉 세무행정 관련 행동 통찰력 도입 사례

국가	내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정 지원과 관련한 Canada Emergency Benefit 서비스 오픈 시, 비정상적인 트래픽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첫 4일간은 신청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을 분배함 • 캐나다 조세행정당국은 2016년 자동전화알림(ADAD)을 활용해 개인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납세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써 납세율을 증진시킨 바 있으며, 2020년에는 법인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캠페인을 진행함 • 기업 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환급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식별하여 서신을 발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발송 결과 28,655건의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세금 환급금으로 1,517만캐나다달러, 세액공제와 혜택 등으로 2,246만캐나다달러가 지급되었음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재정부와 조세행정당국은 세금 신고서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과세 방식인 KIVA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신을 발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 절감액 정보가 포함된 서신을 발송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KIVA의 이점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서신을 발송함 - 무작위 대조 실험 결과, 서신을 받은 기업 중 KIVA를 선택한 기업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던 서신을, 2020년부터 그 대상 범위를 세무대리인까지 확대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92~93 내용 저자 요약

VI 검증(verification) 및 의무 이행(compliance) 관리

1 의무 이행 위험관리

- ▣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용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조세 의무 이행 환경의 성격을 변화시켜 보다 원활하고 관리 가능한 의무 이행을 가능하게 함
 - ▶ 이러한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위험의 대상의 감지 및 향후 추세 분석을 강화하며 규정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사를 자동화하는 디지털화가 증가하여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자와 제3자의 세금 관련 데이터(e-invoicing, 온라인 현금 등록기 및 금융 계정 정보)가 더욱 많이 제공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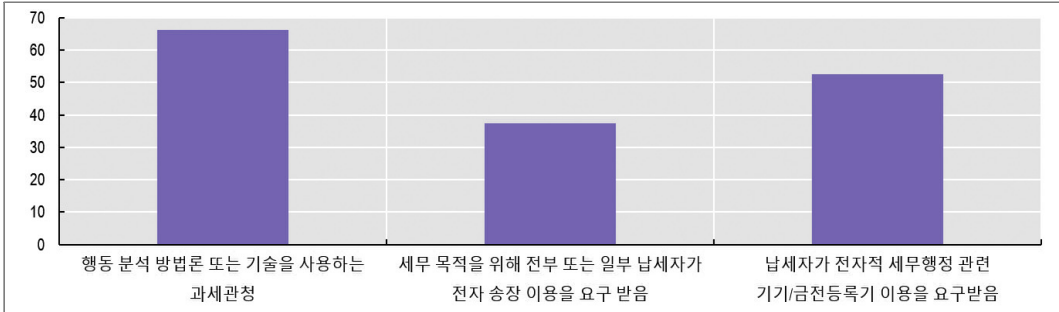
〈표 VI-1〉 이행 위험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 사례

국가	내용
캐나다	• 기계 학습 기법 및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을 활용하여 많은 데이터의 탐색 및 탐색 단계를 단축하고 식별되지 않은 경향을 탐색하며 후속 분석을 효율화함
프랑스	• 맞춤형 빅데이터 인프라를 도입하여 통계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
싱가포르	•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여 구조화된 데이터 및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을 향상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103~104 내용 저자 요약

[그림 VI-1] 조세 의무 이행 개선을 위한 기술 및 방법론의 사용 비율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 102.

가. 데이터의 유용성 증가

- ▾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새로운 기법과 프로세스의 적용을 통해 데이터의 전송, 저장, 통합이 쉬워지면서 이행 관리 목적으로 세무행정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함
- ▶ 이러한 데이터에는 금전등록기 등 장치로부터의 데이터, 은행, 가맹점 또는 중개업체 등의 데이터, 공급업체의 데이터, 고객의 데이터, 납세자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다른 정부 기관의 데이터, 해외 파트너의 데이터 등을 포함함

<표 VI-2> 세무행정상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

국가	내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신러닝 및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대량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통해 캐나다 조세행정당국의 내부 감사 및 평가 업무의 기회와 범위를 넓힘
코스타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에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재산 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항공 사진 등을 통해 중앙 지리 세금 정보 시스템을 고안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진 시정의 기회를 주는 조세통제 절차 시행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송장 데이터 보고 의무화로 부정 송장을 탐지하고 고의적인 범죄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온라인 청구서 자료 의무 도입 연도(2018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39,287억HUF로 전년 대비 11.44%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15.35%의 추가 증가율을 보임

〈표 VI-2〉 의 계속

국가	내용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 장려 및 기업 활동의 공시 확대를 위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는 웹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 재화와 용역을 분류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조세 의무 미이행 판매자를 확인함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고리즘 분석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러시아 외부 출처 미신고소득의 유무, 외국 기업 소유 유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유무 등을 파악하고 이행 조치를 담당하는 조세행정당국의 담당자에게 결과를 제공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105~108 내용 저자 요약

나. 위험에 대한 표적화 향상

- ▼ 최근 세무행정의 위험 관리에 고급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9개 조세행정당국이 데이터과학·분석도구를 이용해 보고하고 있고 이외의 세무행정기관이 향후 이러한 도구의 활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
 - ▶ 이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능의 사용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위험 관리가 강화되고 자동화된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개입 조치가 선택되고 있음

〈표 VI-3〉 위험에 대한 표적화 향상을 위한 분석기술 이용 사례

국가	내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전표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특수 목적의 스프레드시트 기반 템플릿 및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관련 거래를 탐지하고 관련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함에 따라 은행 명세서 분석의 90%의 시간 절약 및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력 향상을 달성함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동 처리할 수 있는 유럽 차원의 새로운 시스템인 거래망분석(TNA)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부정 등과 같은 의심스러운 네트워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생애 주기를 매핑하고, 납세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인 SII(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구서를 발행해 실제 거래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VAT)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납세자를 탐지함

〈표 VI-3〉 의 계속

국가	내용
중국	• 조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별 차별화된 공지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 의무 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법 집행 기관은 고위험 납세자들을 식별하여 탈세와 회피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됨
뉴질랜드	• 새로운 세금 및 수익 기술 시스템 START(간편 세금 및 수익 기술)을 통해 납세자가 적정액을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조치하며,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기팅하고, 정보에 입각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페루	• 전자납부영수증의 광범위한 사용을 장려하여 2020년까지 납세자 신고 매출의 91%가 전자납부 영수증 유형의 영수증을 통해 신고되었고,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조세 회피의 적발 및 모니터링을 효율화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109~112 내용 저자 요약

다. 납세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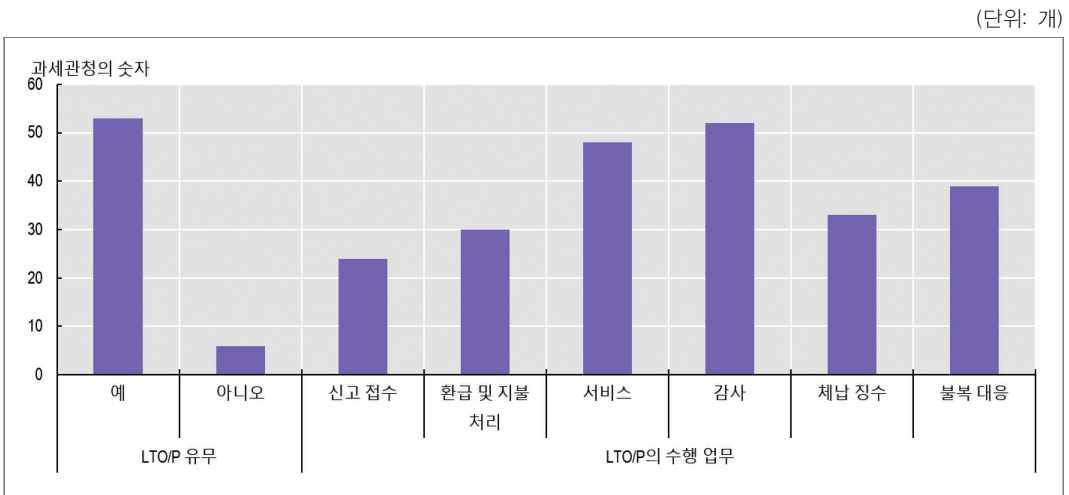
- ▣ 목표 위험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접근법은 특정 납세자 부문의 단위를 만드는 것인데, 세무행정상 특정 집단의 납세자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두 가지 특정 분야는 대기업 납세자와 고액자산가(High Net Wealth Individuals, HNWI)임

 - ▶ 이러한 그룹을 관리하는 데 행정 자원을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조세 의무 이행 위험의 중요성 및 사업과 세금 거래의 복잡성이 크고, 고액자산가는 사적 영역과 세무 업무의 혼합될 여지가 크며, 이러한 납세자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중에게 투명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 추가적으로, 고액자산가의 경우, 소수의 납세자가 대부분의 세수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세수의 비례적이지 않은 측면과 관계되어 있음

 - ▶ 2020년 ISORA 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총세수의 30~60%를 거대 납세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납세자의 약 2%가 징수된 모든 세수의 43%를 차지함

- ▣ 고액 납세자 그룹의 관리는 보통 프로그램 단위로 수행되지만, 많은 조세행정당국에서 대규모 납세자 또는 HNWI와 관련된 부서를 조직적으로 구조화하여 관리하기도 함
- ▶ 이러한 프로그램 또는 부서들의 업무 범위는 전통적인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전체 서비스”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함

[그림 VI-2] 대규모 납세자 관리 부서 또는 프로그램(LTO/P)의 여부 및 수행 업무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 114.

- 그러나 대규모 납세자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세무 행정 직원의 평균 3분의 2가 감사, 조사 및 기타 검증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

[표 VI-4] 대규모 납세자 관리 부서 또는 프로그램(LTO/P)의 중요성

(단위: %)

구분	비율
총 근무자 중 LTO/P에 근무하는 근무자 비율	4.1
법인 소득 납세자 중 LTO/P를 통해 관리되는 납세자의 비율	1.7
조세행정당국을 통해 징수된 총수입 중 LTO/P를 통해 관리된 비율	42.7
총 LTO/P 근무자 중 감사, 조사 그리고 기타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근무자 비율	65.8
감사를 통해 추가과세된 총합계 중 LTO/P의 감사를 통해 증가한 추가과세된 가치의 비율	33.9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 113.

라. 미래 위험의 이해

- ▣ 조세행정당국이 현재의 세무행정 관리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함

 - ▶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세무행정의 능력은 새로운 규정 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평가하고 필요한 완화 전략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게 함
 - 이는 납세자의 조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봉쇄 및 관련 조치가 행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많은 납세자의 소득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함

- ▣ 위기상황은 조세행정에 대한 불이행과 관련된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디지털 경제, 암호화폐, 불공정 인식, 새로운 업무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많은 조세행정당국들이 이에 대해 주의하고 있음

 - ▶ 캐나다는 조세행정당국 이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조세행정당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과 도구 및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함
 - Compliance 2050 프로젝트의 도입 및 e-invoicing과 관련된 실무적인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을 형성하는 추세가 현재와 미래 모두에 조세 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변화 동인을 파악함

2 적용범위(coverage) 및 결과

- ▣ 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와 정교화된 분석 모델의 적용범위와 이에 대한 별도의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정교한 분석 모델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자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정이 의심되는 신고, 청구 또는 거래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 전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됨

- ▶ 전자적 이행 검증이나 감사에 있어 이전과 이후의 결과 또는 기존의 방식과는 별개로 새로운 방식에 대한 별도의 결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전자적으로 규정 이행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조세행정당국들의 검증 조치와 관련한 추가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기관들은 전자적 이행 감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
 - ▶ 호주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의 실수나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운영 분석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수정하는 등 개별 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7년 7월 자동 발행 의무 이행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ATO는 140만개의 개별 소득세 신고서를 조정하여 약 6억 8,400만AUD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약 17%만이 조정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TO에 문의했고 2% 미만의 경우만이 환급으로 처리됨
 - ▶ 네덜란드 조세행정당국은 2015년부터 세금 신고서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소득세 납부자에게 위험 기반 검증 시스템에 기반한 서한을 송부하여 납세자의 세금 신고 확인과 필요시 조정을 요청함
 - 시행 이후 서신을 받은 납세자의 약 70~75%가 신고서를 조정하였으며, 이는 위험 기반 검증 시스템을 통해 검증과 평가 과정에서 약 1,600~1,800여 건의 근무시간을 절약했다는 것을 의미함

3 세무조사(audit) 업무의 가상환경 이전

- ▣ 기존 세무조사의 경우 조세행정당국이 종합감사, 이슈 중심의 감사, 장부·기록물 검사, 조세사기 혐의 조사 등을 위해 납세자의 거주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조세행정당국은 감사 관련 서류의 전자 제출을 포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게 됨
 - ▶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세무서의 폐쇄와 다수의 세무 공무원의 원격 근무로의 이동에 의해 규정 이행 개입 및 개입과 관련한 수행 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받음에 따라 빠르게 가속화됨

- ▣ 2021년 OECD 조세행정 보고서: 코로나19 환경의 디지털 복원성(OECD, 2021)은 해당 보고서의 적용 대상 32개 조세행정당국 중 4분의 3이 정기 현장 조사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였음을 보고함
 - ▶ 이들 중 90%는 현장 조사 작업의 일부를 감사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서에 전자적으로 액세스하거나 원격 인터뷰를 수행하는 가상/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함(〈표 VI-5〉 참조)
 - 해당 보고서상의 조세행정당국의 90%가 자신과 납세자들이 조사 목적으로 가상/디지털 툴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여긴다고 보고한 사실은 향후 해당 분야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며 이러한 조세행정당국의 76%는 향후 가상/디지털 환경으로 현장 감사 작업을 계속 이동할 계획이라고 함

〈표 VI-5〉 조사 업무의 가상/디지털 환경으로의 이동

현장감사(부정/회피 사례 제외)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됨	현장감사의 부분이 가상/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함	현장 감사 업무가 가상/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한 조세행정당국의 경험			
		관련 서류에 대해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원격 상담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짐	납세자(또는 다른 관계자)가 이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추가적으로 감사 업무를 가상/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음
75%	88%	90%	86%	90%	76%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p. 120 재인용

- ▣ 세무 조사 분야 업무와 관련한 가상 환경 이전을 위해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 칠레 조세행정당국은 세무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시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수단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며 그 상호작용의 영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고안함
 - 이러한 시스템은 이메일, 전화 연락 또는 영상 통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여 개인 맞춤형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관리를 통해 납세 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납세자 제출 서류의 오류를 줄이며 이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장려하고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조세행정당국의 출장 관련 시간을 단축함

- ▶ 헝가리 조세행정당국은 2015년부터 전자감사를 준비하여 2018년까지 해당 플랫폼을 완성하였고, 이는 2019년 EU 국가 중 유일하게 헝가리가 전자세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전자화의 결과 500만장 이상의 종이를 절약하는 환경 친화적인 공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감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128일이었던 기존 세무조사 기간을 전자감사를 통해 86일로 줄임
- ▶ 페루 조세행정당국은 전자 유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와 조세행정당국 간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여 세무조사관과 납세자 간 대면접촉을 감소시켜 납세의무 이행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용역을 현대화하고 단순화함
- ▶ 스페인 조세행정당국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납세자 및 세무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2019년 “감사 가상 방문”의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함
 - 해당 프로젝트는 화상회의 시스템과 전자서명 등 납세자와 조세행정당국의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종이 사용과 출장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에 VIVI 시스템을 활용한 문서 490건이 작성됨

4 조세범죄 조사(investigation)

- ▣ 조세범죄는 고의로 세금을 미납하거나 수령할 자격이 없는 환급금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입법 변화보다 선행하며 사법권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까지 위협할 수 있음
 - ▶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조세와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을 통한 전 국가적인 측면의 접근 방식을 지향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집단적 방식의 연대와 협조가 필요함
 - ▶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국은 영국의 조세행정당국과 함께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기술을 갖춘 탈중앙화된 전산망인 금융범죄수사망(FCInet)을 개발하여, 조세범죄 조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제3자에게 대상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을 구현함

- FCInet과 ma3tch 기술을 통해 정보망 참여 회원들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어떤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네덜란드에서는 금융-경제적 범죄와의 다양한 연관성의 색출과 함께 자금 세탁에 대한 범죄 수사로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함

VII 징수(collection)

1 채권 징수 기능의 특징

- ▣ 징수 기능은 제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만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함
 - ▶ 지난 몇 년 동안 “미신고 또는 무신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은 여전히 납세자의 책임 영역으로 남아 있음
 - 2019년 적정한 신고비율은 평균 79%에서 88% 사이였지만 1억건의 신고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음
 - 행정당국은 신고의 지연 및 미제출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 조세 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발적 준수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은 채권 징수 접근방식이 목적에 적합하고, 시스템이 관리되는 방식이 납세자의 기대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 조세행정당국은 프로세스에 대한 연계적(end-to-end) 또는 시스템 관점에서 신고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음
 - 패턴 및 이상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납세자의 이전 이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음
 - ▶ 2014년 보고서 ‘조세채권관리에서의 업무 증진(Working Smarter in Tax Debt Management)’에서는 현대에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에 관하여 <표 VII-1>과 같이 개요를 제시함

〈표 VII-1〉 조세채권 징수에 필요한 기능

기능	내용
고급분석	• 보유 정보를 조세채권 관리에 활용하여 적시에 적합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함
대응전략	• 납세자의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및 적절한 강제집행 조치와 같은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
조직	• 조세채권 추심을 위해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함
아웃바운드 콜센터	• 많은 수의 조세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함
국경을 넘어서는 조세채권	• 국제적 공조, 특히 조세행정당국 간 협정을 통해 조력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130~131 내용: 저자 요약

- ▶ 2019년 보고서 ‘성공적인 조세채권관리’에서는 성공적인 조세채권 관리를 위한 추가 전략과 채권 관리 개선프로그램을 사용한 국가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표 VII-2〉을 통해 살펴봄
- 전략의 기본 전제는 채권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상적으로는 부채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미납 세금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임

〈표 VII-2〉 조세행정당국별 부채 관리 개선 프로그램 및 도구

국가	내용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프로파일링을 제공하고 집행 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부채 관리 서비스 (Debt Management Services)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함으로써 등록된 모든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부채 관리 서비스를 통해 조세행정당국은 고객 행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되었음 • 최근 코로나19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신속하게 구현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유연성을 재확인함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관리를 개선하고 재산 압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행동정보를 디지털화 하였고 재산몰수 결정에 이르게 되는 납세자의 특정 위험행동(디지털 마커)을 분석함 • 재산몰수 결정은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자동 처리되며 시스템이 위험 요소를 식별할 때 자동으로 재산 압류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건비를 약 6분의 1배 절감함

〈표 VII-2〉 의 계속

국가	내용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징수 지원 및 처리를 위한 전화 헬프라인 서비스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징수 계산기를 출시함 • 전화 헬프라인을 통해 세금 채무 및 압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 자동이체 등을 지원함 • 세금징수 계산기를 통해 세금 및 기타 채무의 납부기한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세금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해 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131~132 내용 저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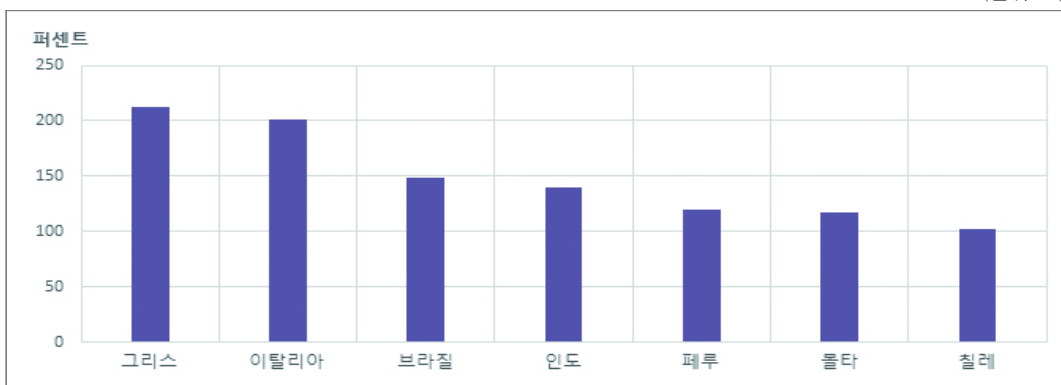
2 미납채권 징수 실적

▣ 2019년 기준 미결제 연체 총액은 2조 1천억유로에 달하고 있음

- ▶ “연말 미납 채무 총액”은 조세채무 및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기타 수입에 대한 채무 총액으로 이자와 과태료가 포함됨
- “징수 가능한 체납금”은 총체납액에서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타 이유로 징수할 수 없지만 상각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액인 분쟁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그림 VII-1] 2019년 총 순세수 대비 총체납금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정부

(단위: %)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p. 134 재인용)

3 예방적(preventive) 접근

- ▣ 체납을 방지하고 미납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이 취하는 조치가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음
 - ▶ OECD 보고서에 보고된 예측 모델링 및 실험 기법을 통해 더 나은 조세채권 관리를 위한 고급 분석을 하고 있음
 - 많은 조세행정당국이 “납세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행동 통찰 방법론 또는 기술과 같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바, <표 VII-3>에서 살펴봄

<표 VII-3> 조세행정당국별 조세채권 관리를 위한 연구

국가	내용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단순화하면 규정 준수가 크게 증가하나, 제재에 관한 메시지는 세금 규정 준수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촉진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고 종종 역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관찰함 • 이러한 행동 실험 결과는 납세자와의 행동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는 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채무 추심영역에서 지불에 관한 규정 준수율이 9% 상향됨으로써 2,200만유로의 납부가 달성됨 • 행동 통찰력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해 세금 징수 과정에서 가능한 조기에 할부 약정과 같은 지원조치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할부 약정이 15% 증가함으로써 납세자(부채 방지) 및 세무당국(작업량 감소) 모두에게 이익이 됨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 기능을 사용한 알림을 제공한 결과¹²⁾ 지급률을 평균 1.4% 증가시켰고 부채가 10만HUF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는 납부율이 2.9%로 더욱 높아짐을 확인함 •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무작위로 선택된 납세자의 절반은 전통적인 방식의 지불 통지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실험을 통해 새로 설계된 형태의 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도에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데이터 항목¹³⁾으로 구성된 사업현지표(Business Presence Indicators)를 개발함 • 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금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 미신고 기업에 대한 표적 집행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행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함 • 납세 기한에 관한 달력 메모를 SMS 알림에 포함시키고 이를 모바일 스마트폰 캘린더에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 적용하는 실험¹⁴⁾을 진행함 • 이를 통해 캘린더 동기화 기능이 향상된 SMS를 수신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준수율이 향상된 것을 관찰함

〈표 VII-3〉 의 계속

국가	내용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법인 납세자가 세금 납부 분할 신청 및 자동화 전자 납부를 위해 조세행정당국에 직접 전화하는 대신에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당국 담당자의 수동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p. 137~138 내용 저자 요약

4 코로나19 팬데믹 관점에서의 채권 징수

- ▼ 코로나19의 대유행기 시민과 기업에 미친 영향에 따라 조세행정당국은 자산 압류 및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 조치를 일시 중단하고 있음
 - ▶ 대신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이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기존 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심각한 현금 흐름 문제를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이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12) 1만HUF에서 100만HUF 사이의 조세 채무를 가진 21,000명의 개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지불 알림 시스템이 미치는 지급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함

13) 예를 들어 보고된 수익, 소유 자산 등

14)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6,7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함

VIII 분쟁(disputes)

1 분쟁 예방(prevention)

- ▣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필수 요소임
 - ▶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조세권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보장함
 - 조세행정당국과 납세자는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 양측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 ▶ 예방은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므로 조세행정당국은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자원 집약적인 절차인 분쟁이 줄어들면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됨
 - ▶ 분쟁 예방 체계의 핵심은 납세자에게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임
 - 조세행정당국은 조세법령을 해석하는 방법인 공개 규정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세법 조항의 해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함^{15), 16)}
 - 공동 이행 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mes)의 운영을 통해 조세행정당국과 납세자 간의 협력과 투명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납세자의 책임 이행을 촉진시킴
 - 국제적 성실납세 협약제도(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참여하려는 다국적 기업과 그들이 활동하는 관할 구역 조세행정당국 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다자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위험 평가 및 보증 프로그램으로 2021년 4월 기준 20개 조세행정당국이 참여하고 있음

15) 공개된 판결의 내용은 세무당국을 구속함

16)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비공개 판결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법률에 관한 세무당국의 법 적용 입장 및 해석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짐

- 분쟁 방지를 위한 도구 중 하나인 합동감사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의 공무원이 단일 감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납세자의 거래를 조사하는 공동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협력함으로써 조세행정당국은 초기에 잠재적 분쟁을 감지하고 해결함¹⁷⁾

2 분쟁 해결(resolution) 검토 장치(review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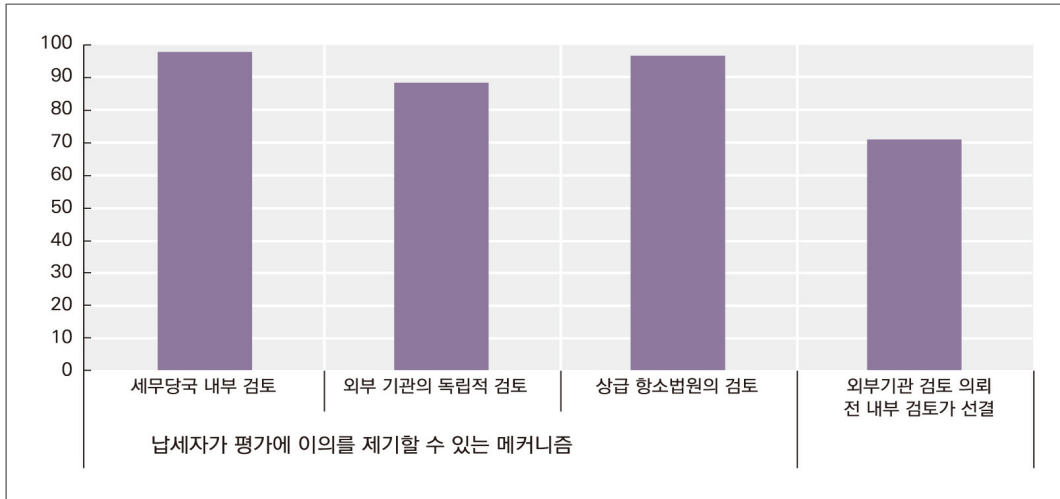
- ▣ 거의 모든 조세행정당국이 내부 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보고되고 대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의 법적 확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립된 외부기관에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됨
- ▶ 두 가지 검토 체계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조세행정당국의 경우 약 70%가 납세자로 하여금 해당 사례를 외부 기관에 검토 의뢰하기 전 조세행정당국 내부 검토를 먼저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 납세자와 조세행정당국이 세법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및 외부검토 절차를 마친 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흔한 경우임
- 동일 거래 또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상호 합의된 규칙을 설정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¹⁸⁾

17) 2020년 11월 16일 미국과 멕시코 관할 당국은 6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조정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 갱신된 계약(Qualified Maquiladora Approach Agreement)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관할 당국은 현재 경제, 상업 및 공중 보건 상황의 영향을 받는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부과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발표함

18)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조약의 틀로 사용하고 있는 OECD 모델 조세협약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이중과세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그림 VIII-1] 분쟁 해결 시 사용 가능한 검토 메커니즘(2021년)

(단위: %)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p. 147 재인용)

3 분쟁 해결의 수행

- ▣ 많은 조세행정당국이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보고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2015년 TAS보고서 이후 많은 조세행정당국이 정보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표 VIII-1>을 통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분쟁 해결 사례를 살펴봄

[표 VIII-1] 조세행정당국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분쟁 해결 사례

국가	내용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자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수집하고 기 형성된 결의안의 내용과 비교한 뒤 유사 주장을 클러스터링함으로써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법을 납세자에게 제안함

〈표 VIII-1〉 의 계속

국가	내용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기간 동안 관련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시간과 재정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원격 전자분쟁 청문회를 도입하였음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와 연결할 수 있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납세자는 웹 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관련 알림을 받음 • 납세자가 전자청문회에 동의한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0년 5월에 8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0년 12월 130건으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전자 청문회 방식에 익숙해짐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⁹⁾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소득세 불복에 대한 원격 제출 및 청문회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항소를 위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납세자와 중재기관 모두에게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공함 • 납세자는 전자신고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항소에 관한 내용은 항소인과 정부 간 단일 연락 창구인 중앙 온라인 항소센터를 통해 전달받음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1, p. 148 내용 저자 요약

19) 해당 시스템은 전염병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될 예정임

IX 예산(budget) 및 인력(workforce)

1 예산 및 정보통신기술(ICT)

- ▣ 조세행정 분야에 일정 수준의 예산 편성은 조세행정당국과 다른 행정기관, 외부 관계자 등에 중요한 쟁점임
 - ▶ 예산정책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연간사업계획서에 요약된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
 - ▶ 조세징수비용(Cost of collection)²⁰⁾ 비율은 각국 조세행정당국 예산 편성의 효율과 효과성 등을 비교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과 효과성은 낮아지고, 비율이 낮을수록 효율과 효과성은 높아짐
 - 단 조세부담을 높이는 조세정책, 세목과 세율 등 조세제도, 거시경제적 변화, 조세행정당국의 비경상적 지출 등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함
 - ▶ 각 국 조세행정당국의 예산 편성 및 조세징수비용 비율 비교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를 보면 <표 IX-1>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상당수의 조세행정당국에서 운영 관련 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표 IX-1〉 2016~2019년 각국의 조세행정당국 운영 관련 지출 변화

구분	2016~2019년	2018~2019년
	36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	57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
증가	31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86%)	44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77%)
감소	5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14%)	13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23%)

자료: OECD(2021), *Tax Administration 2021: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CHAPTER 9. Budget and workforce," p. 154.

20) 조세징수비용 비율=조세행정 분야의 연간 세출÷과세연도 동안의 순세입

- ▶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57개 국가 조세행정당국 중 44개(77%) 국가 조세행정당국의 운영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고,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36개 국가 조세행정당국 중 31개(86%) 국가 조세행정당국의 운영 관련 지출이 증가함
 - ▶ 운영 관련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연간 예산의 평균 약 7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²¹⁾ 관련 지출로 연간 예산의 평균 약 10%를 차지함
 - ▶ 인건비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출이 운영 관련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정책은 세입의 감소와 운영 관련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되었음
- ▣ 특수한 상황에서 각국 조세행정당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 조세행정당국 부동산 관련 비용 절감 등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직면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은 운영 관련 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임
 - 캐나다 조세행정당국은 CERB(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s) 고객센터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대화형 음성 응답서비스를 구축했는데,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상담원을 대신하여 680만건 이상의 납세자 문의를 처리함
 - ▶ 조세행정당국 부동산 관련 비용 절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건물 및 사무실 공간 등을 다른 정부기관과 인프라 공유로 임대료를 절약하는 방법과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기존 건물의 전기료 등 관리비용 절약 또는 에너지 효율적인 스마트 건물 구축 등으로 운영 관련 지출비용을 절감하는 것임
 - 칠레 조세행정당국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21개 관서의 전력 공급 계약을 통합하고 단위 가격을 최적화했으며 최대 40%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함
 - 영국 조세행정당국은 건축산업위원회와 협력하여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제하는 센서가 설치된 스마트 빌딩을 건축하고 이전했으며, 연간 9천만파운드²²⁾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함

21)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출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과정에 개발·저장·처리·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규모는 각국의 조세행정당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산에서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2) 2022년 3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30억원임

2 인력

- ▼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는 연간 예산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유능하고 전문적이고 생산적이며 적응력 있는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함
 - ▶ 59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은 2019년 기준 약 18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조세행정 업무를 4가지²³⁾로 분류하여 고용된 직원을 배치하고, 매년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음
 - ▶ 하지만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에 고용된 직원 연령을 계량적 분석을 통해 비교해봤을 때,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54세 이상 고령직원의 비율이 증가함
 -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고령직원 비율이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20% 이상 증가함
 - ▶ 이는 고용된 직원의 근속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핵심 지식·경험 등을 보유한 수많은 고령직원이 향후 몇 년 동안 퇴직한다면, 다른 직원의 업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 또한 예산 감소·기술개발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 등 이중압력은 직원 급여 감소, 새로운 직능요구, 선호도 등의 변화를 초래했고, 인력 축소의 원인이 됨

-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함
 - ▶ 캐나다 조세행정당국은 지난 5년간 은퇴한 조세행정당국 직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퇴직률 예측 모형을 개발함
 - 이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적자원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
 - ▶ 이 외에도 조세행정당국은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직원의 업무 수행을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 호주 조세행정당국은 3,500페이지가 넘는 전자적 채널을 재구성²⁴⁾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함

23) 각국 조세행정당국은 ① 신고 및 납부 등 대민서비스 ② 세무감사 및 조사 ③ 강제 징수 및 관련 역할 ④ 기타 등 4가지로 조세행정 업무를 분류함

24) 중복되는 콘텐츠를 통합하여 일관된 형식과 제목으로 직관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눈높이의 수준에서 재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페이지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높임

- 캐나다 조세행정당국은 위험 노출 정도 및 허용 수준 평가(Risk Exposure and Tolerances Assessment)²⁵⁾를 도입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함
- ▣ 코로나19 위기로 물리적 접촉이 제한되고 재택근무 등 특수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특별히 직원복지²⁶⁾, 직원 교육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수립함
 - ▶ 핀란드 조세행정당국은 직원들을 위한 동기 부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업무 진척도 등의 투명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운용 방식을 일부 개선함
 - 이는 투명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공유 목표를 달성하는 빠르고 유연하며 자기 주도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함
 - ▶ 영국 조세행정당국은 코로나19 위기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
 - 재택근무 시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웹 기반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기 등을 지원함
- ▣ 직원 교육 부분은 라이브 온라인 교육, 사전 녹화된 교육 동영상, 웨비나 등 기존의 방식에서 전자적 채널 등 가상환경 기반으로 변경된 방식을 지원함
 - ▶ 가상환경 기반 교육은 초기 제작비용 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장소·시간 불문하고 교육을 인원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어 편리함
 - ▶ 그리고 가상환경 기반 교육과 더불어 일부 조세행정당국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플랫폼 등을 개발하여 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 조세행정당국은 기존의 강의방식과 다른 교육 콘텐츠인 Spotlight 교육 시리즈²⁷⁾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함
 - 싱가포르 조세행정당국은 직원의 업무능력 정도를 측정 및 분석하고 향상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추천하는 AI 기반 플랫폼인 Jobkred를 도입함

25) 위험 가능성, 영향 등의 노출 정도와 위험 성숙도, 민감도 등의 허용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직원은 위험 노출 정도 및 허용 수준 평가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26) 직원 복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동기 부여 및 만족도, 직원의 건강 및 안전, 워라벨 제고 등과 지원 프로그램 구축, 인체 공학적 사무기기 제공 등이 포함됨

27) Spotlight 교육 시리즈의 콘텐츠는 3~5분으로 구성된 PowerPit 형식의 애니메이션으로 실무 사례에 대해 교육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1 미국

가. '휴가기반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조세동향 21-07호]

- ▣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21년 6월 30일, 코로나19 희생자를 돕기 위한 '휴가기반 기부금(Leave-based Donation)'의 세금 감면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고시 2021-42를 발표함²⁸⁾

 - ▶ 휴가기반 기부금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 휴가, 병가를 포기하는 대신 고용주에게 상당하는 현금을 지정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함
 - ▶ 이번 고시는 지난 고시 2020-46(2020. 6. 15.)의 코로나19 희생자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포기하고 고용주가 지출한 휴가기반 기부금에 대해 세금 감면을 실시한다는 '휴가기반 기부금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임
- ▣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170조 제c항에서 열거한 자선단체에 휴가기반 기부금을 지출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포기한 현금보수액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 또한 포기한 현금보수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부금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음
- ▣ 고용주는 지출한 기부금만큼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거나 기부금 공제로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함

28) IRS, "IRS extends tax relief for employer leave-based donation programs that aid victims of the COVID-19 pandemic," 2021. 6. 30., <https://www.irs.gov/newsroom/irs-extends-tax-relief-for-employer-leave-based-donation-programs-that-aid-victims-of-the-covid-19-pandemic>, 검색일자: 2021. 7. 27.

나. 코로나19 대응 직원 유지 크레딧에 대한 지침 공지

[조세동향 21-08호]

- ▣ 미국 국세청(IRS)은 2020년 8월 4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행되었던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추가 지침을 발표함²⁹⁾

 - ▶ 해당 지침은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구제안인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ARP) Act of 2021) 중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적용될 직원 유지 크레딧(ERC)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직원 유지 크레딧(ERC)이란, 코로나19 상황에서 종업원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고용한 종업원의 급여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받아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함

- ▣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적용되는 직원 유지 크레딧(ERC)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적격 임금을 지급하는 적격 고용주에게 지난 분기와 같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함
 - 고용주는 적격 직원 1인당 급여 1만달러 중 70%인 최대 7천달러 한도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
 - 적격 사업장의 조건은 해당 분기 적격 고용주의 총수입이 지난해 분기 수입의 80% 미만이어야 함
 - PPP(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과 중복신청이 허용됨
 - ▶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적격 고용주의 대상에 신생사업체를 포함시킴
 - 신생사업체란, 2020년 2월 15일 이후 무역 또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총 연매출이 100만달러 이하인 회사를 말함
 - 신생사업체는 2021년 3~4분기를 합쳐 10만달러 한도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

29) IRS, “Treasury, IRS provide additional guidance to employers claiming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including for the third and fourth quarters of 2021,”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additional-guidance-to-employers-claiming-the-employee-retention-credit-including-for-the-third-and-fourth-quarters-of-2021>, 검색일자: 2021. 8. 18.

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이 담긴 조세개혁 패키지 승인

[조세동향 21-09호]

- ▣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2021년 9월 15일, 증세안이 담긴 조세개혁 패키지를 승인하였음

 - ▶ 리처드 닐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이날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³⁰⁾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증세안 초안을 발표하였음
 - 확보한 세수는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임

- ▣ 세입세출위원회가 발표한 조세개혁 패키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³¹⁾

 - ▶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따른 아동 세금공제 확대를 연장함
 - ▶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따른 근로소득세 공제와 자녀 및 피부양자 돌봄 세금공제 확대를 영구적으로 제정함
 - ▶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주택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함
 - ▶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세금공제를 위한 ARP의 확장을 연장함
 - ▶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세금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아래의 개혁을 추진함
 - 연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연소득 45만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
 -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의 초고소득 개인에 대한 3%p의 가산세 부과
 - 고소득자 자본이득세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
 - 수익이 연 5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은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함
 - ▶ 세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 국세청(IRS)이 부유한 개인에 대해 정교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기로 정함

30) 2021년 10월 13일 원화 환산 시 약 2,392조 6천억원임

31) IBFD, “US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Proposes Tax Reform for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9-14_us_9%23tns_2021-09-14_us_9, 검색일자: 2021. 9. 17.

라. 디지털 서비스세에서 새로운 다자간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관한 합의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미국 재무부는 2021년 10월 21일, 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이하 ‘유럽 5개국’)과 OECD-G20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의해 기존 디지털 서비스세에서 새로운 다자간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발표함³²⁾

 -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1월 특정 국가들이 채택한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중 위 유럽 5개국에서 채택한 디지털 서비스세가 국제 조세 원칙을 위반하여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유럽 5개국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국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을 밝힘
 - 다만 OECD 및 G20을 통해 협상할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80일 동안 관세보복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 이번 합의 이후 유럽 5개국은 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가 발효될 때까지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유지하나 글로벌 디지털세 발효 이후 기존 세제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글로벌 디지털세에 의해 발생한 세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 초과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함

 - ▶ 미국무역대표부는 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가 발효되면 현행 디지털 서비스세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 미국은 이와 같은 유럽 5개국의 결정에 따라 이들 5개국에 대한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유예 중이던 보복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결정함

마.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2022년도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조세동향 21-11호]

- ▣ 미국 국세청은 2021년 11월 10일,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2022년도 인플레이션

32) 미국 재무부, “The United States, Austria, France, Ital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Announce Agreement on the Transition from Existing Digital Services Taxes to New Multilateral Solution Agreed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420>, 검색일자: 2021. 10. 26.

조정을 발표함³³⁾

- ▶ 이러한 조정은 미국 「내국세법(IRC)」에 근거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국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시행할 계획임
 - 2022년 과세연도의 개인 면세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0으로 유지함

▣ 2022년 과세연도에서 소득이 53만 9,900달러³⁴⁾(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64만 7,850달러) 이상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은 37%로 유지됨

〈표 1-1〉 미국 2022년 개인소득별 최고 세율 기준 변화

2021년도 개인소득	2022년도 개인소득	최고 세율
9,950달러 이하	1만 275달러 이하	10%
9,950달러 초과	1만 275달러 초과	12%
4만 525달러 초과	4만 1,775달러 초과	22%
8만 6,375달러 초과	8만 9,075달러 초과	24%
16만 4,925달러 초과	17만 50달러 초과	32%
20만 9,425달러 초과	21만 5,950달러 초과	35%
52만 3,600달러 초과	53만 9,900달러 초과	37%

자료: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1. 11. 16.

〈표 1-2〉 미국 2022년 공동신고 부부소득별 최고 세율 기준 변화

2021년도 부부소득	2022년도 부부소득	최고 세율
1만 9,990달러 이하	2만 550달러 이하	10%
1만 9,900달러 초과	2만 550달러 초과	12%
8만 1,050달러 초과	8만 3,550달러 초과	22%
17만 2,750달러 초과	17만 8,150달러 초과	24%
32만 9,850달러 초과	34만 100달러 초과	32%
41만 8,850달러 초과	43만 1,900달러 초과	35%
62만 8,300달러 초과	64만 7,850달러 초과	37%

자료: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1. 11. 16.

33)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1. 11. 16.

34) 2021년 1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달러는 약 1,181.70원임

- ▣ 만 18세 미만 자녀의 불로소득(예: 투자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에게 ‘아동세금’이 적용됨

 - ▶ 자녀의 유일한 소득이 이자 및 배당금이고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부모의 세금신고 시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
 - 2021년도 자녀 불로소득 기준 금액은 2,200달러였고 세금신고 한도 금액은 1만 1천 달러였음³⁵⁾
 - 2022년도 자녀 불로소득 기준 금액은 1,150달러이고 세금신고 한도 금액은 1만 1,500달러로 조정됨

- ▣ 최저한세(AMT)에 대한 2022년 면제금액은 다음과 같음

 - ▶ 결혼한 개인이 공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11만 8,100달러임
 - ▶ 미혼 개인의 경우,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7만 5,900달러임
 - ▶ 부동산 및 신탁의 경우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2만 6,500달러임
 - ▶ 아동세금 대상 아동에 대한 2022년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아동의 소득에 8,200달러를 합산한 금액 또는 미혼인 납세자의 일반 최저한세 면제금액 중 적은 금액임

- ▣ 2022년 과세연도에 적용될 표준공제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 ▶ 과세연도에 공동으로 신고한 부부에 대한 표준공제액은 전년도보다 800달러 증가한 2만 5,900달러임
 - ▶ 미혼 납세자와 기혼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표준공제액은 전년도보다 400달러 증가한 1만 2,950달러임
 - ▶ 가장에 대한 2022년도 표준공제액은 전년도보다 600달러 증가한 1만 9,400달러임

- ▣ 202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적격 납세자의 경우 전년도 공제금액인 6,728달러에서 6,935달러로 증가함

- ▣ 2022년 과세연도의 해외 근로소득 공제액은 전년도 공제금액인 10만 8,700달러에서 11만 2천달러로 증가함

35) IRS, "Tax on a Child's Investment and Other Unearned Income(Kiddie Tax)," <https://www.irs.gov/taxtopics/tc553>, 검색일자: 2021. 12. 7.

- ▣ 2022년 과세연도 입양에 허용되는 최대 공제액은 전년도 공제금액인 1만 4,440달러에서 1만 4,890달러로 증가함

바. 슈퍼펀드 화학세에 관한 고시 발표

[조세동향 21-12호]

- ▣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21년 6월 30일, 슈퍼펀드 화학세(Superfund chemical taxes)에 관한 고시를 발표함^{36), 37)}
 - ▶ 이번 고시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에 관한 법률(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섹션 80201의 시행을 위한 지침임
 - ▶ 슈퍼펀드 화학세(Superfund chemical taxes)는 내국세법의 과세 화학물질 판매에 대한 세금 섹션인 4661 및 제3조 또는 생산에 하나 이상의 과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수입 과세 대상 물질의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세금 섹션인 4671을 말함
 - 섹션 4661에서는 제조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과세 화학물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각 화학물질에 책정된 세금 부과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섹션 4671에서는 수입자가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세 대상 물질에 세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부과되는 세금금액은 섹션 4661에 따라 자재로 사용된 과세 화학물질에 부과되었을 세금금액임을 설명함
- ▣ 이번 고시 발표는 2022년 7월 1일부터 특정 화학물질에 부과되는 슈퍼펀드 화학세(Superfund chemical taxes) 대상에 관한 지침을 정하기 위함임
 - ▶ 인프라 투자 및 고용에 관한 법률(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서는 IRS에 2022년 1월 1일까지 내국세법 섹션 4672(a)에 따른 과세 대상 물질의 초기 목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 IRS는 IIJA의 시행을 위해 이번 고시 2021-66을 통해 그 초기 목록을 제공함
 - 내국세법 섹션 4672(a)에 따른 과세 대상 물질에 관한 목록에 관해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장관이 발표함

36) IRS, "Notice 2021-66," <https://www.irs.gov/pub/irs-drop/n-21-66.pdf>, 검색일자: 2021. 12. 28.

37) IBFD, "IRS Provides Guidance on Reinstated Superfund Chemical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15_us_4.html, 검색일자: 2021. 12. 28.

- ▶ 고시를 통해 내국세법 섹션 4672(a)(2)(B)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에 포함된 과세 화학 물질의 중량에 대한 임계값이 변경됨을 설명함
 - IJA 섹션 80201의 취지에 따라 과세 화학물질 중량에 대한 임계값이 기존 50%에서 20%로 변경되었음
 - 이로 인해 과세 가능한 제품의 범위가 확대됨

2 캐나다

가. 2021년 예산법안 왕실 승인

[조세동향 21-07호]

- ▣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2021년 6월 30일,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안이 반영된 다음과 같은 2021년 캐나다 예산법안에 대한 왕실의 승인을 발표함^{38), 39)}
- ▣ 사업 관련 조세 조치
 - ▶ 제조 및 가공에 탄소배출 제로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절반 수준의 법인세 감면세율을 적용함
 - 일반기업은 탄소배출 제로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된 소득에 관하여 기존 15%에서 7.5%로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해당 소득에 관하여 기존 9%에서 4.5%로 감면세율을 적용
- ▣ 국제 조세 조치
 - ▶ BEPS Action Plan의 Action 2에 제안된 혼성불일치 협정에 따라 캐나다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금액은 다른 국가에서 공제되거나 일반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한

38) Deputy Prime Minister of Canada, "Budget focused on jobs and growth receives Royal Assent," <https://deputyprmin.canada.ca/en/news/news-releases/2021/06/30/budget-focused-jobs-and-growth-receives-royal-assent>, 검색일자: 2021. 7. 27.

39) News IBFD, "Canada's Budget 2021 Receives Royal Assent, Includes Extension of National Sales Tax on Digital Economy Businesses," 2021. 7.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08_ca_1.html, 검색일자: 2021. 7. 27.

캐나다 소득세 항목에서는 공제되지 않음

- 반대로 비거주 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불한 금액이 외국의 소득세 항목에서 이미 공제된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세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BEPS Action Plan의 Action 4의 권고에 따라 법인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고정비율 한도로 제한함

▣ 개인 세금 조치

- ▶ 캐나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Canada Workers Benefit: CWB)의 조정순이익 임계값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개인은 1만 3,194캐나다달러⁴⁰⁾에서 2만 2,944캐나다달러⁴¹⁾로, 가족은 1만 7,522캐나다달러⁴²⁾에서 2만 6,177캐나다달러⁴³⁾로 인상
-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공제제도인 장애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는 2021년 기준으로 1,299캐나다달러⁴⁴⁾가 적용되며, 세액공제 자격 중 일상 기능에 필요한 정신 기능과 생활 유지 치료의 범위를 넓혀 대상자를 확대함
- ▶ 과세연도가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기간 중 연속 6개월 이상 캐나다 북부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한 개인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지출경비에 대한 북부 거주자 공제(Northern Residents Deduction)를 청구할 수 있고 최대 1,200캐나다달러⁴⁵⁾까지 공제가 허용됨

▣ 디지털 서비스, 판매 및 소비세 조치

- ▶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비거주자 기업이 캐나다 내 온라인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
- ▶ 10만캐나다달러⁴⁶⁾ 이상의 가격이 책정된 고급 자동차 및 개인용 항공기와 25만캐나다달러⁴⁷⁾ 이상의 보트에 대한 세금 도입

40)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07만원임

41)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98만원임

42)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1만원임

43)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93만원임

44)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9만원임

45)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만원임

46)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142만원임

- ▶ 비어 있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 비캐나다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연간 1%의 세금을 부과

나. 특정 투자소득 신고서 제출에 대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캐나다 국세청은 2021년 특정 투자소득에 대한 신고지침을 발표함⁴⁸⁾
 - ▶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에게 특정 투자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과 캐나다 거주인의 대리인으로 특정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 투자소득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서(이하 T5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⁴⁹⁾
 - 2022년 1월 10일부터는 T5 신고서를 전자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 ▣ 이번 지침에는 신고가 필요한 특정 투자소득 대상, 특정 투자소득 신고서 제출기한, 제출기한 도과에 따른 불이익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 T5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최저 100달러에서 최대 700달러 내 벌금을 부과하게 됨
 - ▶ 개인, 신탁, 기업 또는 파트너십은 T5 신고서를 준비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험 번호(SIN), 신탁 계좌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BN)를 제공해야 함에도 정보 제공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 정보에 대한 제공 거부 시 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함
 - ▶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캐나다 국세청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나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구제 조항이 포함됨
 - 구제를 승인하는 캐나다 국세청의 재량은 구제 요청이 이루어진 해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됨

47) 2021년 8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855만원임

48) IBFD, “Canada Updates Guidance on Filing Investment Income Retur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5_ca_1.html, 검색일자: 2021. 10. 26.

49) CRA, “T5 Guide - Return of Investment Incom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5/t5-guide-return-investment-income.html#chapter2>, 검색일자: 2021. 10. 26.

▾ T5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특정 투자소득은 다음과 같음

- ▶ 적격 배당금 및 적격 배당금 이외의 배당금
- ▶ 등록된 채권 또는 사채
- ▶ 기업, 협회, 조직, 기관,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출 또는 예치된 현금 및 모든 종류의 재산
- ▶ 보험증권 또는 연금계약(보험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 수용된 재산에 대한 보상
- ▶ 저작물, 발명품 또는 천연자원의 생산권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 ▶ 기업, 협회, 조직, 기관, 파트너십 또는 신탁이 만든 소득과 자본의 혼합 지불
- ▶ 연결 어음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
- ▶ 금융회사 등과 서면계약을 통해 투자한 일정 금액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
 - 1990년 이전에 취득한 투자계약의 경우 3년마다 발생한 이자를 보고해야 함
 - 1989년 이후에 취득한 투자계약의 경우 매년 발생한 이자를 보고해야 함

▾ T5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 특정 투자소득은 다음과 같음

- ▶ 개인이 지불한 혼합 지불의 이자 부분
- ▶ 개인 모기지론에 대한 이자와 같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이자
- ▶ 은행, 금융기관 또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가 포함된 기관이 대출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 ▶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적립된 금액
- ▶ 기업과 조합 단위 신탁 또는 기업과 조합이 수혜자인 신탁에서 회계연도 내에 발생했거나 지급해야 할 투자 계약에 따른 이자
- ▶ AgriStability 및 AgriInvest 프로그램에 따라 농부에게 지급되는 이자

▾ T5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없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된 전표를 제출해야 함

- ▶ 만일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누락된 전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 추가 제출할

전표의 상단에 “추가”라고 기재하여 새로 제출하는 전표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추가된 전표의 사본 1부를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다만 마감일 이후 추가로 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지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 전표를 수정할 경우 잘못 표시한 정보만 변경하면 됨

다. 2022년 최대 연금 가능 소득 발표

[조세동향 21-11호]

- ▣ 캐나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 1일, 2022년도 최대 연금 가능 소득을 발표함⁵⁰⁾

 - ▶ 발표된 2022년 캐나다 연금계획(이하 CPP)에 의한 최대 연금 가능 소득은 6만 4,900 캐나다달러⁵¹⁾로 2021년에 비해 3,300캐나다달러⁵²⁾ 증가함
 - 새로운 상한선은 캐나다의 평균 주급 및 급여의 증가분을 고려하여 CPP 입법 공식에 따라 계산됨
 - ▶ 2022년도에 6만 4,900캐나다달러 초과 소득자는 CPP에 추가 기여가 불가함
- ▣ CPP는 은퇴연금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18세에서 70세까지의 캐나다(퀘벡 외 지역) 근로자 중 연간 3,500캐나다달러⁵³⁾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CPP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 CPP 기여금은 임금에서 기본공제금(3,500캐나다달러)을 제외한 금액 중 매년 정해진 기여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절반씩 지불함
 - 단,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 ▶ CPP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는 자는 65세가 되면 CPP에 따라 연금을 받거나, 또는 70세까지 지급일을 늦추어 할증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50) CRA, “Canada Revenue Agency announce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for 202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1/canada-revenue-agency-announces-maximum-pensionable-earnings-2022.html>, 검색일자: 2021. 11. 18.

51)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74만원임

52)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8만원임

53)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만원임

▾ 2022년 기본공제금은 3,500캐나다달러로 유지됨

- ▶ 2022년 고용주 및 피고용자의 기여율은 2021년 각 5.45%에서 5.70%로, 자영업자 기여율은 2021년 10.9%에서 11.4%로 증가함
- ▶ 2022년 CPP에 대한 고용주 및 피고용자 최대 기여금은 2021년 각 3,166.45캐나다달러⁵⁴⁾에서 3,499.80캐나다달러⁵⁵⁾로 증가하였음
 - 자영업자 최대 기여금은 2021년 6,332.90캐나다달러⁵⁶⁾에서 6,999.60캐나다달러⁵⁷⁾로 증가하였음

라.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법안 추진

[조세동향 21-12호]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시행을 위한 법안(Digital Service Tax Act)의 초안을 제안함⁵⁸⁾

- ▶ 제안된 법안은 2020년 가을 경제보고서에서 발표된 DST의 시행에 관한 것임
- ▶ 캐나다는 2022년 1월 1일까지 DST의 입법을 추진하지만 다자간 성명서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는 DST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OECD 협정에 따른 다자간 접근방식에 따른 조약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할 예정임
 - 다자간 접근방식에 따른 조약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DST는 납세 대상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산정하여 계산된 세금을 시행되는 연도에 지불해야 함

▾ Digital Service Tax Act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제안된 법에 따라 DST는 아래와 같은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얻은 특정 수익(revenue)에 대해 3%의 비율로 적용됨

54)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만원임

55)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만원임

56)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만원임

57)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5만원임

58) 캐나다 정부, "Digital Services Tax Ac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12/digital-services-tax-act.html>, 검색일자: 2021. 12. 28.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한 수익
-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통한 수익
-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
- 온라인 마켓, 소셜미디어 플랫폼 또는 온라인 검색엔진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판매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얻은 수익
- ▶ DST는 두 가지 수입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기업에 적용됨
 - 납세 대상이 모든 출처에서 7억 5천만유로⁵⁹⁾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
 - 납세 대상이 해당 연도에 캐나다 범위 내 수익 중 2천만캐나다달러⁶⁰⁾를 초과한 경우
- ▶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DST 납세의무
 -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원천 및 이에 대한 계산
 - 조세회피
 - 행정 및 집행
 - 등록, 제출 및 DST의 지불
 - 이자, 위약금, 면제 및 환불
 - 기록, 정보 및 기밀성
 - 평가,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 위반 및 처벌
 - 검사
 - 증거 및 절차

59) 2021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98억 3,750만원임

60) 2021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5억 8,040만원임

II 유럽

1 영국

가. 특허박스 변경규정 적용유예기간(5년) 종료

[조세동향 21-07호]

- ▶ 영국의 특허박스 변경규정 유예기간이 2021년 6월 30일 종료되면서, 과거 규정을 적용해온 지식재산권에도 향후 변경규정을 적용하여야 함⁶¹⁾
 - ▶ 영국의 특허박스는 경쟁력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하여 R&D 투자와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도입됨
 - 특허박스 적격 이익에는 10%⁶²⁾의 세율이 적용됨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10월 영국의 특허박스를 유해 조세관행⁶³⁾으로 지정하자, 영국은 2016년 7월 변경규정을 발효시키되 이미 승인받은 특허박스 자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동 유예기간이 2021년 6월 종료됨
 - 과거 규정은 회사의 총 과세이익에 지식재산권(IP)별 기여도를 적용하여 특허박스 적용대상 이익을 식별(비례적 이익분할법)할 수 있었음
 - 변경규정하에서는 제품(군)별로 이익을 식별하여야 하며(Streaming법), 취득 가능한 R&D 활동은 자체 투입비용의 30%를 한도로 함⁶⁴⁾

61) 영국 국세청, "Corporation Tax: Patent Box - compliance with new international rules," Policy paper, 2015. 12. 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patent-box-compliance-with-new-international-rules/corporation-tax-patent-box-compliance-with-new-international-rules>, 검색일자: 2021. 7. 21.

62) 2021년 일반 법인세율은 19%임

63) 과거 규정이 유해 조세관행으로 식별된 이유는 특허박스 세율 적용신청 청구인이 R&D 활동을 영국 내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임(iam, "Eight years of the UK Patent Box - what has changed?," 2021. 3. 24., <https://www.iam-media.com/eight-years-of-the-uk-patent-box-what-has-changed>, 검색일자: 2021. 7. 21.)

64) 영국 국세청, "Corporation Tax: Patent Box - compliance with new international rules," Policy paper, 2015. 12. 9.

- ▶ 영국 국세청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인해 관련 기업의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10% 증가⁶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규정 변경 이후에도 2018년 회기까지의 특허박스 신청금액은 증가세를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⁶⁶⁾됨

나. 불확실한 조세취급 보고규정 도입

[조세동향 21-08호]

- ▣ 영국 국세청은 대기업과의 세법 해석 분쟁과 관련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 20일 대기업의 불확실한 조세취급 보고규정 초안을 공개함^{67), 68)}
 - ▶ 동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과 관련한 불확실한 조세 처리는 영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총당금 인식(회계기준과 세무취급상 차이), 또는
 - 법률에 대한 영국 국세청의 해석과 다른 해석에 기반한 세무취급, 또는
 - 법원이 세무상 처리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한(substantial) 경우
 - ▶ 보고의무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기업 및 특정 거래에 적용되며, 영국 국세청은 약 2,300개의 회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의무 대기업 기준: 매출 2억파운드⁶⁹⁾ 또는 자산 20억파운드⁷⁰⁾
 - 보고의무 건당 거래 금액 기준: 500만파운드⁷¹⁾
 - 관련 세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 보고 예외 항목은 다음과 같음

65) 영국 국세청, "Evaluation of the Patent Box," Research and analysis, 2020. 11.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valuation-of-the-patent-box>, 검색일자: 2021. 7. 21.

66) 영국 국세청, "Statistics on uptake of the Patent Box," an official statistics release, 2020. 9. 3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21792/2020_Patent_Box_Publication_-_accessible.pdf, 검색일자: 2021. 7. 21.

67) 영국 국세청, "Large businesses: notification of uncertain tax treatment," Policy Paper, 2021. 7. 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arge-businesses-notification-of-uncertain-tax-treatment/large-businesses-notification-of-uncertain-tax-treatment>, 검색일자: 2021. 8. 18.

68) JDSUPRA, "Notification of Uncertain Tax Treatment by Large Businesses in the UK," 2021. 8. 6., <https://www.jdsupra.com/legalnews/notification-of-uncertain-tax-treatment-5630210/>, 검색일자: 2021. 8. 18.

69)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00억원임

70)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조 2천억원임

71)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억원임

- 대기업 입장에서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 그룹 내 거래와 관련되고, 관련 계열사들의 법인세 순차액(the net difference across a group for corporation tax)이 500만파운드 미만일 때
- 외국법인의 영국 고정사업장 이익 및 조세심판원 해석과 동시에 관련될 때
- 이전가격 및 조세심판원 해석과 동시에 관련될 때
- ▶ 동 제도는 대기업과 영국 국세청 간 세법 해석이 달라 미납되는 세금이 많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것으로, 불확실한 조세 처리를 식별하는 영국 국세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동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1년 9월 13일이며, 2022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보고서에 적용됨

다. 보건사회돌봄세(HSC Levy) 도입

[조세동향 21-09호]

- ▼ 영국 정부는 2021년 9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사회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사회돌봄세 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⁷²⁾
- ▶ 보건사회돌봄세는 2022년 4월부터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를 각각 1.25%p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과되며, 2023년 4월부터는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 예정임
 - 국민연금 수급연령(state pension age) 이상인 고령의 근로소득자는 현재 국민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2023년 4월부터는 보건사회돌봄세(1.25%)를 부담하게 됨
 - 한편, 고소득층으로부터도 보건사회돌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소득세율을 2022년 4월부터 1.25%p 인상⁷³⁾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차기 재정법안(Finance Bill)에 반영할 예정임
- ▶ 영국 정부는 연간 세수 증가액을 보건사회돌봄세 약 132억파운드,⁷⁴⁾ 배당소득세 약

72) 영국 정부, "Health and Social Care Levy, Policy paper," 2021. 9. 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lth-and-social-care-levy/health-and-social-care-levy>, 검색일자: 2021. 9. 16.

73) 영국의 배당세율은 2021년 현재 7.5% - 32.5% - 38.1%의 누진세 구조이며, 동 누진세율을 2022년 4월부터 8.75% - 33.75% - 39.35%로 인상할 예정임(Which, "Dividend tax rates to rise in 2022: what does this mean for investors?," 2021. 9. 8., <https://www.which.co.uk/news/2021/09/dividend-tax-rates-to-rise-in-2022-what-does-this-mean-for-investors/>, 검색일자: 2021. 9. 16.)

6억파운드⁷⁵)로 예상하였고, 이는 영국 국민들의 돌봄비용 보조에 사용될 예정임⁷⁶
 - 2023년 10월 이후, 1인당 평생(lifetime) 돌봄비용이 8만 6천파운드⁷⁷)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됨

-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동 조치가 올바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접근방식(right, reasonable and fair approach)이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임⁷⁸
 - 비용부담을 기업과 안분하기 위해 소득세가 아닌 국민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함
 - 배당세 인상을 통해 부유한 사업주(better-off business owners)나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기여(fair contributions)하게 했고, 보건사회돌봄세 세수의 절반은 소득 상위 14%가 부담하게 됨

라. 2021~22년 제2차 재정법안 발의

[조세동향 21-11호]

- ▼ 영국 재무부는 2021년 11월 4일, 2021/22년 제2차 재정법안(Finance Bill)을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세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⁷⁹,⁸⁰
 - ▶ 2023년 4월에 예정된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19 → 25%)과 연관된 세목에 대한 후속 입법을 진행함
 - 영국 경제에 대한 은행의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위해 법인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은행추가세(banking surcharge)를 2023년 4월부터 8%에서 3%로 인하하고, 그룹별 공제액을 2,500만파운드⁸¹)에서 1억 파운드⁸²)로 증액시킴으로써 법인세

74) 2021년 9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조원임

75) 2021년 9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원임

76) 영국 하원 도서관, "Health and Social Care Levy, Research Briefing," 2021. 9. 1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dp-2021-0139/>, 검색일자: 2021. 9. 16.

77) 2021년 9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천만원임

78) 영국 하원 도서관, "Health and Social Care Levy, Research Briefing," 2021. 9. 1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dp-2021-0139/>, 검색일자: 2021. 9. 16.

79) 영국 국회, "Finance (No. 2) Bill," 2021. 11. 15., <https://bills.parliament.uk/bills/3060>, 검색일자: 2021. 11. 23.

80) KPMG, "Finance Bill 2022," 2021. 11. 8.,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11/tmd-finance-bill-2022.html>, 검색일자: 2021. 11. 23.

81)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0억원임

82)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0억원임

최고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킴⁸³⁾

- 해외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세율을 2023년 4월부터 25%에서 31%로 인상하여 법인세 최고 세율과의 차이를 유지시킴
- ▶ 극장·박물관·미술관·오케스트라 등 창의 분야(creative sector)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시 상향 조정함⁸⁴⁾
 - 현행 세액공제(tax credit)율은 최고 25%이며,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최고 50%,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최고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됨
-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비, 건물 보수공사 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 신설 등의 세제상 조치를 취함
 - 자산관리 및 투자펀드 입지로서 영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산지주회사(Asset Holding Companies) 제도를 2022년 4월부터 도입함으로써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의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함⁸⁵⁾
 - 주택 외피(cladding) 보수공사 재원 충당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개발세(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 Tax)를 신설하여 2022년 4월부터 주거용 부동산개발 그룹별로 2,500만파운드⁸⁶⁾를 공제한 이익에 대해 4% 세율로 과세하기로 함⁸⁷⁾

마.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입장 확인

[조세동향 21-12호]

▼ 영국 국세청은 2021년 11월 22일, 암호자산 매뉴얼 업데이트를 통해 암호자산(cryptoassets)

83) 영국 국세청, "Amendments to the surcharge on banking companies, Policy paper," 2021. 10.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mendments-to-the-surcharge-on-banking-companies/amendments-to-the-surcharge-on-banking-companies>, 검색일자: 2021. 11. 23.

84) KPMG, "Creative sector tax reliefs," 2021. 11. 8.,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11/tmd-fb-creative-sector-tax-reliefs.html>, 검색일자: 2021. 11. 23.

85) 영국 국세청, "New tax regime for asset holding companies(AHCs)," Policy paper, 2021. 10.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ew-tax-regime-for-asset-holding-companies-ahcs/new-tax-regime-for-asset-holding-companies-ahcs>, 검색일자: 2021. 11. 23.

86)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0억원임

87) 영국 국세청, "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 Tax," Policy paper, 2021. 10.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sidential-property-developer-tax/residential-property-developer-tax>, 검색일자: 2021. 11. 23.

거래소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DST) 부과 입장을 확인함⁸⁸⁾

- ▶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수익(revenue)이 5억파운드⁸⁹⁾를 초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가 영국에서 발생시킨 초과 수익에 부과(2%)되는 세금임⁹⁰⁾, ⁹¹⁾
 - 디지털 서비스는 ① 소셜미디어 ② 인터넷 검색엔진 ③ 온라인 시장(online marketplace)으로 구성됨
 - 온라인 금융시장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부과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외되며, 수익의 절반 초과액이 금융상품, 원자재 상품(commodity), 외환(foreign exchange)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장을 온라인 금융시장(online financial marketplace)으로 봄
- ▶ 암호자산 거래소를 디지털 서비스세가 면제되는 온라인 금융시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암호자산의 일반적인 특성과 영국 국세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임
 - 암호자산은 일반적으로 ① 현금 또는 ② 현금 및 금융상품을 주고받을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계약이 아니므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이 아님
 - 영국 국세청은 암호자산을 원자재 상품(commodity), 통화(currency) 및 화폐(money)로 보지 않음

2 프랑스

가. 2022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9호]

-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9월 22일, 2022년도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 pour 2022)을 발표함⁹²⁾

88) 영국 국세청, "Cryptoassets Manual," 2021. 11. 22.,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8000>, 검색일자: 2021. 12. 23.

89)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천억원임

90) 연간 2,500만파운드(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0억원임)가 공제(annual allowance)됨(영국 국세청, "Digital Services Tax Manual," 최초 발행 2020. 3. 19.,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digital-services-tax/dst01200>, 검색일자: 2021. 12. 23.)

91) 디지털 서비스세는 OECD가 주도하는 디지털세(Pillar 1)가 발효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MCL, "2% Digital Tax on UK-based Crypto Exchanges Has Been Confirmed," 2021. 12. 4., <https://mcl.accountants/news/digital-tax-on-uk-crypto-exchanges/>, 검색일자: 2021. 12. 23.)

- ▶ 주요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세일반법」의 해당 규정을 수정함
- ▶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업의 경제활동 재개 등을 고려한 조세정책을 제안함
- ▣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 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함⁹³⁾

〈표 II-1〉 2021~2022년 프랑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단위: %)

2021년	2022년	세율	2021년	2022년	세율
1,420유로 미만	1,440유로 미만	0	3,104 ~ 3,494유로	3,147 ~ 3,543유로	11.9
1,420 ~ 1,475유로 ¹⁾	1,440 ~ 1,496유로	0.5	3,494 ~ 4,077유로	3,543 ~ 4,134유로	13.8
1,475 ~ 1,570유로	1,496 ~ 1,592유로	1.3	4,077 ~ 4,888유로	4,134 ~ 4,956유로	15.8
1,570 ~ 1,676유로	1,592 ~ 1,699유로	2.1	4,888 ~ 6,116유로	4,956 ~ 6,202유로	17.9
1,676 ~ 1,791유로	1,699 ~ 1,816유로	2.9	6,116 ~ 7,640유로	6,202 ~ 7,747유로	20
1,791 ~ 1,887유로	1,816 ~ 1,913유로	3.5	7,640 ~ 10,604유로	7,747 ~ 10,752유로	24
1,887 ~ 2,012유로	1,913 ~ 2,040유로	4.1	10,604 ~ 14,362유로	10,752 ~ 14,563유로	28
2,012 ~ 2,381유로	2,040 ~ 2,414유로	5.3	14,362 ~ 22,545유로	14,563 ~ 22,860유로	33
2,381 ~ 2,725유로	2,414 ~ 2,763유로	7.5	22,545 ~ 48,292유로	22,860 ~ 48,967유로	38
2,725 ~ 3,104유로	2,763 ~ 3,147유로	9.9	48,292유로 이상	48,967유로 이상	43

주: 1) 1,420유로 이상~1,475유로 미만, 이하 같음

자료: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검색일자: 2021. 9. 23.; Légifrance, "Code général des impôts,"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69577/LEGISCTA000033779948/?anchor=LEGIARTI000043662565#LEGIARTI000043662565, 검색일자: 2021. 9. 23.

- ▶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구성원이 부담하는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상업이익(산업, 상업 또는 수공업 등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⁹⁴⁾ 산출 시 영업권의

92) IBFD, "Government Presents Finance Bill for 2022," 2021.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22_fr_1.html, 검색일자: 2021. 9. 23.;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검색일자: 2021. 9. 23.

93) 프랑스 「조세기본법」 제204H조 III-1항 a)호

94)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34조 및 제35조

감가상각액 공제를 일시적으로 허용함⁹⁵⁾

- 예산안은 「상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업⁹⁶⁾이 취득한 영업권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동안 또는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회계상 감가상각을 허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세 목적상 감가상각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인 규정을 추가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 및 상업 이익’ 산출 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의 공제를 허용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프랑스 비거주 기업에 대한 원천징수세 규정을 수정하고, 기본 법인세율을 인하함

- ▶ 프랑스 비거주 기업이 비급여 소득⁹⁷⁾에 대하여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총액에 부과된 원천징수액과 공제 후 순이익에 부과된 원천징수액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 절차를 도입함⁹⁸⁾
 - 일련의 프랑스 대법원 판결⁹⁹⁾을 반영하고 프랑스 법을 EU 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거주 기업이 최종적으로 순이익에 기초하여 원천징수 책임을 지도록 함¹⁰⁰⁾
 - EU 또는 EEA 내에 설립된 기업에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비용 10%를 즉시 일괄공제한 후 원천징수세가 적용됨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 로열티 및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적용됨
- ▶ ‘기본 법인세율’은 2021년 26.5%에서 2022년 25%로 인하될 예정임
 - ‘기본 법인세율’ 인하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제안되어 기존 33.33%에서 2022년 25%를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왔음¹⁰¹⁾

95)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39조

96) 프랑스 「상법」 제L123-16조

97) 주로 지식재산권 및 프랑스 내에서 제공되거나 사용된 모든 종류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한 대가를 의미함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182B조)

98) 기존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 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소득 및 로열티는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대부분의 경우 위 원천징수세는 적용되지 않거나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서 세율이 경감됨)가 부과되고, 반대로 거주 기업은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됨

99) n° 423698(22 November 2019), n° 434364(9 September 2020), n° 438135(11 May 2021).

100) KPMG, “France: Tax measures in finance bill for 2022,”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9/tnf-france-tax-measures-finance-bill-2022.html>, 검색일자: 2021. 10. 1.

101) IBFD, “Finance Bill for 2018 - corporate taxation and VAT,” 2017. 10. 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17-10-05_fr_2%23tns_2017-10-05_fr_2, 검색일자: 2021. 10. 1.

-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 조기 공제를 허용하고, 금융업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선택권의 범위 규정을 완화함
 -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기 전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
 -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고, 향후 재화 공급을 위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없음¹⁰²⁾
 -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IT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 금융업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선택권 범위 규정을 완화함
 - 금융업 종사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선택권 행사 시 모든 영업활동 범위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활동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금융업 종사자는 선택에 의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 가능함(면세 포기)

3 독일

가. 경마복권법 개정안 공표

[조세동향 21-07호]

-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가 입법청원한 경마복권법과 그 시행규정의 개정안이 2021년 6월 25일 연방상원에서 가결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됨¹⁰³⁾
 - ▶ 금번 개정안에서는 경마복권법(Rennwett - und Lotteriegesetz)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있었으며 세법적으로는 가상의 게임머신(virtuelles AutomatenSpiel)을 이용한 새로운 사행성 게임물과 온라인 포커(Online-Poker)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함

102)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269조 2-a조

103) 독일 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II/19_Legislaturperiode/2021-06-30-Aend-RennwLottG/0-Gesetz.html, 검색일자: 2021. 7. 19.

- ▶ 가상공간을 징세 권리가 있는 특정한 주에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모든 종류의 가상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세금은 가상의 사행성 게임의 운영자인 납세의무자가 직접 계산하고 매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 만약 납세의무자의 거주지, 거소, 사업주소지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경제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관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음
- ▼ 모든 종류의 가상의 사행성 게임은 시행된 게임 한 판(Der geleistete Spieleinsatz)당 세율 5.3%로 통일하여 과세되며,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체에서 시행된 가상의 사행성 게임이라도 과세 대상임
 - ▶ 시행된 게임 한 판이라는 것은 게임 참가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 투입한 모든 비용을 일컫음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개정안의 새로운 과세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3억 6,500만유로¹⁰⁴⁾의 추가 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¹⁰⁵⁾

나. 2020~2021 조세정책 데이터 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21-08호]

- ▼ 독일 연방재무부가 연방통계청, 연방은행,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원(FIT)과 협력하여 2005~2021년 역대 조세수입에 관한 통계와 2020/2021년도 조세정책을 통한 지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¹⁰⁶⁾
- ▼ 보고서는 연방통계청의 특별평가(Sonderauswertungen)와 재정데이터, 세수추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 2020년도 세수는 약 7,280억유로¹⁰⁷⁾였으며, 세수추계 결과 2025년도 세수는 9천억유로¹⁰⁸⁾

104) 2021년 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79억원임

105)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입법청원안, https://www.bundesrat.de/SharedDocs/drucksachen/2021/0201-0300/209-21.pdf?__blob=publicationFile&v=1, 검색일자: 2021. 7. 19.

106) 독일 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atensammlung-zur-steuerpolitik-2020-2021.html, 검색일자: 2021. 8. 25.

107)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01조 7,935억원임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도 상위 10% 소득세 부담자가 총소득세수의 약 55%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 2016년도 소득세 최고 세율(Einkommensteuer-Höchstsatz)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약 260만명이었으며 이들이 소득세수의 46%를 납부함
- ▶ 2010~2019년 사이 독일 민간가구의 현금자산이 6조 7천억유로¹⁰⁹⁾로 약 2조 2천억유로¹¹⁰⁾ 증가함

▣ 보고서의 제1장은 세수률, 제2~8장은 각각 소득세, 사업체 부과세목, 부가가치세, 상속세, 자동차세, 에너지전기세, 교회세의 자세한 통계들, 제9장은 사회정책적 조세법규의 재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음

- ▶ 제1장 세수(Steueraufkommen)에서는 역대 항목별 세수와 2017년 10월~ 2021년 10월 임기인 제19기 연방국회에서 제정한 15개 세법의 재정효과를 보고함
 - 입법된 15개 세법 중 「항공세법개정법」¹¹¹⁾만 연간 약 7억 8,500만유로¹¹²⁾의 세수확대 효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세수를 감소시킴

〈표 11-2〉 제19기 연방국회가 제정한 주요 세법의 재정 영향 요약

(단위: 백만유로)

법	단위	연간 효과	과세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세법상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이행법 ¹⁾ (2019. 12. 21.)	총계	-1,685	-	-425	-630	-1,165	-1,370	-1,420	-
	연방	-1,178	-	-224	-701	-945	-1,038	-1,248	-
	주	-328	-	-192	+98	-118	-201	-35	-
	게마인데	-179	-	-9	-27	-102	-131	-137	-

108)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38조 4,810억원임

109)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22조 6,070억원임

110)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27조 3,980억원임

111) 「항공세법개정법」,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verkehrssteuergesetzes vom 12. Dezember 2019(BGBl. I, 2019, Nr. 48, S. 2492 ff.)

112)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803억원임

〈표 II-2〉 의 계속

(단위: 백만유로)

법	단위	연간 효과	과세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제1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²⁾ (2020. 6. 19.)	총계	-2,730	-	-235	-2,495	-	-	-	-
	연방	-1,437	-	-121	-1,316	-	-	-	-
	주	-1,231	-	-105	-1,126	-	-	-	-
	게마인데	-62	-	-9	-53	-	-	-	-
제2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³⁾ (2020. 6. 29.)	총계	-28,500	-	-23,385	-12,840	-5,370	-6,860	-3,085	-
	연방	-13,885	-	-11,463	-6,260	-1,515	-2,289	-1,119	-
	주	-12,259	-	-10,225	-5,396	-1,430	-2,130	-1,044	-
	게마인데	-2,356	-	-1,697	-1,184	-2,425	-2,441	-922	-

주: 1) 「세법상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이행법」, Gesetz zur Umsetzung des Klimaschutzprogramms 2030 im Steuerrecht vom 21. Dezember 2019(BGBl. I, 2019, Nr. 52, S. 2886 ff.)

2) 「제1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tigung der Corona-Krise(Corona-Steuerhilfegesetz) vom 19. Juni 2020(BGBl. I, 2020, Nr. 30, S. 1385 ff.)

3) 「제2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Zweites 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tigung der Corona-Krise(Zweites Corona-Steuerhilfegesetz) vom 29. Juni 2020(BGBl. I, 2020, Nr. 31, S. 1512 ff.)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에서 발간한 Datensammlung zur Steuerpolitik(조세정책 데이터 보고서) 2020/2021에서 발췌함

- ▶ 제9장에서는 사회정책적 조세법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그 재정효과를 요약하였음
- 자녀양육자, 기혼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혜택을 포함하는 세법상의 가족정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780억 9,500만유로¹¹³⁾에 달하는 재정의 부(-)의 효과를 가져옴

〈표 II-3〉 사회정책적 조세법규의 재정적 영향 요약

(단위: 백만유로)

법령	2021년
A. 사회정책적 근거로 마련된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39호 일요일, 공휴일, 심야 노동자 보조금에 대한 면세규정 외 4건	-3,745
B. 조세기능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비통상적인 지출부담에 대한 공제규정 외 6건	-5,865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비통상적인 지출부담: 「소득세법」 제33a조 제1항 친족의 생활 유지와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공제규정 외 1건	-1,085

113)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7조 4,844억원임

〈표 11-3〉 의 계속

(단위: 백만유로)

법령	2021년
C. 가족정책적 보상 대책으로 마련된 법령 아동수당 및 자녀양육공제의 효과를 내는 다수의 세제정책	-49,240
D. 이분이승법 절차에 대한 법령	-22,990
E. 세액감면에 대한 법령 「소득세법」 제35a조 제3항 리모델링, 유지보수 수공업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감세규정 외 1건	-2,740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에서 발간한 Datensammlung zur Steuerpolitik(조세정책 데이터 보고서) 2020/2021에서 발췌함

다. 비협력 국가와의 지역 지정 시행령 공개

[조세동향 21-11호]

독일 재무부는 2021년 10월 25일, 비협력 국가와 지역 목록을 지정한 시행령을 공개함¹¹⁴⁾

- ▶ 「조세회피방지법(StAbwG)」 시행의 일환으로 비협력 국가와 지역 목록을 지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공개함
 - 「조세회피방지법」은 국제적 조세회피와 불공정 조세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 해당 목록으로 지정되면 지정 지역의 거주자 기업과의 거래 관련 비용 공제 제한, 강화된 정보보고 의무, 지정 지역의 거주자 기업과 거래하는 개인·기업들의 협력 의무가 부여됨
 -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은 미국령 사모아, 피지, 괌, 팔라우, 파나마,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임

114)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 3 des Steueroasen-Abwehrgesetzes (Steueroasenabwehrverordnung - StAbwV),"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10-25-StAbwV/0-Verordnung.html, 검색일자: 2021. 11. 29.;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Decree Listing Non-Cooperative States and Territor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8_de_1.html, 검색일자: 2021. 11. 29.

라. 코로나19 지원 세제 연장안 발표

[조세동향 21-12호]

- ▣ 독일 재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 지원 세제를 연장함

 - ▶ 해당 지원 세제 연장에는 조세 관련 유동성 지원 조치와 부가가치세 경감조치 등이 포함됨¹¹⁵⁾
 - 조세 관련 유동성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 해당 유동성 지원에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선납 세금을 줄이는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체납한 경우 집행 조치 및 체납 위약금이 2021년 9월 30일까지 면제됨¹¹⁶⁾
 - ▶ 코로나19와 관련된 품목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함¹¹⁷⁾
 -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①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구 공급과 재료, 시설 및 직원 제공 ②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투입되는 부가가치세 세액이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의 대상이 됨
 - ▶ 세정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31일이 기한인 납세 연기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3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적격 납세자에 대한 이자 면제를 지원함¹¹⁸⁾
- ▣ 독일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시간 근로수당 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¹¹⁹⁾

 - ▶ 해당 단시간 근로수당 특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최소 10%의 인력이 일감 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임금이 감소한 경우 독일 정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임

115) IBFD, "COVID-19 Pandemic: Germany Prolongs Tax-Related Liquidity Assistance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3-24_de_4%23tns_2021-03-24_de_4, 검색일자: 2021. 12. 30.

116) Bloomberg Law News, "Germany MOF Announces Further Extension of Deadlines, Tax Deferral Relief Measures Due to Coronavirus," 2021. 12. 12.

117) Bloomberg Law News, "Germany MOF Extends VAT Relief Measures Due to Coronavirus," 2022. 1. 25.

118) Bloomberg Law News, "Germany MOF Announces Further Extension of Deadlines, Tax Deferral Relief Measures Due to Coronavirus," 2021. 12. 12.

119) Bloomberg Law News, "Germany Gazettes Regulation Further Extending Short-Time Work Allowance Regulation Due to Coronavirus," 2021. 12. 9.

- 공공부문 근로자 및 공공소유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단시간 근로수당제도하에서는 누락된 순임금의 60%(근로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67%) 만큼 단기 근로수당을 제공받으나, 이번 단시간 근로수당 특례로 월 순소득의 90%, 95% 까지 누락된 순임금을 보전받음¹²⁰⁾

4 스페인

가.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표준 등 관보 게재

[조세동향 21-07호]

- ▾ 스페인 국세청은 2021년 6월 29일,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대한 과세 대상, 과세표준 및 면제 대상 등을 관보에 게재함^{121), 122)}
- ▾ 디지털 서비스세(DST) 과세표준은 온라인 광고, 온라인 중개 및 데이터 전송 등 명확하게 디지털 서비스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하며 각각의 거래별로 결정됨
 - ▶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신고 당시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결정된 경우, 과세표준의 수정은 환급신청 또는 자진신고 납세제도의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세무조정 절차를 따름
 - 환급신고 당시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세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립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 세무조정 절차를 따름
 - 세금 조정은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자는 발생할 수 있음

120) Eurofound, "Short-time working allowance,"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mcc/erm/support-instrument/short-time-working-allowance>, 검색일자: 2021. 12. 30.

121) IBFD, "Tax Administration Clarifies Determination of Taxable Base for Digital Services Tax," 2021. 7.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02_es_1.html, 검색일자: 2021. 7. 20.

122) 스페인 관보, "Imposta di consumo sulle bevande edulcorate," 2021. 6. 29., <https://www.boe.es/boe/dias/2021/06/29/pdfs/BOE-A-2021-10745.pdf>, 검색일자: 2021. 7. 20.

- ▾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광고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로 간주됨

 - ▶ 납세자는 광고를 삽입하는 사람 또는 인터페이스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광고 장소를 관리하기로 계약한 제3자가 될 수 있음

- ▾ 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면제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만 적용됨

 - ▶ 온라인 중개 서비스란, 상호작용 서비스(interaction services)가 있거나 없는 중개를 모두 포함하며,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적어도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함
 - 거래가 수행되는 동안 해당 장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
 - ▶ 공급자의 웹 페이지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공급자가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는 온라인 광고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 단, 특수 관계자 간 디지털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100%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 모회사에 의해 참여한 그룹 내 거래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비스세의 면제가 적용됨

- ▾ 디지털 서비스세의 납세의무는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하며, 거래는 인보이스가 발생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나.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세제지원 조치

[조세동향 21-07호]

-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6월 24일, 전기요금 상승 추세를 늦추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인하하고 전력 생산에 대한 세금을 유예함^{123), 124)}

123) IBFD, "Spain Introduces Tax Measures To Cut Down Electricity Prices," 2021. 6.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28_es_1.html, 검색일자: 2021. 7. 20.

124) Bartolome Briones, "ROYAL DECREE-LAW 12/2021, OF 24 JUNE ADOPTING URGENT MEASURES IN THE FIELD OF ENERGY TAXATION AND ENERGY GENERATION, AND ON THE REGULATION FEE MANAGEMENT AND THE WATER RATE, HAS BEEN PUBLISHED," 2021. 7. 6., <https://www.bartolomebriones.com/en/blog/royal-decree-law-12-2021-of-24-june-adopting-urgent-measures-in-the-field-of-energy-taxation-and-energy-generation-and-on-the-regulation-fee-management-and-the-water-rate-has-been-published>, 검색일자: 2021. 8. 4.

- ▶ 해당 조치는 Royal Decree Law 12/2021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2021년 6월 25일 관보에 게재됨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021년 6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력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21%에서 10%로 적용받을 수 있음
 - ▶ 10kW 미만의 계약전력을 가진 계약자로서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 직전 달에 해당하는 도매전력시장의 산술평균 가격이 1MWh당 45유로¹²⁵⁾ 이상인 경우
 - ▶ 취약계층 소비자로서 2017년 10월 6일의 Royal Decree 897/2017 조항에 따라 사회적 전기요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 전력 생산에 대한 세금(Tax on the Value of Electric Power, IVPEE)은 예외적으로 2021년 3분기 전력 생산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함

다.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세항목 개정

[조세동향 21-08호]

-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7월 10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항목의 내용을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관보에 게재함^{126), 127)}
 - ▶ 해당 법령은 Law 11/2021로 공포되었으며,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Directive 2016/1164(2016))을 국내 법제화하는 데 중점을 둠
- ▣ 주요 개정 조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 그리고 조세통칙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128), 129)}

125) 2021년 8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원임

126) IBFD, "Spain Heavily Modifies Various Tax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 2021.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1_es_1.html, 검색일자: 2021. 8. 17.

127) 스페인 정부, "Ley 11/2021," <https://www.boe.es/boe/dias/2021/07/10/pdfs/BOE-A-2021-11473.pdf>, 2021. 7. 10., 검색일자: 2021. 8. 18.

128) IBFD, "Corporate Income Tax: Spain Implements ATAD's Exit Tax and CFC Rules As Part Of 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 2021.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21_es_2, 검색일자: 2021. 8. 17.

129) IBFD, "General Tax Legislation: Spain Imposes New Information Obligation on Crypto Holders As Part Of

- ▶ 고정사업장(PE)에서 파생되는 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ATAD의 제7조와 제8조를 구현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CFC) 규칙을 개정
 - 특정외국법인(CFC)의 범위는 자본, 지분, 수익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스페인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CIT)가 스페인에서 납부할 세금의 75% 미만인 경우로 한함
 - 고정사업장(PE) 소득을 포함하도록 특정외국법인(CFC) 규칙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스페인 국내법에 의해 제공되던 세금면제를 제외함
- ▶ EU 회원국 또는 EEA 협정 국가로 이전된 자산에 대한 세금 유예를 5년으로 제한하는 ATAD 제5조를 구현하여 출국세(Exit tax) 제도를 개정
- ▶ 현재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알려진 조세 피난처의 개념을 확장
 -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이란, 조세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또는 세금이 낮거나 없는 지역을 뜻함
- ▶ 부동산 투자신탁 법인(SOCIMI 또는 REIC)의 미분배 이익에 대해 15%의 특별세를 도입
 - 미분배 이익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지 않거나 재투자되지 않는 경우 특별세를 적용하도록 함
- ▶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등록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 스페인 및 해외에서 암호화폐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는 스페인 중앙은행(Banco de España)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고객 식별과 정보 보존 및 업데이트 등의 의무를 지님¹³⁰⁾
 - 등록의무 기업은 암호화폐를 스페인 통화로 교환하는 서비스업체, 암호화폐 지갑 관리인 및 암호화폐 투자 펀드 관리 기업들임
 - 공개되는 거래정보는 암호화폐의 취득, 전송, 교환, 양도, 수집 및 징수 등 거래에 참여한 자와 양도된 암호화폐의 종류 및 수량, 거래가격 및 날짜 등으로 구성됨

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 2021.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21_es_5, 검색일자: 2021. 8. 17.

130) mobbeel, “Cryptocurrencies have to comply with AML requirements in Spain,” 2021. 6. 16., <https://www.mobbeel.com/en/blog/cryptocurrencies-have-to-comply-with-aml-requirements-in-spain/>, 검색일자: 2021. 9. 3.

라.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 조세 조치 시행

[조세동향 21-09호]

-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9월 14일, 에너지 수급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전기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세율을 인하함¹³¹⁾

 - ▶ 2021년 6월 24일 Royal decree Law 12/2021에서 시행된 조치에서 좀 더 강화하여 2021년 9월 14일의 Royal Decree Law 17/2021로 개정되었으며,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됨

- ▣ 전력 생산에 대한 세금(Impuesto sobre el Valor de la Producción de la Energía Eléctrica, IVPEE)이 2021년 4분기까지 면제됨

 - ▶ 기존에는 2021년 3분기까지 면제 대상이었음

- ▣ 전기 공급에 적용되는 전기세(Impuesto Especial sobre la Electricidad: IEE)가 2021년 9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0.5%로 한시적으로 감면됨

 - ▶ 세율은 5.11269632%에서 0.5%로 인하되었으며, 감면금액은 전기세 청구서의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에 따라 계산됨
 - ▶ 단, 전기세 청구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0.5%의 세율을 적용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의 에너지과세지침(2003/96)에서 요구하는 최저 세율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금액보다 낮을 수 없음
 - 업무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경우 1MWh당 0.5유로¹³²⁾
 - 비업무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경우 1MWh당 1.0유로¹³³⁾

131) IBFD, "Government Implements Additional Tax Measures to Cut Down Prices of Electricity," 2021. 8.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15_es_1.html, 검색일자: 2021. 9. 23.

132) 2021년 9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693원임

133) 2021년 9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1,386원임

마. 2022년도 예산 초안 국회 제출

[조세동향 21-11호]

-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 2022년도 예산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¹³⁴⁾, ¹³⁵⁾

 - ▶ 주요 내용은 OECD 주도하에 이루어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안에 따라 법인세 15% 최저한세율을 설정, 기업의 주거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및 연간 복지제도 기여금의 세액공제 혜택 축소 등이 있음
-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법인세의 핵심 요소는 법인세 15% 최저한세율 설정과 기업의 주거지 임대료 세액공제 축소 등임

 - ▶ 법인세 15%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 기업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 이전 12개월 동안 연간 순매출액이 2천만유로¹³⁶⁾ 이상인 기업과 연결 조세제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적용됨
 - 단, 비정부기구(NGO), 개방형 변동자본투자회사(SICAV), 투자펀드, 부동산투자회사 등 세율이 '0'이거나 인하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금융회사와 탄화수소 매장지 및 지하 저장시설의 탐사,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일반세율은 30%이며 최저한세율은 18%임
 - 새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일반세율은 15%이며 최저한세율은 10%임
 - ▶ 주거 특별임대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주거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85%에서 40%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개인소득세의 핵심 요소는 복지제도에 대한 연간 기여금의 세액공제 축소임

 - ▶ 개인연금, 사회보장 상호혜택, 보장저축제도, 회사저축제도 및 종속보험 등 복지제도의 연간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2천유로에서 1,500유로¹³⁷⁾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134) IBFD, "Budget Bill 2022: Government Proposes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of 15%," 2021.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5_es_1.html, 검색일자: 2021. 11. 17.

135) 스페인 의회, "21/000070 Proyecto de Ley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para el año 2022," 2021. 10. 15.,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4/CONG/BOCG/A/BOCG-14-A-70-1-C1.PDF, 검색일자: 2021. 11. 17.

136) 2021년 1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7억 8,280만원임

137) 2021년 1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267만원, 200만원임

바.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개정

[조세동향 21-11호]

-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1월 8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른 차익과 관련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납부능력 원칙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객관적 계산법을 조정하고 직접계산법을 도입함¹³⁸⁾

 -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6일,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객관적 계산법을 정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Case 182/2021)¹³⁹⁾을 내림
 -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법령(Royal Decree-Law 26/2021)으로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함
- ▣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은 객관적 계산법을 일부 조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납세자 요청에 따라 직접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 기존의 객관적 계산법을 일부 조정한 방법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 목적을 위해 토지 가치를 최대 15%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
 -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의 가치에 적용되는 종전의 연간 백분율을 재산 취득 후 경과된 연수에 따라 설정된 최대 계수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수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매년 갱신됨
 - ▶ 납세자 요청에 따른 직접계산법의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a safe harbour rule)
 -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손실매각), 비과세 처리¹⁴⁰⁾
- ▣ 또한, 투기적 거래회피를 위해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새롭게 과세하도록 개정됨

138) IBFD, "Spanish Government Amends Method of Calculation of Taxable Base of Local Tax on Gains from Immovable Property Follow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21. 1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10_es_1.html, 검색일자: 2021. 11. 17.

139) 스페인 헌법재판소, https://www.tribunalconstitucional.es/NotasDePrensaDocumentos/NP_2021_102/2020-4433-STC.pdf, 2021. 11. 3., 검색일자: 2021. 11. 17.

140) 단, 부동산 보유기간은 신규 취득자가 후속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익을 계산할 목적으로 갱신됨

사. 전기세 감면 조치 연장

[조세동향 21-12호]

-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2월 21일, 전력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실행한 전기세 감면의 연장 조치를 법령(Royal Decree Law 29/2021)으로 공표함¹⁴¹⁾

 - ▶ 2021년 3분기부터 시행한 전력 생산에 대한 세금(Impuesto sobre el Valor de la Producción de la Energía Eléctrica) 부과 일시 중단을 2022년 1분기까지 연장함
 - ▶ 202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 특정 전력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21%에서 10%로 인하한 조치를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함
 - ▶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 전기 공급에 적용되는 전기세(Impuesto Especial sobre la Electricidad)로 5.11269632%에서 0.5%로 인하된 세율의 적용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함

- ▣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위생용품과 마스크의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 적용기한을 연장함

 - ▶ 위생용품의 부가가치세율을 0%로 인하한 조치와 일회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4%로 인하한 조치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5 그리스

가. 특정 섬에 대한 영구적인 부가가치세율 감면 공식 채택

[조세동향 21-07호]

-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7월 5일, 사모스(Samos), 레로스(Leros), 키오스(Chios), 레스보스(Lesbos), 코스(Kos)에서 제3국 망명신청자 또는 난민을 위한 이민자 수용 및 환대

141) IBFD, "Spain Extends Tax Measures to Cut Down Electricity Prices," 2021.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22_es_1.html, 검색일자: 2021. 12. 27.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 17%의 부가가치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할 것을 공식 발표함¹⁴²⁾

- ▶ Law 2859/2000(VAT Code) 제21조의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24%에서 7%p 인하한 17%가 적용됨¹⁴³⁾
- ▶ 해당 섬들에 대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 적용은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6개월마다 갱신해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음¹⁴⁴⁾

나. 개인소득세의 감면기한 연장

[조세동향 21-08호]

-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8월 3일, 2020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는 개인에게 3%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함^{145), 146)}
 - ▶ 기존 2021년 7월 30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 3%의 개인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1년 8월 27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31일까지 일괄납부를 해야 함
 - ▶ 개인소득세 신고서는 2021년 9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1년 7월과 8월분의 분할납부는 2021년 9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함

142) IBFD, "Greece Officially Adopts Permanent Reduced VAT Rates for Certain Islands," 2021.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05_gr_1.html, 검색일자: 2021. 7. 20.

143) 그리스 재무부, "Παράταση ισχύος των μειωμένων συντελεστών ΦΠΑ σε Κω, Λέρο, Λέσβο, Σάμο και Χίο," https://www.minfin.gr/web/guest/deltia-typou/-/asset_publisher/4kqvD0lBldee/content/paratase-ischyos-ton-meiomnenon-synteleston-pha-se-ko-lero-lesbo-samo-kai-chio-eos-tis-30-iouniou-2021, 검색일자: 2021. 8. 4.

144) GTP, "Parliament Approves Permanent VAT Reduction for 5 Greek Islands," 2021. 6. 25., <https://news.gtp.gr/2021/06/25/parliament-approves-permanent-vat-reduction-for-5-greek-islands/>, 검색일자: 2021. 7. 20.

145)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Grants 3% Reduction in Tax Due in Certain Cases," 2021. 8.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1_gr_2.html, 검색일자: 2021. 8. 17.

146) 그리스 재무부, "Παρατείνεται η προθεσμία υποβολής των φορολογικών δηλώσεων έως τις 10 Σεπτεμβρ," https://www.minfin.gr/web/guest/grapheio-typou/-/asset_publisher/coBUZhPGE9t9/content/parateinetai-e-prothesmia-y-poboles-ton-phorologikon-deloseon-eos-tis-10-septembriou-2021?inheritRedirect=false&redirect=https%3A%2F%2Fwww.minfin.gr%2Fweb%2Fguest%2Fgrapheio-typou%3Fp_p_id%3D101_INSTANCE_coBUZhPGE9t9%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 검색일자: 2021. 8. 17.

다. 2022년도 예산 초안 국회 제출

[조세동향 21-10호]

-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10월 4일, 2022년 예산 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147), 148)}

 - ▶ 주요 내용은 법인세를 24%에서 22%로 인하, 중소기업 간 합병과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직계가족에 대한 80만유로까지 증여세 면제 등이 있음

-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법인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 2021년 이후 매출과 관련하여 법인세(CIT)를 24%에서 22%로 인하
 - ▶ 2021년 10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인지세를 1%에서 0.50%로 인하
 - ▶ 중소기업 간 합병 및 협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 30%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
 - 합병 시 최대 100만유로, 협업 시 10만유로의 법인세 감면 혜택¹⁴⁹⁾
 -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선지급 법인세를 75% 감면

-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 2021년 10월 1일부터 직계가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기준금액이 15만유로에서 80만유로로 증가¹⁵⁰⁾
 - ▶ 직원 및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의 3% 감면
 -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선지급 개인 소득세(PIT)를 55% 감면
 - ▶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전자상거래 지출 금액의

147) IBFD, "Greece Enacts Reduced 22% Corporate Income Tax Rate From 2022," 2021. 10.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18_gr_1.html, 검색일자: 2021. 10. 25.

148) 그리스 의회, "Draft Budget 2022," 2021. 10. 4.,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b-8ea6-aebdc768f4f7/%CE%A0%CF%81%CE%BF%CF%83%CF%87%CE%AD%CE%B4%CE%B9%CE%BF%202022.pdf>, 검색일자: 2021. 10. 25.

149) 2021년 10월 26일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13억 5,204만원, 1억 3,520만원임

150) 2021년 10월 26일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2억 493만원, 10억 9,300만원임

30%(최대 5천유로¹⁵¹)를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부가가치세와 기타 조치에 대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 동물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6%로 대폭 인하
 - 단, 개와 고양이용 사료는 제외
 - ▶ 2022년 6월 30일까지 체육관 및 댄스 스튜디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3%로 인하
 - ▶ 2022년 6월 30일까지 커피 및 무알코올 음료, 교통수단, 영화관 및 연극 공연(나이트 클럽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3%로 인하한 정책을 연장
 - ▶ 2022년 6월 30일까지 10%의 TV 유료방송 수신료 납부 정지를 연장
 - ▶ 녹색 경제, 에너지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공제제도 확대 도입 예정

6

네덜란드

가. 코로나19 관련 세제혜택 연장에 관한 입장 발표

[조세동향 21-07호]

-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6월 28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음의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함¹⁵²)
 - ▶ 병원, 요양원 등 적격기관의 간호인력 및 간호인력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함
 - ▶ 코로나19 백신 및 테스트 키트, 안면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함
 - ▶ 위와 같은 조치는 시행령 제2021-121258호를 통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151) 2021년 10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676만원임

152)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ublishes Decree Extending Tax Support Measures," 2021. 7.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01_nl_1.html, 검색일자: 2021. 7. 19.

- ▣ 추가로, 2021년 9월 이후로는 해당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¹⁵³⁾
 - ▶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법안과 별도로 새로운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힘

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과 관련된 Q&A 법령 발표

[조세동향 21-08호]

-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7월 23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및 2% 저세율 적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질의응답 형태의 법령을 발표함^{154), 155)}
 - ▶ 청장년층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구매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추가된 지침은 2021년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음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 구매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2011년부터 개인 주택 구매자의 양도소득세에 2%의 저세율이 적용됨
 - ▶ 나이 요건: 18세부터 35세 사이
 - ▶ 취득 요건: 생애 첫 주택 구입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40만유로¹⁵⁶⁾ 이하 여야 함(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취득가액의 제한이 없음)
- ▣ 네덜란드 정부는 45개의 다양한 예시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예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양도소득세 감면 및 2%의 세율 적용을 위해, 본인 주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공증서가 필요함

153)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Not To Extend Support Measures Beyond Q3," 2021. 6.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6-30_nl_2, 검색일자: 2021. 7. 19.

154) News IBFD, "Government Publishes Q&A Decree on One-off Transfer Tax Exemption, Reduced 2% Rate," 2021. 7.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3_nl_1.html, 검색일자: 2021. 8. 13.

155) 네덜란드 정부,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stcrt-2021-36308.html>, 검색일자: 2021. 8. 19.

156)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5천만원임

- ▶ 공동 소유일 경우, 전체 주택가액이 40만유로를 초과하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40만유로 이하더라도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일부는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 세율이 아닌 8%의 세율이 적용됨
- ▶ 실질적 취득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한 구매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해당 조항은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되므로, 단순 토지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1-09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1년 9월 21일 2022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¹⁵⁷⁾

 - ▶ 배당금 원천세와 도박세(kansspelbelasting)의 상계 가능성에 대한 한시적 제한과 CFC의 외국납부세액 상계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도박세란 확률 게임의 참가자가 게임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주최자에게는 상금 지급 시 도박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¹⁵⁸⁾
 - ▶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 법인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15%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최하위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기존 24만 5천유로¹⁵⁹⁾에서 39만 5천유로¹⁶⁰⁾로 확대함
- ▾ 포트폴리오 투자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Dividendbelasting)과 도박세가 법인 소득세와 상계 가능한 조항은 네덜란드 거주기업뿐 아니라 비거주기업에도 적용 가능하며, 상계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기로 함

157) News IBFD, "Tax Plan 2022 - Netherlands Confirms Corporate Income Tax Rates Will Remain Unchanged in 2022," 2021.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22_nl_3.html, 검색일자: 2021. 9. 24.

158) 네덜란드 국세청, "Kansspelbelasting,"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overige_belastingen/kansspelbelasting/, 검색일자: 2021. 10. 12.

159)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3,841만원임

160)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4,560만원임

- ▶ 네덜란드는 결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능한 배당금 원천징수세액 및 도박세액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 상계 가능 최대 금액은 과세기간에 납부할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된 세금은 이월 가능함
-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CFC의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 가능함
- ▶ 다만, 다수의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공제 순서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시한 바가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함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받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라. 2022년 에너지세 추가 인하 법안 발표

[조세동향 21-11회]

-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11월 5일, 2022년 에너지세 추가 인하 법안을 발표함¹⁶¹⁾
 -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10월 23일, 전기 및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평균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최대 430유로¹⁶²⁾까지 절약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¹⁶³⁾
- ▣ 전체 가구 및 사무용 건물에 부과되는 표준 에너지세 할인액(Blastvermindering)을 인상하고, 전기세 구간별 부과액을 인하함
 - ▶ 표준 에너지세 할인액을 당초 발표한 230유로¹⁶⁴⁾에서 265유로¹⁶⁵⁾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161) News IBFD, "Netherlands Announces Further Cuts to Energy Tax for 2022," 2021. 11.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08_nl_1.html, 검색일자: 2021. 11. 18.

162)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만원임

163) News IBFD, "Netherlands Cuts Energy Tax to Counter Soaring Electricity and Gas Prices," 2021.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25_nl_1%23tns_2021-10-25_nl_1, 검색일자: 2021. 11. 18.

164)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만원임

165)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만원임

- ▶ 전기세(energiebelasting) 구간별 부과액을 인하함
 - 첫 번째 구간 및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의 사용량별 부과액을 인하함

〈표 11-4〉 네덜란드 2022년 전기세 부과 기준 변화

사용구간	종류	2021년		2022년	변화
1	사용량 기준	0 ~ 1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0.09428유로		0.03329유로	-64.7%
2	사용량 기준	10,001 ~ 5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0.05164유로		0.04361유로	-15.5%
3	사용량 기준	50,001 ~ 10,00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0.01375유로		0.01189유로	-13.5%
4	사용량 기준	10,00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개인	사업자	좌동	-
		0.00113유로	0.00056유로		

자료: 네덜란드 국세청,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overige_belastingen/belastingen_op_milieugrondslag/tarieven_milieubelastingen/tabellen_tarieven_milieubelastingen?projectId=6750bae7-383b-4c97-bc7a-802790bd1110, 검색일자: 2021. 11. 18.

마.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법안 채택

[조세동향 21-11호]

- ▣ 네덜란드 하원은 2021년 11월 11일,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불일치 방지(Combating mismatches in the applica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를 위한 법안을 채택함¹⁶⁶⁾
 - ▶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차이가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¹⁶⁷⁾
 - ▶ 이익 하향 조정에 대한 제한과 사업용 자산 이전과 관련된 이전가격 차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함¹⁶⁸⁾

166) News IBFD, "Netherlands Adopts Bill on Mismatches in Application of Arm's Length Principle," 2021. 11.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12_nl_3.html, 검색일자: 2021. 11. 18.

167) KPMG, "Netherlands: Legislation addressing mismatches in application of arm's length principle," 2021. 11. 12.,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11/tnf-netherlands-legislation-mismatches-application-arms-length-principle.html>, 검색일자: 2021. 11. 18.

- ▼ 네덜란드 법인과 외국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arm's length)가 아닌 경우 이익의 조정은, 쌍방 국가의 이윤세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범위까지만 허용됨

 - ▶ 현재 네덜란드의 이전가격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정상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의 일방적인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¹⁶⁹⁾
 - ▶ 만약 법인세 면제 규정 등으로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 상대방 국가의 이익 하향 조정은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아닌 면제 대상국의 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만 하향 조정되어야 함

- ▼ 제안된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외국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둬

 - ▶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감가상각 기준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함
 - 취득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가상각 기준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전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함임
 - 만약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해 상향 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정상가격이 아닌 이전가격임

바. 2022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발표

[조세동향 21-12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1년 12월 21일, 지난 9월 21일에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함¹⁷⁰⁾

168) News IBFD, "Tax Plan 2022 - Netherlands Issues New Rules on Mismatches in Application of Arm's Length Principle," 2021.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9-22_nl_4%23tns_2021-09-22_nl_4, 검색일자: 2021. 11. 18.

169) EY, "Netherlands issues proposed legislation with unilateral 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mismatches," 2021. 9. 21., https://www.ey.com/en_gl/tax-alerts/netherlands-issues-proposed-legislation-with-unilateral-measures-against-International-transfer-pricing-mismatches, 검색일자: 2021. 11. 18.

170) News IBFD, "Netherlands Sets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 Rates," 2021.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22_nl_1.html, 검색일자: 2021. 12. 24.

- ▶ 주요 수정 내용은 법인소득세율 인상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대상 기준 금액 조정 등임
- ▾ (법인세)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축소함¹⁷¹⁾
 - ▶ 과세표준 두 번째 구간의 누진세율을 기존 25%에서 25.8%로 0.8%p 인상함
 - 당초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15%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정안을 통하여 두 번째 소득구간의 누진세율을 소폭 인상함
 - ▶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의 20%로 기존 30%에서 10%p 축소함
 - 기존 네덜란드의 일반 이자비용 공제 제한규정은 네덜란드 회사 EBITDA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두는 규정임
- ▾ (소득세) 최하위 소득세율을 현행 37.1%에서 37.07%로 0.03%p 인하하고, 최상위 소득세율은 49.5%를 유지하기로 결정함¹⁷²⁾
 - ▶ 당초 개정안에서는 소득세율에 대한 개정 계획이 없었으나, 수정안을 통하여 최하위 소득세율을 소폭 인하함
 - ▶ 과세표준 첫 번째 구간의 소득세율에는 사회보장기여금 27.6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최하위 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은 9.42%임¹⁷³⁾
-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대상별 면제 기준 금액을 재조정함¹⁷⁴⁾
 - ▶ 상속세 부과 대상별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면제 기준액은 다음과 같음

171) News IBFD, "Netherlands Officially Sets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Inheritance Rates and Exemptions," 2021.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22_nl_4.html, 검색일자: 2021. 12. 24.

172) News IBFD, "Netherlands Officially Determines Income Tax Rates and Tax Credits Amounts," 2021.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22_nl_2.html, 검색일자: 2021. 12. 24.

173) Country Tax Guides IBFD,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sec 1.9.1. Income and capital gains," 2021. 12. 24.

174) News IBFD, "Netherlands Officially Sets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Inheritance Rates and Exemptions," 2021.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22_nl_4.html, 검색일자: 2021. 12. 24.

〈표 II-5〉 네덜란드 2022년 상속세 인적 공제액 변화

(단위: 유로, %)

대상	2021년	2022년	변화
배우자	671,910유로	680,645유로 ¹⁾	+1.3%
자녀 및 손자녀	21,282유로	21,559유로 ²⁾	+1.3%
독립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아동 등	63,836유로	64,666유로 ³⁾	+1.3%
부모	50,397유로	51,053유로 ⁴⁾	+1.3%
기타 상속인	2,244유로	2,274유로 ⁵⁾	+1.34%

주: 1)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억 1,438만원임

2)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96만원임

3)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87만원임

4)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58만원임

5)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6만원임

자료: Country Tax Guides IBFD,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sec 6.1.3. Personal reliefs"

▶ 증여행위별로 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면제 기준액은 다음과 같음

〈표 II-6〉 네덜란드 2022년 증여재산 공제액 변화

(단위: 유로, %)

증여행위	2021년	2022년	변화
자녀에게 증여	6,604유로	5,677유로 ¹⁾	-14.04%
18~40세 사이의 자녀에게 증여	26,881유로	27,231유로 ²⁾	+1.3%
자녀의 거주 주택 구매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금액의 증여	105,302유로	106,671유로 ³⁾	+1.3%
기타 일반 증여	3,244유로	2,274유로 ⁴⁾	-29.9%

주: 1)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63만원임

2)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58만원임

3)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331만원임

4) 2021년 1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6만원임

자료: Country Tax Guides IBFD,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sec 6.1.3. Personal reliefs"

7 스위스

가.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조세동향 21-08호]

- ▣ 스위스에서는 오는 2021년 9월 26일 직접민주제도인 국민발안제도¹⁷⁵⁾를 통하여 발의되고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거절된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임¹⁷⁶⁾

 - ▶ 해당 법안은 99%-Initiative라는 시민협의체가 발의하였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소득은 세금계산 시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한 추가세입은 낮은 또는 중간 수준의 근로소득을 가진 국민을 지원하는 데 쓰이거나 복지정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결속력을 고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임
 - ▶ 국회에서 거절된 국민제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채택 여부가 정해지며, 채택된다면 99%-Initiative와 국회의 조율하에 자본소득의 개념, 가중치 적용구간, 추가세수 활용방안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됨

〈표 11-7〉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의 기대효과 예시

(단위: 프랑)

구분	현행 과세소득(일괄 100%)	국민제안 과세소득(차등 적용)
노동소득(봉급 등) 150,000프랑 ¹⁷⁷⁾ 에 대하여	150,000프랑	150,000프랑
자본소득(이자 또는 임대료) 150,000프랑에 대하여	150,000프랑	175,000프랑 ¹⁷⁸⁾ (100,000*100% + 50,000*150% = 175,000)

주: 가중치 적용구간을 100,000프랑 이상으로 설정했을 경우임
 자료: 스위스 연방재무부,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gesetzgebung/abstimmungen/99-prozent/99-prozent-dossier.html>, 검색일자: 2021. 8. 26.

175) 원어: Volksinitiative,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 상원에 제출하면 연방 하원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제도임. 연방 하원에서는 국민발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대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입법 여부가 최종 결정됨.

176) 스위스 연방재무부,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gesetzgebung/abstimmungen/99-prozent/99-prozent-dossier.html>, 검색일자: 2021. 8. 19.

- ▼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해당 안을 기각한 이유로는 스위스가 이미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균등한 소득분포를 가지고 있어 입법의 당위성이 떨어지고 해당 법안은 오히려 스위스의 금융강국 입지를 약화시키며 국민의 저축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들었음

나. 주택세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조세동향 21-09호]

- ▼ 스위스 연방내각은 2021년 8월 25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주택세 관련 법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¹⁷⁹⁾
 - ▶ 본 개정안의 골자는 자가에 거주함으로써 절감되는 주택임대비용을 과세소득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인 자가임대가치(Eigenmietwert)¹⁸⁰⁾를 폐지하고 더불어 2주택자의 자가용 재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것임
 - 주택세와 관련된 스위스의 기존 법¹⁸¹⁾에서는 자가임대가치 책정에 과세의 기술적 복잡성의 문제가 산재해 있어 개혁이 필요했지만 지방자치단체(Kantone)들이 상당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좌절되어 왔음
 - ▶ 주택세 개혁을 지지해오던 연방내각이 2021년 5월 27일 연방 상원 경제조세위원회(WAK-S)가 발의한 「주택세법」 개정안을 개선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함¹⁸²⁾
- ▼ 연방내각의 개선안은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자기임대가치의 폐지와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유지의 두 축으로 이루어짐¹⁸³⁾

177)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766만원임

178)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341만원임

179) 스위스 연방재무부, “Der Bundesrat unterstützt die Abschaffung des Eigenmietwerts,” 2021. 8. 25.,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nsb-news_list.msg-id-84841.html, 검색일자: 2021. 9. 24.

180) 스위스 「연방헌법」 제108조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주택 건설 및 소유 지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934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액이 자가임대가치보다 많아 납세자는 자가를 소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음.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설계된 주택 소유 장려책으로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는 부적합한 정책으로 평가됨

181) 스위스 직접연방세(DBG), 직접지방세조화법(StHG), 사회보장보충법(ELG), 중장년실업자지원법(ÜLG)

182) 스위스에서는 연방내각이 연방의회보다 입법 역량이 높아 연방의회가 제출하는 입법안을 지원(Eintreten)하는 역할을 하며, 입법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짐

183) 스위스 연방내각 개정안, “Systemwechsel bei der Wohneigentumsbesteuerung,” <https://www.news.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67949.pdf>, 검색일자: 2021. 9. 30.

〈표 11-8〉 연방내각과 경제조세위원회의 주요 개선안

연방내각	경제조세위원회
첫 주택뿐만 아니라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자가임대가치 또한 폐지	첫 주택에 대한 자가임대가치 폐지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유지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폐지

자료: 스위스 연방재무부, <https://www.news.admin.ch/news/message/attachments/67949.pdf>, 검색일자: 2021. 10. 12.

- ▶ 경제조세위원회안에서는 첫 주택에 대한 자가임대가치 폐지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폐지를 제안하였음
- ▶ 연방내각에서는 첫 주택뿐만 아니라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selbstgenutzte Zweitliegenschaften)에 대해서도 자가임대가치를 폐지하는 것과 국민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를 과세 대상 재산이익의 70%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조세위원회안을 수정함
 - 연방내각 입법자료에 따르면 자가용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자가임대가치 적용은 국내 학계 여론¹⁸⁴⁾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가용 재산(Eigennutzung ertragloser Vermögenswerte)으로 수정하면 이에 대한 자가임대가치를 폐지할 수 있다고 제안함
 - 대출이자공제의 폐지는 국민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헌법의 의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대출이자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업자인 다주택보유자에 한하여 이를 유지보수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공제 폐지 원안을 수정함

다. BEPS 글로벌 디지털세 실행 일정에 우려 표명

[조세동향 21-10호]

☽ 스위스 연방재무부는 2021년 10월 8일, BEPS OECD/G20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와

184) 조세법의 권위자인 스위스 취리히대학 René Matteotti 교수는 2019년 5월 10일 발표된 단편 보고서에서 등분상 거주지에서 실거주 중인 거주용 재산과 자가 사용 중인 두 번째 부동산 간의 차별이 조세법의 제도적 정당성 원칙에 위배되며 납세자의 의사결정 중립성(Entscheidungsneutralität)과 긴장관계(Spannungsverhältnis)에 있다고 주장함.

관련한 실행 일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¹⁸⁵⁾

- ▶ 스위스는 BEPS 글로벌 디지털세에는 합의하였으나, OECD의 구체적인 실행 일정에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함
 - 스위스 연방재무부 장관 율리 마우러(Ueli Maurer)는 2021년 10월 5일과 6일에 개최되었던 OECD 장관급 회의에서 동일한 의견을 주장하였음
- ▶ 소규모 경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2023년까지 관련 국내법을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국내 입법은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함

8

스웨덴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9호]

- ▣ 스웨덴 정부는 2021년 9월 20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¹⁸⁶⁾
 - ▶ 개인 소득세는 추가 세금 감면 규정 도입 등 조세혜택을 그 내용으로 하고, 결손법인 인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일부 제한, 비거주자 대상 배당소득에 대한 새로운 원천징수제도 도입 및 주류와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도 포함함
 - ▶ 예산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 (법인세) 소유권 변경 이후 미공제 이월결손금의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

185) 스위스 연방재무부, "Switzerland calls for legal certain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parameters in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 https://www.efd.admin.ch/efd/en/home/the-fdf/nsb-news_list,msg-id-85410.html, 검색일자: 2021. 11. 1.

186) News IBFD, "Swedish Budget Bill for 2022 Promises Tax Cuts and New Withholding Tax Law on Dividends to Non-residents - Details," 2021. 9.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23_se_1.html, 검색일자: 2021. 9. 24.

- ▶ 소유권 변경의 주된 사유가 이월결손금 활용을 위한 법인의 인수 등과 같은 조세 목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 (소득세) 각종 세금 감면 규정이 새롭게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혜택은 축소될 예정임
 -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회보험혜택 등과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함
 - ▶ 실업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 자전거 혜택(Cykelförmån)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추가 도입함
 -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전거 대여 등의 혜택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연간 3천크로나¹⁸⁷⁾를 한도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¹⁸⁸⁾
 - ▶ 2022년 7월 1일부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혜택이 축소될 예정임
 - ▶ 2022년 6월 1일부터 R&D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9세에서 23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될 예정임
 - 세부적으로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변경된 조항이 적용됨
 - ▶ 직원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확대 및 간소화될 예정임
 - ▶ 취업 알선 장소에 대한 규정이 간소화됨
 - 임시 고용인 및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은 고용 및 파견이 최대 1개월 동안 지속되고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50분 이상인 경우의 출장 경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됨
- ▼ (자본이득세) 개인 소지품 대여 관련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새로운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
 - ▶ 기존에는 현행 「원천징수세법(Kupongskattelag)」에 따라, 은행 및 기업에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으며,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었음

187) 2021년 10월 12일 원화 환산 시 약 41만원임

188) 스웨덴 정부, "Skattelättnad för cykelförmån och skattefri uthyrning av personliga tillgångar," 2021. 9. 17.,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lagratsremiss/2021/09/skattelattnad-for-cykelforman-och-skattefri-uthyrning-av-personliga-tillgangar/>, 검색일자: 2021. 10. 12.

- ▼ (부가가치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EU에서 제작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2022년 7월 1일부터 VAT 등록 기준액을 기존 3만크로나¹⁸⁹⁾에서 8만크로나¹⁹⁰⁾로 확대함
 - ▶ 2022년 7월 1일부터 자전거, 신발, 가죽제품, 의류 및 가정용 린넨 수리에 대한 VAT 세율을 기존 12%에서 6%로 6%p 인하함
 - ▶ 임시 고용 등 고용알선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 (소비세) 광고세(Reklamskatt)를 폐지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주류 및 담배와 관련된 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임

 - ▶ 스웨덴에서는 연간 10만크로나¹⁹¹⁾를 초과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 기준액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¹⁹²⁾ 202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함¹⁹³⁾

9 이탈리아

가. 코로나19 관련 관광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조세동향 21-11호]

- ▼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11월 7일, 관광산업 개선 촉진을 위해 두 종류의 세액공제제도를 법령 152/2021로 공표하고 관보에 게재함¹⁹⁴⁾

189)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9만원임

190)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91만원임

191) 2021년 10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5만원임

192) 스웨덴 국세청, "Beräkna reklamskatt,"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skatterochavdrag/punktskatter/reklamskatt/beraknareklamskatt.4.35c34f651660af3747c15fa.html>, 검색일자: 2021. 10. 12.

193) 스웨덴 정부, "Reklamskatten slopas nästa år," 2021. 8. 3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1/08/reklamskatten-slopa-nasta-ar/>, 검색일자: 2021. 10. 12.

194) IBFD, "Italy Introduces Tax Credits for Tourism Enterprises", 2021. 1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10_it_2.html, 검색일자: 2021. 11. 16.

- ▶ 호텔, 야외 숙박시설, 해변시설, 온천시설, 마리나 및 테마파크를 포함한 관광, 오락(레크리에이션), 축제 및 단체회의 등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광 기업의 경우 2021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허용함
 - 적격시설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지진피해 위험 감소
 - 건축 장벽 제거 및 적격시설 접근성 제고
 - 온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열 저장조 건설 및 장비 확보
 -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해외 여행사와 관광업체의 경우 2021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화 제도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2만 5천유로¹⁹⁵)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대한 설명서 발행

[조세동향 21-12호]

- ▣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2021년 11월 26일, 프로토콜 360494/2020에 의해 도입된 이전가격의 문서화 규정에 대한 설명서(Circular N. 15/E)를 발행함¹⁹⁶
- ▣ 이탈리아에 상설 사업장을 두고 있는 거주기업 및 비거주기업은 마스터파일과 로컬 파일 등 이전가격 결정서류를 작성해야 함
 - ▶ 이전가격 결정서류인 다국적 기업과 그 운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마스터파일과 국내 기업 관련 기업 내 거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로컬파일은 프로토콜 규정대로 그 형식과 구조를 엄수해야 함
 - 필수 정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문서의 더 나은 신뢰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의 수정 또는 통합은 제외
 - 의문사항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참고할 것

195) 2021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40만원임

196) IBFD, "Tax Authorities Clarify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2021. 12.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02_it_1.html, 검색일자: 2021. 12. 27.

- ▣ 이전가격 결정서류는 이탈리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마스터파일은 영어 초안 작성이 가능함

 - ▶ 필수 첨부파일은 다른 언어로 제출할 수 있지만, 세무당국의 요청 시 현지 법인은 관련 문서를 이탈리아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함

- ▣ 이전가격 결정서류들은 관련 세금신고서 제출일까지 현지 법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과 디지털 타임스탬프로 서명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관련 세금신고서에 적절한 이전가격 결정서류의 보유 여부를 통보해야 함

 - ▶ 세무당국은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는 수정된 납세신고서의 경우에도 소통이 유효한 점을 명확히 함
 - ▶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결정서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기준에 대해 요구되는 형식과 구조를 충족하나, 해당 문서가 완전하거나 진실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가 적절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10 포르투갈

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연기

[조세동향 21-08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7월 27일,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연기함^{197), 198)}

 - ▶ 해당 조치는 Order no. 260/2021-XXII으로 관보에 게재됨

- ▣ 부가가치세 월별 납부제도와 분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각각 10일 및 5일씩 신고 마감일이 연장됨

197)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ostpones VAT Filing Deadlines," 2021. 8.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04_pt_1.html, 검색일자: 2021. 8. 17.

198) 포르투갈 정부, "DESPACHO N.º 260 /2021-XXII," 2021. 7. 27.,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legislacao/Despachos_SEAF/Documents/Despacho_SEAAF_260_2021.pdf, 검색일자: 2021. 8. 17.

- ▶ 부가가치세 월별 납부제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신고는 각각 9월부터 12월의 20일까지 접수해야 함
 - 기존에는 각 월의 10일까지 접수해야만 했음
- ▶ 부가가치세 분기별 납부제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1년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11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함
 - 기존에는 2021년 11월 15일까지 접수해야만 했음
- ▣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신고 마감일이 속하는 달의 25일로 연기되었음
 - ▶ 부가가치세 월별 납부제도는 매월 15일이 납부기한이며 분기별 납부제도는 해당 월의 20일이 납부기한이었으나 제도별로 각각 10일과 5일 연장됨

나. 2022년도 예산 초안 국회 제출

[조세동향 21-10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10월 11일, 2022년 예산 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¹⁹⁹⁾
 - ▶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산업재산권의 판매 또는 임시사용 허가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소득의 비율의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의 회생을 위한 새로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 부분임
-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법인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²⁰⁰⁾
 - ▶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특정 유형자산, 비소모성 생물학적 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해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새로운 세금공제 (incentivo fiscal à recuperação)제도를 도입함²⁰¹⁾

199) IBFD, "Portugal Introduces Temporary Investment Incentives and Reinforces Current Patent Box Regime,"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4_pt_1, 검색일자: 2021. 10. 25.

200) IBFD, "Portugal Introduces Tax Credit for Companies Impacted by COVID-19 Pandemic,"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4_pt_2%23tns_2021-10-14_pt_2, 검색일자: 2021. 10. 25.

201) 포르투갈 재무부 장관은 해당 제도에 대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라고 밝힘(RTP Noticias, "Incentivo Fiscal à Recuperação apoia até 25% do investimento no 1.º

- 세금공제 수혜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배당금을 분배하거나 고용계약 해지 금지 조건 등 특정 조건의 적용을 받음
- 세금공제의 최대 금액은 500만유로임²⁰²⁾
- 세금공제 금액은 ① 해당 연도 적격 비용의 10% 및 직전 3개 과세 연도 투자비용의 산술평균까지 또는 ② 해당 산술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적격 비용의 25%까지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이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인 납세자는 적격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음
- ▶ 포르투갈에서 사업개시신고서(declaração de início de atividade)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비용 증빙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세금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 연간 법인세(CI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세당국은 재량에 따라 'Modelo 22'라는 간소화된 기준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산출함
- ▶ 중국 내수시장(Panda Bonds)에서 인민폐로 발행된 포르투갈 채권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면제정책이 연장됨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개인소득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²⁰³⁾

- ▶ 누진세가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구간이 기존 7개에서 9개로 증가함
 - 기존 28.5% 세율이 적용되었던 3구간(1만 732유로 이상 2만 322유로 이하²⁰⁴⁾), 45% 세율이 적용되었던 6구간(3만 6,967유로 이상 8만 882유로 이하²⁰⁵⁾) 및 48% 세율이 적용되었던 7구간(8만 882유로 이상²⁰⁶⁾)에 변화가 발생함
- ▶ 현재 동산 매각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율은 28%이나 1년 미만 보유 기초자산을 매각하고, 해당 시세차익을 포함한 납세자의 총과세소득이 최소 7만 5,009유로에 달하는 경우에는 총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인 48%를 적용함
- ▶ 모든 피부양자에 대해 600유로의 공제가 허용되며, 3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적으로 126유로의 공제가 허용됨²⁰⁷⁾

semestre," 2021. 10. 12., https://www.rtp.pt/noticias/economia/incentivo-fiscal-a-recuperacao-apoia-ate-25-do-investimento-no-1o-semester_n1355139, 검색일자: 2021. 11. 8).

202) 2021년 10월 26일 원화 환산 시 약 67억 6,225만원임

203) IBFD, "Portugal Announces Adjustments to Personal Income Tax Brackets,"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4_pt_3, 검색일자: 2021. 10. 25.

204) 2021년 11월 1일 원화 환산 시 약 1,458만원, 2,761만원임

205) 2021년 11월 1일 원화 환산 시 약 5,022만원, 1억 989만원임

206) 2021년 11월 1일 원화 환산 시 약 1억 989만원임

- ▶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전에, 과세당국이 각 납세자의 세액공제금액을 평가하고 최종 금액은 해당 납세자가 확인 후 승인하거나 비용의 누락 또는 부정확성을 발견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근로자는 2020년부터 소급하여 근무시작일부터 3년간의 고용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는 근로자의 경우 28세까지 연장되며, 이 경우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됨²⁰⁸⁾

〈표 11-9〉 2022년 예산 초안의 개인소득세 구간

(단위: %, 유로)

과세구간	기존 과세소득	변경된 과세소득	세율	공제 가능한 세액 총액
1구간	~ 7,112유로 이하	~ 7,116유로 이하	14.5	0
2구간	7,112 초과 ~ 10,733유로 이하	7,116 초과 ~ 10,736유로 이하	23	604.86
3구간	-	10,736 초과 ~ 15,216유로 이하	26.5	980.63
4구간	10,733 초과 ~ 20,322유로 이하	15,216 초과 ~ 19,696유로 이하	28.5	1,284.99
5구간	20,322 초과 ~ 20,075유로 이하	19,696 초과 ~ 25,076유로 이하	35	2,565.21
6구간	25,075 초과 ~ 39,967유로 이하	25,076 초과 ~ 36,757유로 이하	37	3,066.79
7구간	-	36,757 초과 ~ 48,033유로 이하	43.5	5,455.84
8구간	39,967 초과 ~ 80,882유로 이하	48,033 초과 ~ 75,009유로 이하	45	6,173.56
9구간	~ 80,883유로 초과	~ 75,009유로 초과	48	8,426.51

자료: IBFD, "Portugal Announces Adjustments to Personal Income Tax Brackets,"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4_pt_3, 검색일자: 2021. 10. 25.; Expatica, "Income tax rates in Portugal," 2021. 6. 9., <https://www.expatica.com/pt/finance/taxes/portuguese-income-tax-filing-a-portuguese-tax-return-as-an-expat-105172/>, 검색일자: 2021. 11. 8.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부가가치세 및 기타 간접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²⁰⁹⁾

- ▶ EU 프레임워크²¹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공된 특정 물품과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7) 2021년 11월 1일 원화 환산 시 약 81만원, 16만원임

208) 부분 비과세는 최초 2년간 소득의 30%, 이후 2년간 소득의 20%, 마지막 1년간 소득의 10%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음

209) IBFD, "Portugal Introduces VAT Exemptions In Relation To Defence Efforts,"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4_pt_4, 검색일자: 2021. 10. 25.

210) (EU) Directives 2019/2235 and 2021/1159

- ▶ 기부금 조세혜택을 적용받는 기업에 무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기부한 기업에 대해 기존 기부금 부가가치세 면제 비율인 10%에서 상향된 25%를 적용함
- ▶ 차량유통세는 전체적으로 약 1%p 인상됨²¹¹⁾
- ▶ 차량등록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0g/km 미만인 가솔린 차량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약 1%p가 인상됨²¹²⁾
-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자체 소비를 위해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0kW 한도까지 석유 에너지 제품 세금이 면제됨
 - 전기, 열병합발전, 도시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 가스 및 경유 등 각종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될 예정임
- ▶ 주류 및 음료에 적용되는 세율이 전체적으로 1%p 인상됨²¹³⁾
- ▶ 담배세율이 전체적으로 1%p 인상됨²¹⁴⁾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재산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²¹⁵⁾

- ▶ 부동산 양도세 적용범위가 확대됨
 - 기존 주주가 실현하는 재산 형태의 자본 출연금에만 부동산 양도세를 적용했으나, 주주에 의한 부수 자본 납입의 실현으로 발생하는 부채에 관한 회사 재산권 형태의 기여금까지 부동산 양도세 적용범위에 포함
 - 기존 회사 청산으로 인해 주주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이미

211) 차량유통세(Imposto Único de Circulação: IUC)는 차량 소유의 대가로 매년 과세되는 세목이며,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와 유사함(taxobreveiculos.info, "Portuguese taxes on cars," 2020. 7. 21., <https://impostosobreveiculos.info/english/portuguese-taxes-on-cars/>, 검색일자: 2021. 10. 26.)

212) 차량등록세(Imposto Sobre Veículos: ISV)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때 한 번만 과세되는 세목이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취득세와 유사함(taxobreveiculos.info, "Portuguese taxes on cars," 2020. 7. 21., <https://impostosobreveiculos.info/english/portuguese-taxes-on-cars/>, 검색일자: 2021. 10. 26.)

213) 2021년 10월 26일 기준 포르투갈의 알코올과 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① 맥주: 8.34유로/hl~29.30유로/hl 사이의 변동 요금 ② 와인: 0유로 ③ 발효 음료: 10.44유로/h ④ 중간 제품 및 증류주: 76.10유로/hl ⑤ 에틸 알코올: 1,386.93유로/hl과 같음(IBFD, "Excise duty," <https://impostosobreveiculos.info/english/portuguese-taxes-on-cars/>, 검색일자: 2021. 10. 26.)

214) 2021년 10월 26일 기준 포르투갈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① 담배: 96.12유로(1천개비당) 및 15% ② 시가 및 시가릴로: 25% ③ 롤링 담배용 미세 절단 담배: 0.081유로/g(1천개비당) 및 15%, ④ 전자 담배용 니코틴 함유 액체: 0.31유로/ml과 같음(IBFD, "Excise duty," <https://impostosobreveiculos.info/english/portuguese-taxes-on-cars/>, 검색일자: 2021. 10. 26.)

215) IBFD, "Portugal Plans to Widen Scope for Property Transfer Tax,"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4_pt_5%23tns_2021-10-14_pt_5, 검색일자: 2021. 10. 25.

- 적용되나, 기업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본금 감액 및 상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회사 주주에게 재산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세 적용범위에 포함
- 기존 민간청약으로 폐쇄형 투자펀드를 청산한 결과, 재산권 배분에만 적용하던 부분을 투자 단위의 상환과 그 자금의 자본 축소 결과로 인한 민간청약으로 폐쇄형 투자펀드의 참여자에 대한 재산권 배분까지 부동산 양도세 적용범위에 포함
 - ▶ 부동산 양도세 감면 조건이 축소됨
 - 회생사업 또는 영구 거주 목적의 임대 또는 도시재활지역에 위치하거나 자가 및 영주지로 사용되었던 부동산을 최초 양도할 경우 일부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²¹⁶⁾
 - ▶ 연간 재산세의 평가에서 도시형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가액이 부동산의 정규시장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차 평가에 따른 새로운 재산세 가치가 연간 재산세 적용의 근거가 되어야 함

11 아일랜드

가. 디지털세 국제합의에 유보 입장 표명

[조세동향 21-07호]

- ▣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7월 1일에 발표한 디지털세²¹⁷⁾ 관련 국제합의국(130개국) 명단에서 제외됨²¹⁸⁾
 -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가 국제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거론하며 아래 사항을 강조함²¹⁹⁾

216) 양도일 이후 6년 이내에 자가 및 영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에 기초하여 할당된 경우 또는 해당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구 거주 목적의 임대차 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소유 및 영구 거주에 배정된 경우 등

217) 이익에 공평한 세금(a fair share of tax)을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인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 일부 배부(Pillar 1)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을 골자로 함

218) OECD, "130 countries and jurisdictions join bold new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ax reform," News, 2021. 7. 1.

219) Bloomberg, "Not Enough 'Clarity' in Tax Agreement, Ireland's Donohoe Says," 2021. 7. 2., <https://www.bloom>

- 최저한세의 현재 합의안(15%) 및 향후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확실성(certainty)과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확보가 중요함
- 소규모 경제가 대규모 경제에 맞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등을 보완해 줄 조세정책이 필요하므로 세율 경쟁을 허용해야 함
- ▶ 아일랜드 국가재무관리청(NTMA)은 2021년 7월 보고서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부하는 Pillar 1은 지지(fully supportive)한다고 밝힘²²⁰⁾
-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법인세의 다국적 기업 의존도 고려 시, 디지털세 도입이 자국 세수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함
- ▶ 아일랜드는 세율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 투자를 유치해 왔음
 - 미국 상공회의소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800개가 넘는 미국 회사들이 아일랜드에서 18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²²¹⁾
- ▶ 법인세는 아일랜드 2020년 조세수입의 약 20%(118억유로)를 차지하며, 2020년 법인세 중 8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납부하였음
- ▣ 아일랜드는 두고 보기(wait and see)²²²⁾ 방식의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국제합의를 방해(block)하거나 합의에서 빠지는 것(withdrawing)은 현명하지 않으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²²³⁾
- ▶ 아일랜드는 EU 소속 국가로서 EU 지침(directive) 채택에 거부권²²⁴⁾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OECD도 아일랜드와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²²⁵⁾

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DEQBBUG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mY0NDE0MzM1ODY3MMDMxNGQyMjgxDZVmZDY2MzllYzUixV0--7b87e12972b4a027c8bc74859427a924f7b64243&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7. 21.

220) 아일랜드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NTMA), "Ireland: Recovery underway in Q2," 2021. 7., p. 21.

221) Euronews, "The real reasons Ireland is against a 15% minimum corporate tax rate," 2021. 7. 16., <https://www.euronews.com/2021/07/16/the-real-reasons-ireland-is-against-a-15-minimum-corporate-tax-rate-view>, 검색일자: 2021. 7. 21.

222) Euronews, "The real reasons Ireland is against a 15% minimum corporate tax rate," 2021. 7. 16.

223) Bloomberg, "Not Enough 'Clarity' in Tax Agreement, Ireland's Donohoe Says," 2021. 7. 2.

224) 세금 등 민감한 사안은 만장일치 안건임(유럽집행위원회,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oting-system/unanimity/>), 검색일자: 2021. 7. 21.)

225) Yahoo, "Here are the nine countries spurning global minimum tax sought by Biden," 2021. 7. 6., <https://news.yahoo.com/nine-countries-spurning-global-minimum-102400183.tml>, 검색일자: 2021. 7. 21.

나. 2021년 코로나19 외 재정법안

[조세동향 21-08호]

- ▣ 아일랜드 대통령은 2021년 7월 19일, 2021년 코로나19 외 재정법안²²⁶⁾에 서명하였으며, 그중 조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 VAT 감면, 납기연장 제도가 연장되었음
 - 관광·접객업 VAT 세율을 13.5%에서 9%로 인하하는 조치는 기존 2020년 11월 ~2021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²²⁷⁾ 금번 법안을 통해 2022년 8월까지로 연장됨
 - VAT 등과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의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세액의 납기가 기존²²⁸⁾ 지원책하에서 거래 재개된 후 12개월로 연장되었으나, 금번 법안을 통해 2022년 말까지 무이자 연장, 이후 상황 완료 시까지 저금리(연3%) 연장됨
 - ▶ 특정 주택의 대량 구매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를 인상하였음
 - 주택에 적용되는 인지세율은 최대 2%²²⁹⁾이나, 2021년 5월 이후 최근 1년간 특정²³⁰⁾ 주택에 대한 누적 구매수량이 10채 이상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됨
 - 이는 완공시기에 가까운 주택단지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매입에 불이익을 제공하여,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²³¹⁾

226) 공식 명칭은 Finance(Covid-19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1임.; 아일랜드 의회, "Finance(Covid-19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1," 2021. 7. 19., <https://www.oireachtas.ie/en/bills/bill/2021/89/>, 검색일자: 2021. 8. 18.

227) KPMG, "COVID-19 support for business," 2021. 7. 1., <https://home.kpmg/ie/en/home/insights/2021/07/finance-covid-19-miscellaneous-provisions-bill-2021-gov.html>, 검색일자: 2021. 8. 18.

228) Irish Tax Institute, "Debt Warehousing & Interest Suspension," <https://taxinstitute.ie/covid-19-hub/debt-warehousing-interest-suspension/>, 검색일자: 2021. 8. 18.

229) 가치 100만유로 이하 시 1%, Citizens Information, "Stamp duty on property,"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housing/owning_a_home/buying_a_home/stamp_duty.html, 검색일자: 2021. 8. 18.

230) 아파트 등 일부 주택은 적용 제외됨

231)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Donohoe announces Stamp Duty measure for bulk purchasers for homes," Press release, 2021. 5. 18, <https://www.gov.ie/en/press-release/0b75f-minister-donohoe-announces-stamp-duty-measure-for-bulk-purchasers-for-homes/>, 검색일자: 2021. 8. 18.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021년 10월 12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조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²³²⁾

 - ▶ 매출 7억 5천만유로²³³⁾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2.5%(2021년)에서 15.0%(2022년~)로 인상하기로 함
 - 금번 대형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안은 OECD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세 협약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이며,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historic decision)’을 내렸다고 자평함²³⁴⁾
 - ▶ 디지털게임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주택건설 장려를 위한 세목을 신설하였으며, EU 조세회피 방지지침을 아일랜드 국내법으로 전기(轉記, transpose)하였음
 - 디지털게임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게임 세액공제(tax credit for digital games)를 도입하였고, 프로젝트당 최대 2,500만유로²³⁵⁾의 적격지출에 대해 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되지 않은 주거용지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획토지세(zoned land tax)를 도입함
 - EU 조세회피 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s)을 도입하여 이자비용 공제액을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30%로 제한²³⁶⁾하였고, 파트너십 등의 조세상 도관체(tax transparent entities)가 혼성불일치(hybridity)로 비과세될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아일랜드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함²³⁷⁾

232) 아일랜드 정부, “Budget 2022,” 2021. 10. 12., <https://www.gov.ie/en/campaigns/0020e-budget-2021/#>, 검색일자: 2021. 10. 21.

233)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원임

234) 아일랜드가 글로벌 최저한세 협약에 찬성하는 대신 OECD가 최저한세율 문구를 ‘최소(minimum) 15%’에서 ‘15%로 양보(concession)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블룸버그, “Ireland Is Said to Win Concession on Global Tax Deal Wording,” 2021. 10. 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27C9LT0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MwY1YzQ3ZGRiZjQ1NGQwODdkNGZlNzU2MjFmZmRjNGMiXV0-e7f43ada1039a46e00301f552cfe76699c02a43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10. 22.)

235)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0억원임

236) 공제받지 못한 이자비용은 이월공제됨

라. 탄소세 인상 계획 이행 및 환경세 검토 예고

[조세동향 21-11호]

- ▣ 아일랜드는 2021년 10월 13일, 2020년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 계획된 탄소세 이행의 일환으로 광물유류세(mineral oil tax)를 이산화탄소(CO₂) 1톤당 33.50유로²³⁸⁾에서 41.00유로로 7.50유로 인상하였고,²³⁹⁾ 추후 추가적인 환경세 부과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함

 - ▶ 2020년 「재정법」은 탄소세를 CO₂ 1톤당 33.50유로에서 2030년 100유로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담음
 - 금번 광물유류세 인상은 경유(light oil), 중유(heavy oil) 및 대체연료(substitute fuels)에 적용됨
 - 천연가스탄소세(natural gas carbon tax) 및 고체연료탄소세(solid fuel carbon tax)는 2022년 5월 33.50유로에서 41.00유로로 7.50유로 인상할 예정임
 - ▶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2021년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에서 탄소세 인상 이외에도 아래의 환경세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예고함²⁴⁰⁾
 - 경(輕)화물차에 대한 배출 기반(emissions-based) 조세제도 도입
 - 전기 이용 대안이 존재하는 상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 경유 및 휘발유 소비세(excise rates) 균등화(equalisation)
 - 차량 현물 혜택(Benefits-In-Kind) 관련 세제에 환경 기준 반영
 - 에너지 고효율 장비 및 가스동력 상용차에 대한 투자 관련 가속상각 허용
 - 건물 에너지 효율화(building retrofit) 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수단 검토

237) 세부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238)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341원임

239)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187/21, 2021. 10. 14.,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1/no-1872021.aspx>, 검색일자: 2021. 11. 23.

240) 아일랜드 정부, "Climate Action Plan 2021," 2021. 11. 5., <https://www.gov.ie/en/campaigns/2f87c-climate-action-plan-2021/>, 검색일자: 2021. 11. 23.

12 노르웨이

가.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연장

[조세동향 21-07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1년 7월 1일,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를 2021년 10월 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²⁴¹⁾

 - ▶ 노르웨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일부 항목의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6%로 임시 인하하였음²⁴²⁾
 - 인하 대상 항목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 및 조달, 공영방송, 영화관 및 스포츠 시설 입장, 놀이공원 및 박물관 입장, 호텔 등 숙박용역의 공급 및 조달임
- ▣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도 연장되어, 정골의학, 나프러퍼시 및 침술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22년 1월 1일까지 면제됨

 - ▶ 노르웨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대체치료에 대한 VAT 면제 및 특정 미용과 유사 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을 폐지하였음
 - ▶ 이에 따라 정골의학과 나프라퍼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침술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음²⁴³⁾

나.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1년 10월 12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함²⁴⁴⁾

241) IBFD, "COVID-19 Pandemic: Norway Officially Prolongs Reduced 6% VAT Rate Until 1 October 2021," 2021.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05_no_1.html, 검색일자: 2021. 7. 19.

242) IBFD, "COVID-19 Pandemic: Norway Plans to Extend Application of Reduced 6% VAT Rate," 2020. 1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18_no_1%23tns_2020-11-18_no_1, 검색일자: 2021. 7. 27.

243) Country Tax Guides IBFD, "Norway - Value Added Tax sec. 8.1," 2021. 7. 19.

244) News IBFD, "Norway Budget Bill for 2022 Promises Favourable Personal Income Taxation - Direct Taxes,"

- ▶ 경기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안하며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법인세)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그룹 기여금(group contributions)에 대한 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소규모 창업기업 투자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
 - ▶ 그룹 기여금 공제는 해외 자회사가 다른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 ▾ (소득세) 소득세 누진세율 인하,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편, 최소 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음
 - ▶ 소득구간 1, 2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각각 0.3%p, 0.2%p 인하함
 - 개인납세자의 기본 소득세율은 22%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11-10〉 노르웨이 2022년 소득세 소득 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소득구간	종류	2021년	2022년	증감
1	소득 기준	184,800크로네	190,350크로네	+3%
	세율	1.7%	1.4%	-0.3%p
2	소득 기준	260,100크로네	267,900크로네	+3%
	세율	4.0%	3.8%	-0.2%p
3	소득 기준	651,250크로네	670,800크로네	+3%
	세율	13.2%	13.2%	-
4	소득 기준	1,021,550크로네	1,052,200크로네	+3%
	세율	16.2%	16.2%	-

자료: Country Tax Guides IBFD, "Norway - Individual Taxation sec. 1.10.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no, 검색일자: 2021. 10. 22.

-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스톡옵션 등 기타 옵션은 부여시점이 아닌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자의 자사주 할인 매입에 따른 근로소득 면세비율을 연간

2021. 10.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5_no_1, 검색일자: 2021. 10. 20.

7,500크로네²⁴⁵⁾를 한도로 기존 25%에서 30%로 5%p 인상함

- ▶ 근로소득, 사회보장 지원금에 대한 최소공제(Minstefradrag)의 공제율을 10만 9,950크로네²⁴⁶⁾ 한도로 기존 46%에서 48%로 2%p 인상함²⁴⁷⁾
 - 최소공제란, 입증액을 공제하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 기존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함²⁴⁸⁾

- ▶ 정골의학, 나프러퍼시와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연장되어 2022년 7월 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침술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은 일몰이 도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 전기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재산세) 재산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각종 재산가치 인정 비율을 인상함

- ▶ 순자산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150만크로네²⁴⁹⁾에서 160만크로네²⁵⁰⁾로 10만크로네 상향함
- ▶ 재산세는 자산의 시장가치가 아닌 자산의 유형별로 특정 비율을 곱한 법정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인정 비율을 인상함²⁵¹⁾
 - 1,500만크로네²⁵²⁾를 초과하는 1차 주택의 재산가치를 시장가액의 25%에서 50%로 25%p 인상함
 - 임대주택 등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보조 주택의 재산가치를

245)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6만원임

246) 2021년 11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26만원임

247) 노르웨이 정부, "Skattesatser 2022," <https://www.regjeringen.no/no/tema/okonomi-og-budsjett/skatter-og-avgifter/skattesatser-2022/id2873852/>, 검색일자: 2021. 11. 4.

248) News IBFD, "Norway Budget Bill for 2022 Promises a Shift to Greener Taxation - Indirect Taxes," 2021.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3_no_1%23tns_2021-10-13_no_1, 검색일자: 2021. 10. 20.

249) 2021년 10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817만원임

250) 2021년 10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205만원임

251) 노르웨이 국세청, "Hva er eiendomsskatt?" <https://www.skatteetaten.no/person/skatt/hjelp-til-riktig-skatt/bolig-og-eiendeler/bolig-eiendom-tomt/eiendomsskatt/hva-er-eiendomsskatt/>, 검색일자: 2021. 10. 22.

252) 2021년 10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억 8,170만원임

기존 90%에서 95%로 5%p 인상함

- 별장 등 휴가용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10%p 인상함

▣ (소비세) 항공여객세, 천연가스 및 LPG에 부과하는 탄소세, 폐기물 소각세 등을 도입하고, 기타 환경과 관련된 세금을 일부 인상함

▶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에 표준세율의 20%에 해당하는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6년 탄소세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폐기물 소각세를 도입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 비할당 배출량에 대한 표준세금 수준의 25%에 해당하는 탄소세가 부과됨

▶ 광유세를 인상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율은 인하함

▶ 1kWh당 0.015크로네²⁵³⁾의 전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함

13 덴마크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9호]

▣ 덴마크 정부는 2021년 8월 30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 및 증세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힘²⁵⁴⁾

▶ 새롭게 도입되는 조세정책은 없으며, 과세 대상 기준액이 일부 조정될 예정임

▶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없으며, 법인세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2%가 유지됨

▶ 개인소득세의 경우,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액을 기존 55만 1,300크로네²⁵⁵⁾에서 55만 2,500크로네²⁵⁶⁾로 인상함

253)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원임

254) News IBFD, "No New Tax Proposals in Danish Budget," 2021. 8.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31_dk_1.html, 검색일자: 2021. 9. 24.

255)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42만원임

256)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64만원임

- ▶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지속되어 운영될 예정임
 - 탄소저감 기술 등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에 대한 130% 비용공제가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2022년 1월 1일부터 석탄 및 코크스에 대한 세금이 1GJ당 63.0크로네²⁵⁷⁾로 설정되며, 광물 및 야금 산업에 대한 세금은 2022년에 완전히 면제됨
 - 2022년 1월 1일부터 전기세가 1kWh당 0.903크로네²⁵⁸⁾ 인상되며, 전기난방의 경우 기업은 1kWh당 0.004크로네,²⁵⁹⁾ 가정은 1kWh당 0.008크로네²⁶⁰⁾ 인상됨

14 룩셈부르크

가. 지방사업세 결손금 이월공제 및 사회보장분담금 소득공제

[조세동향 21-08호]

- ▣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2021년 8월 10일, 지방사업세(municipal business tax)에 대하여 결손금 이월공제 및 사회보장분담금 소득공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간함²⁶¹⁾
 - ▶ 199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199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은 무기한 이월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기준 연도 이전 17년 동안에 발생한 결손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함
 - ▶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은 지방사업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 사회보장분담금을 익금에서

257)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2천원임

258)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8원임

259)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0.74원임

260) 2021년 9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원임

261) IBFD, "Luxembourg Clarifies Application of Loss Carry Forward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Municipal Business Tax," 2021. 8.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1_lu_1.html, 검색일자: 2021. 8. 19.;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 "Circulaire du directeur des contributions I.C.C. n° 31 du 10 août 2021," <https://impotsdirects.public.lu/dam-assets/fr/legislation/legi21/2021-08-11-ICC-31-du-1082021.pdf>, 검색일자: 2021. 8. 19.

공제할 수 있음

- 지방사업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고,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납부한 사회보장분담금을 다음 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나. 2022년도 예산안 및 조세계획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1년 10월 13일, 2022년도 예산안 및 조세계획을 발표함²⁶²⁾

 - ▶ 2022년도 예산안 및 조세계획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세법의 규정을 수정함
 - ▶ 법인세 및 소득세의 기본 내용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기타 세목별 규정을 추가함
- ▣ 법인세율 등은 2021년도와 동일하며, 그룹 기업 내 관련 기업에는 동일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내 GAAPS를 적용해야 함²⁶³⁾

 - ▶ 법인세율,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함
 - 일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0만유로²⁶⁴⁾ 이상은 17%, 17만 5천유로²⁶⁵⁾ 이상 20만 유로 미만은 17만 5천유로 초과액의 31%에 2만 6,250유로²⁶⁶⁾를 가산, 17만 5천유로 미만은 15%임
 - ▶ 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모든 그룹 내 관련 기업에는 동일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내 GAAPS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함
- ▣ 개인소득세율을 2021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공지할 예정이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함²⁶⁷⁾

262) Chambre des députés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N° 7878 Session ordinaire 2021-2022," [https://www.chd.lu/wps/PA_RoleDesAffaires/FTSByteServletImpl?path=6A5FA93178FB64BDA082BD1095D9A9ECF6E376703819D2EE0D83C27E7D0E743732EC722415F99A4F98F224DDA234362F\\$56624A302A23BEC54F4C27CC381CF051](https://www.chd.lu/wps/PA_RoleDesAffaires/FTSByteServletImpl?path=6A5FA93178FB64BDA082BD1095D9A9ECF6E376703819D2EE0D83C27E7D0E743732EC722415F99A4F98F224DDA234362F$56624A302A23BEC54F4C27CC381CF051), 검색일자: 2021. 10. 21.

263) IBFD, "Luxembourg Confirms Corporate Income Tax Rates Will Remain Unchanged in 2022," 2021.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13_lu_2.html, 검색일자: 2021. 10. 21.

264) 2021년 11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200만원임

265) 2021년 11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3,800만원임

266) 2021년 11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00만원임

- ▶ 개인소득세율,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을 2021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함
 -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자산의 재평가율을 2022년에 공지할 예정임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피지배외국법인(CFC)에 대하여 지방사업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관련 농·임업 토지 및 건물 사용 및 이용권 단위 가치에 대한 평가액을 조정함²⁶⁸⁾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방사업세를 면제함
 - ▶ 재산세와 관련하여 농·임업 관련 토지 및 건물 사용에 대한 평가액을 조정함
 - 농·임업 관련 토지 및 건물 사용과 관련하여 역년이 시작할 당시 평가액의 20분의 1 이상 변동되었거나 가장 최근의 평가액보다 5천유로²⁶⁹⁾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평가액이 조정되나, 변동액이 25유로²⁷⁰⁾ 이하인 경우는 제외됨
 - 이용권의 단위 가치는 역년이 시작할 당시 평가액의 5분의 1 이상 변동되었거나 가장 최근의 평가액과 5만유로²⁷¹⁾ 이상 변동된 경우에 평가액이 조정되나, 변동액이 2,500유로²⁷²⁾ 이하인 경우는 제외됨

15

벨기에

가.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조세동향 21-08호]

-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7월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인

267) IBFD, "Luxembourg Proposes to Expand Deduction for Building Societies Pla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3_lu_3%23tns_2021-10-13_lu_3, 검색일자: 2021. 10. 21.

268) IBFD, "Luxembourg Proposes to Extend CFC Exemption to Municipal Business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13_lu_4%23tns_2021-10-13_lu_4, 검색일자: 2021. 10. 21.

269) 2021년 11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9만원임

270) 2021년 11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원임

271) 2021년 11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00만원임

272) 2021년 11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0만원임

에 대하여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함²⁷³⁾

- ▶ 공제액은 임대료 면제액의 30%이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최대 월 5천유로²⁷⁴⁾를 한도로 하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4만 5천유로²⁷⁵⁾를 한도로 함
 - 2021년 3월에 도입되어 5월까지 적용되던 제도를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장 적용함
 -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공제의 형태로 제공함
- ▶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임대료 면제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임대인의 임대료 면제는 자발적·확정적이어야 함
 - 임차인은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소규모 회사 또는 소규모 단체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함
 -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2021년 11월 15일까지 과세관청에 합의 서면을 제출해야 함

나. 탄소 배출 차량 관련 녹색화 법안 발의

[조세동향 21-09호]

-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9월 14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세 세액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함²⁷⁶⁾
 - ▶ 탄소 배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비용 공제는 2026년 취득 차량부터 폐지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업무용승용차는 공제 가능하나 2027년 취득 차량부터 공제율이

273)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Clarifies Tax Reduction Requirements for Landlords," 2021. 8.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03_be_1.html, 검색일자: 2021. 8. 19.;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Réduction d'impôt en cas de renonciation au loyer," <https://finances.belgium.be/fr/Actualites/reduction-impot-renonciation-loyer-06-09-2021>, 검색일자: 2021. 8. 19.

274) 2021년 8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6만원임

275) 2021년 8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71만원임

276)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Greenifying" Tax Deductibility of Company Cars," 2021. 9.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16_be_1.html, 검색일자: 2021. 9. 23.; DE KAMER, BE, "PROJET DE LOI organisant le verdissement fiscal et social de la mobilité," <https://www.dekamer.be/FLWB/PDF/55/2170/55K2170001.pdf>, 검색일자: 2021. 9. 23.

경감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유럽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임

- ▶ 법안은 차량 관련 예산의 융통성 있는 사용을 제안하고자 함
 - 차량 관련 예산은 업무용승용차가 없는 근로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인 통근을 장려하는 것임

▣ 기업은 취득(리스 및 렌트의 경우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율은 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제한됨

-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유류비의 50%를 한도로 하여 공제 가능하고, 업무용승용차의 경우는 100% 공제 가능함
- ▶ 탄소 배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취득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를 다르게 허용하고, 공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련 비용의 50%를 한도로 함
 -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는 현재의 공제 조항이 적용됨
 -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취득한 탄소 배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2026년부터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에는 공제율이 0에 이르도록 함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탄소 배출 업무용승용차는 공제되지 않음
- ▶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 관련 비용은 100% 공제 가능함
 - 공제율은 2027년 취득 차량은 95%, 2028년 취득 차량은 90%, 2029년 취득 차량은 82.5%, 2030년 취득 차량은 75%, 2031년 취득 차량은 67.5%로 인하될 것임

▣ 가정 및 공공장소에 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 세제혜택을 제공함

- ▶ 가정에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점차 인하될 예정임
 - 공제율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45%, 2023년에 설치한 경우 30%,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15%임
 - 공제액수의 최대 한도는 1,500유로²⁷⁷⁾임

277) 2021년 10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6만원임

- ▶ 공공장소에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 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점차 인하될 예정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투자비용의 200%,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에 설치한 경우 투자비용의 150%임

다. 부가가치세 수정 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1-11호]

-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10월 26일, 부가가치세 수정 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안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²⁷⁸⁾
 - ▶ 비영리단체가 정치, 노동, 종교, 이념,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분담금의 납부로 운영되고, 회원의 수익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용역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단, 이러한 면제가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 ▶ 호텔, 모텔 및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에서 가구가 비치된 숙박시설(학생 기숙사 등)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함
 - ▶ 사업 및 개인적인 목적으로 혼합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함
 - 재화 및 용역의 실제 사용 또는 실제 사용의 부분에 기반하여야 함
 - 과세관청에 사전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2023년 6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는 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의 취득에도 사용 가능함
 - 납세자는 EU 내에서 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 및 신규 운송수단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통지해야 함
 - ▶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 적용 납세자 및 면세 납세자는 연매출이 2만 5천유로²⁷⁹⁾를 초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고정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없음

278) DE KAMER,BE, "PROJET DE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ère de taxe sur la valeur ajoutée," <https://www.dekamer.be/FLWB/PDF/55/2279/55K2279001.pdf>, 검색일자: 2021. 11. 23.; IBFD, "Belgium Plans to Base VAT Deduction for Mixed Use of Goods and Services on Actual Use", 2021. 10.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8_be_1.html, 검색일자: 2021. 11. 23.

279) 2021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66만원임

-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1%,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12%, 6%, 0%이며, 고정세율이란, 연매출에 대한 고정비율을 의미함²⁸⁰⁾
- ▶ 농업 관련 사업자가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 적용 대상인 경우에 고정세율 및 일부 수정 조항을 반영한 규정이 추가될 예정임
- ▶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잘못 신고된 경우와 같이 기존 부가가치세 채무에 대하여 환급액이 공제되는 상황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임
- ▶ 인공 이식 모발에 대하여 경감 부가가치세율(6%)이 적용됨

16 오스트리아

가. 치의산업 분야에서 250만유로 규모의 조세포탈 적발

[조세동향 21-08호]

- ▼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는 2021년 8월 8일 치의산업 분야에서 적발된 7건의 총 250만 유로²⁸¹⁾ 규모 조세포탈행위를 보고하고 치의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예고함²⁸²⁾
- ▶ 2020년 1월~2021년 7월의 기간 동안 86개의 치과와 치의산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됨
 - 그중 2건에서 약 100만유로²⁸³⁾의 세금추징이 이루어졌으며, 5건은 현재 조사 중이나 약 1,500만유로²⁸⁴⁾의 추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모든 연방주에 소재하는 치의산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으며 정확한 일정은 미정임

280) belgium.be, "TVA," https://www.belgium.be/en/economy/business/taxation_and_accounting/tva, 검색일자: 2021. 11. 30.

281)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억 3,435만원임

282)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1/August/steufa-dentalbereich.html>, 검색일자: 2021. 8. 19.

283)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7,374만원임

284)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6억 610만원임

- ▼ 공급처인 치의산업체가 치과용품과 치과용 보철합금에 대한 계산서를 회사 명의로
 익명의 현금판매로 분할 발급함으로써 치과가 현금 구입분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
 도록 하고 치의산업체와 치과 모두 매출을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게 됨

나. 2022년 생태사회적 「조세개혁법」 발의

[조세동향 21-11호]

-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1년 11월 8일, 2022년 생태사회적 「조세개혁법」(Ökosoziales
 Steuerreformgesetz 2022) 초안을 공개함²⁸⁵⁾
 - ▶ EU의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계획 이행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은 인하하기로 함²⁸⁶⁾
 - 탄소세는 배출권 인증(emission certificate) 거래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산화탄소(CO₂) 1톤당 가격은 2022년 30유로²⁸⁷⁾에서 2025년 55유로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 법인세율 및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현재 25%에서 2023년 24%, 2024년 23%로 인하
 할 예정이며, 소득세율은 두 번째 소득구간(1만 8천유로~3만 1천유로)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35%에서 30%로 인하, 세 번째 소득구간(3만 1천유로~6만유로)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42%에서 40%로 인하할 예정임
 - ▶ 2022년 3월부터 암호화폐(crypto currencies)를 자본성 자산(capital assets)으로 분류
 하여 과세하기로 함²⁸⁸⁾
 - 과세 대상은 암호화폐 관련 실현 자본이득(realized capital gains) 및 당기소득(current
 income)임

285) 오스트리아 재무부, Blümel: 2022 Budget stands for recovery,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2021. 10. 13.,
<https://www.bmf.gv.at/en/press/press-releases/2021/October-2021/B1%C3%BCmel-2022-Budget-stands-for-recovery%2C-stability-and-sustainability.html>, 검색일자: 2021. 11. 23.

286) EY, "Austrian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bill to reduce Corporate Income Tax and introduce
 Carbon Tax", 2021. 11. 18., https://www.ey.com/en_gl/tax-alerts/austrian-ministry-of-finance-publishes-draft-bill-to-reduce-corporate-income-tax-and-introduce-carbon-tax, 검색일자: 2021. 11. 23.

287)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환 환산 시 1유로는 약 1,341원임

288) Deloitte, "TAXATION OF CRYPTO CURRENCIES IN THE DRAFT OF THE ECOSOCIAL TAX REFORM LAW
 2022 PART I", 2021. 11. 12., <https://www2.deloitte.com/at/de/blog/deloitte-tax-blog/2021/taxation-of-crypto-currencies-in-the-draft-of-the-ecosocial-tax-reform-law-2022-part-i.html>, 검색일자: 2021. 11. 23.

- 암호화폐를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경우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만,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경우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음
 - 무상으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취득가액은 영(zero)으로 간주되고 처분 시 과세됨
- ▶ 법안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검토를 거친 후 의회 의결을 통해 입법될 예정임

17 핀란드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8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1년 8월 13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²⁸⁹⁾

 - ▶ 법인세 이자비용공제 한도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비세 인상 등과 관련된 개정 방향을 발표함
 - ▶ 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사항은 2021년 9월에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
- ▣ (법인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공제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표될 예정임

 - ▶ 일반적 이자비용은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의 25%까지 공제 가능함²⁹⁰⁾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및 비용공제 한도 조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세율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표될 예정임

289)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Budget Proposal for 2022 with Measures in Line with Expectations," 2021. 8.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3_fi_1.html, 검색일자: 2021. 8. 16.

290) Country Tax Guides IBFD, "Finland - Corporate Taxation sec. 7.3," 2021. 8. 24.

- ▶ 일반 가사 서비스, 간호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인상하고, 공제 한도 역시 기존 2,250유로²⁹¹⁾에서 3,500유로²⁹²⁾로 인상함
 - 해당 조치는 최대 2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석유난방을 친환경 난방으로 대체하는 개조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예정임
 -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축소하고, 2023년에는 폐지할 예정임
 - 현재 이자비용의 10%가 공제 가능하며, 2022년에는 5%로 축소할 계획임
 - ▶ 하이브리드 회사 차량의 과세가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의 친환경 회사 차량의 과세가액이 월 85유로²⁹³⁾ 감소될 예정임
- ▼ (소비세) 담배와 관련된 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표될 예정임

나. 2022년 예산안 세부사항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핀란드 정부는 2021년 9월 27일, 2022년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함²⁹⁴⁾
 - ▶ 핀란드 재무부는 2021년 8월 13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은 9월에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음
- ▼ 세법 개정안은 기존 예정된 법안을 유지하면서,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액 인상안의 세부사항을 발표함
 - ▶ 지난 8월에 발표한 일반 가사서비스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율 인상, 친환경 회사 차량의 과세가액 조정 등의 개정안은 유지됨

291)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8만원임.

292)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0만원임.

293)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만원임

294) News IBFD, "More Details on Individual Taxation Measures Included in Budget for 2022 Become Available," 2021. 9.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30_fi_1.html, 검색일자: 2021. 10. 22.

- ▶ 전 구간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액을 3% 인상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 소득세가 부과되고, 최저 소득 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추가 적용됨

〈표 11-11〉 핀란드 2022년 소득세 소득 기준 및 누진세율

과세소득	기본 소득세	최저 소득 기준 초과액에 대한 세율
19,200 초과 ~ 28,700유로 이하	8유로	6%
28,700 초과 ~ 47,300유로 이하	578유로	17.25%
47,300 초과 ~ 82,900유로 이하	3,786.5유로	21.25%
82,900유로 초과 ~	11,351.5유로	31.25%

자료: News IBFD, "More Details on Individual Taxation Measures Included in Budget for 2022 Become Available," 2021. 9.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30_fi_1.html, 검색일자: 2021. 10. 22.

- ▶ 근로소득공제(työtulovähennys) 한도 및 소득공제율을 인상함
 -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840유로²⁹⁵⁾에서 1,930유로²⁹⁶⁾로 90유로 인상함
 - 근로소득금액이 2,500유로²⁹⁷⁾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2.7%에서 13%로 0.3%p 인상하고, 3만 3천유로²⁹⁸⁾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최대 소득공제율을 기존 1.89%에서 1.96%로 0.07%p 인상함
 - 다만, 근로소득 금액이 13만 2,200유로²⁹⁹⁾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95)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2만원임

296)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5만원임

297)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3만원임

298)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24만원임

299)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125만원임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가. 2020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발표

[조세동향 21-07호]

- ▣ 일본 재무성은 7월 5일, 2020년도 일본의 국가 일반회계 세입은 60조 8,216억엔³⁰⁰⁾임을 발표함³⁰¹⁾

 - ▶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조 3,801억엔³⁰²⁾ 증가한 금액이며, 2018년도에 60조 3,564억엔³⁰³⁾으로 최대 세수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대 세수를 경신한 금액임
 - ▶ 당초 2020년도 세수를 63.5조엔³⁰⁴⁾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신형 코로나의 영향을 근거로 2019년 12월 추경에서 55.1조엔³⁰⁵⁾으로 하향 조정하였음³⁰⁶⁾
- ▣ 이러한 예상보다 초과된 세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고, 2019년 소비세율을 인상한 것이 원인임

 - ▶ 소비세가 전년보다 2조 6,187억엔³⁰⁷⁾ 많은 20조 9,714억엔³⁰⁸⁾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300)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4조 5,091억원임

301) 読売新聞, 「国税収 コロナ禍でも最大 20年度 60・8兆円 消費税・法人税伸び」,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10705-OYT1T50374/>, 검색일자: 2021. 7. 13.

302)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조 8,299억원임

303)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29조 8,250억원임

304)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2조 6,288억원임

305)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4조 9,740억원임

306) 東洋経済, 「コロナ禍でも2020年度税収は過去最高という怪」, <https://toyokeizai.net/articles/-/438928>, 검색일자: 2021. 7. 13.

307)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조 3,287억원임

308)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8조 8,575억원임

하였고, 세수 전체의 34.5%를 차지함³⁰⁹⁾

- 이는 2019년 10월 일본의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 영향이 큼

▶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하락이 예상되었던 법인세는 4,375억엔³¹⁰⁾ 증가한 11조 2,346억엔³¹¹⁾으로 작년 말 시점의 예상보다 3조엔³¹²⁾ 이상 증가함

- 2020년 초부터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회복과 함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본의 수출이 확대됨

▶ 소득세도 작년에 비해 191억엔³¹³⁾ 많은 19조 1,898억엔³¹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근로자의 수입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은 것과 주가 상승에 따른 금융소득이 증가한 영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됨

▣ 일본 정부는 2021년도의 세수를 57.4조엔³¹⁵⁾으로 상정하였고, 43.6조엔³¹⁶⁾의 신규 국채 발행을 계획하였음

▶ 일본 의회는 2021년도 회계예산을 106조 6,100억엔³¹⁷⁾으로 제정하였으며 현재 일부 의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26조엔³¹⁸⁾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³¹⁹⁾

309) 朝日新聞, 「20年度税収 コロナ禍でも過去最高 筆頭は消費税」, <https://www.asahi.com/articles/ASP756WRDP75ULFA00W.html>, 검색일자: 2021. 7. 13.

310)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5,657억원임

311)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7조 2,442억원임

312)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조 3,080억원임

313)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92억원임

314)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0조 2,206억원임

315)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8조 9,977억원임

316)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4조 9,878억원임

317)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12조 5,286억원임

318) 2021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1조 3,230억원임

319) REUTERS, "Japan ruling party executive calls for \$239 bln extra budget," <https://www.reuters.com/lifestyle/sports/japan-likely-proceed-with-olympics-says-ruling-party-heavyweight-yamamoto-2021-05-26/>, 검색일자: 2021. 7. 13.

2 중국

가.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발표

[조세동향 21-07호]

- ▣ 중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1년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취득세 면제, 납세의무 발생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람 [2021] No.23을 발표함³²⁰⁾

 -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은 2020년 8월 11일 제13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현재에는 1997년 7월 7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 잠정조례」를 시행 중임
- ▣ 취득세법의 과세 대상은 중국 역내 토지 사용권 및 부동산³²¹⁾ 소유권이며, 이들 권리를 이전³²²⁾할 때 양수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임³²³⁾

 - ▶ 취득세율의 경우 3%에서 5% 사이라고 「취득세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적용세율은 지방정부가 세율 구간 이내에서 확정함³²⁴⁾
 - ▶ 과세표준은 토지 및 부동산의 권리 이전을 위해 계약으로 확정된 거래가격이며,³²⁵⁾ 납세자가 토지 및 부동산의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증빙을 취득한 당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³²⁶⁾

320) IBFD, "China Issues Clarifications on Deed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16_cn_1.html, 검색일자: 2021. 7. 21.

321) 중국 「민법전」 제105조에 정의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함

322) 권리 이전이란, 토지사용권 출양, 토지사용권 전양(매매·증여·교환 포함), 부동산 매매·증여·교환 등에 의한 토지 사용권 및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을 말함(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제정 중국 취득세법 - 부동산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2020, pp. 10~11.)

323) Deed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2.;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ed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npc.gov.cn/englishnpc/c23934/202105/dbebaeae4c3d4d6488791bd659e6b59d.shtml>, 검색일자: 2021. 7. 21.

324) Deed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3.

325) 교환인 경우 교환하는 권리와 의 시장가격 차액이 과세표준이며, 증여 등의 매매가격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함(Deed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4)

326) Deed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9.

- ▶ 토지 및 부동산 권리를 양수하여 교육, 의료, 연구, 군사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함³²⁷⁾

나. 주거용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발표

[조세동향 21-08호]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7월 15일, 주거용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포함된 회람(Circular) [2021] No. 24을 발표함³²⁸⁾
 - ▶ 2021년 10월 1일부터 개인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중국 증치세의 일반납세자 및 소규모 납세자³²⁹⁾는 총임대수익에 대해 1.5%의 징수율³³⁰⁾을 적용함
 - ▶ 또한, 동 납세자의 방산세³³¹⁾ 적용 세율을 기존 12%에서 4%로 8%p 인하함
 - 방산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임대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함
 - ▶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Ministry of Urban and Rural Residential Property Construction)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 시 적격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327) Deed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6.

328) IBFD, "China Announces Tax Incentives To Stimulate Rental Market for Residential Proper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9_cn_1.html, 검색일자: 2021. 8. 16.

329) 증치세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 또는 제공할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이며, 중국의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하는데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위안 이하(월 매출액 약 41만 6천위안 이하)일 경우 소규모 납세자로 분류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4월호, 2021. 4. 9.,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초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654Zv9_0&rs=/viewer/result/kiTrend/202104///, 검색일자: 2021. 8. 16.)

330)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징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적용되는 일반세율과 구분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2009, pp. 180~186.)

331) 방산세란,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건축물 가격이나 건축물의 임대료 수입을 징수 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는 중국 내의 도시, 현 소재지에 있는 징수범위 내의 건축물을 소유한 단위나 개인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2009, pp. 255~258.)

다. 성시유호건설세 세무행정 명확화 및 세제혜택 연장 발표

[조세동향 21-09호]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8월 30일, 성시유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UMCT)³³²⁾의 세무행정을 명확히 하는 고시(Public Notice) [2021] No. 26를 발표함³³³⁾

 - ▶ 증치세·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세의무자이지만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 성시유호건설세 과세표준은 증치세·소비세 등의 납부세액임
 - ▶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 따라서 최소 1%~최대 7%의 세율이 적용되며, 시내거나 시내와 가까울수록 적용 세율이 높음
 - ▶ 증치세·소비세 등을 납부할 때,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성시유호건설세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은 증치세·소비세 등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과 같음
 - 증치세·소비세 등의 징수가 감면되거나 환급일 경우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감면·환급됨을 명확히 함
 - 단, 성시유호건설세는 부가세(Sur tax)이므로, 단독으로 감면하거나 환급할 수 없음

- ▣ 중국 국세청은 같은 날, 성시유호건설세의 세제혜택 연장이 포함된 회람(Circular) [2021] No. 27도 발표함³³⁴⁾

 - ▶ 중국 내 표준금거래소 및 상해선물거래소(Shanghai Futures Exchange)에서 판매하는 금(Gold) 및 국가핵심용수 사업에 성시유호건설세 납세의무 면제를 유지함
 -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 ▶ 중국 소규모 납세자(Small-Scale Taxpayers)의 월 매출액이 15만위안³³⁵⁾ 초과 41만 6천 위안³³⁶⁾ 이하인 경우 성시유호건설세 납부세액을 50% 감면함

332) 성시유호건설세란, 도시를 유지 및 보호하고 건설하는 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도시의 유·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목적세를 말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2009, p. 259.)

333) IBFD, “China Clarifies Administration of 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2021, 9.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06_cn_1.html, 검색일자: 2021. 9. 16.

334) IBFD, “China Extends Preferential Policy for 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2021, 8.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30_cn_1.html, 검색일자: 2021. 9. 15.

335) 2021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53만원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 ▶ 공무원, 퇴역군인 등 회람 [2019] No. 21~22에 명시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성시유호건설세 납세의무를 면제함
-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라.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간예납액 납부유예 발표

[조세동향 21-11호]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11월 1일,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액 납부유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시(SAT Public Notice) [2021] No.30을 발표함³³⁷⁾
-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예납하는 것에 상관없이, 2021년 4분기(10~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액을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음
 -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 국세청에 법인세예납신고표를 제출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하면 됨
- ▶ 소기업(small-sized enterprise)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천만위안³³⁸⁾ 미만이어야 하며, 중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억위안³³⁹⁾ 미만이어야 함
 - 소기업은 2021년 4분기 중간예납액 전액을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나, 중기업은 2021년 4분기 중간예납액의 50%만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함

마. 조세환경에 관한 연구 발표

[조세동향 21-12호]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12월 10일, 조세환경에 관한 연구(A Study of China's Tax Environment 2016~2020)를 발표함³⁴⁰⁾

336) 2021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637만원임

337) IBFD, "China Allow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ngaged in Manufacturing to Delay Tax Payments Due in Last Quarter of 2021," 2021. 1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02_cn_1.html, 검색일자: 2021. 11. 23.

338)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억원임

339)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3억원임

- ▶ 세무행정 간소화, 세제혜택 확대,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개방성 및 포괄성 형성 등의 네 가지 관점에서 2016~2020년 동안 중국의 조세환경을 개선한 노력과 성과 등에 대한 연구임
- ▶ 세무행정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신고포털(e-tax) 보편화를 위한 기능 개선 등의 노력으로 전체 납세자 90% 이상이 전자신고포털을 사용하고 있다는 성과에 대한 내용임
- ▶ 세제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세율 인하, 연구개발비 슈퍼공제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임
 -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세제혜택 관련 감면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8.5% 증가했으며, 누적 감면액은 2조 5,400억위안³⁴¹⁾임
- ▶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04개 국가별 투자가이드에 관한 내용임
- ▶ 개방성 및 포괄성 형성과 관련해서는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등에 관한 국제조세 협약에 관한 내용임
 - 중국 국제조세 협약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111개 국가 및 지역을 포괄함

3 싱가포르

가. 재택근무 관련 자산의 세무처리 지침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1년 10월 1일, 재택근무 관련 자산의 공개시장가격(open market price) 산정에 대한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함³⁴²⁾

340) IBFD, "China Publishes Tax Environment Study 2016-2020," 2021. 12.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10_cn_1.html, 검색일자: 2021. 12. 27.

341) 2021년 1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2조 8,718억원임

342) 싱가포르 국세청, "Tax Treatment of Expenses Incurred on Work-Related Assets to Facilitate Working from Home," <https://www.iras.gov.sg/news-events/singapore-budget/covid-19-support-measures-and-tax-guidance/>

- ▶ 직원의 재택근무 종료·고용 중단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유한 재택근무 관련 자산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가능한 자본공제액은 재택근무 관련 자산의 양도가 발생한 회계연도 장부금액에서 공개시장가격을 차감한 것임
 - 싱가포르 국세청은 재택근무 관련 자산의 공개시장가격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동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함
- ▼ 싱가포르 국세청은 재택근무 관련 자산 취득 시 회사가 지출한 자산취득비용을 기준으로 공개시장가격을 산정하도록 함³⁴³⁾
 - ▶ 재택근무 관련 자산취득비용이 2,500싱가포르달러³⁴⁴⁾ 이하인 경우 양도하는 연도에 상관없이 공개시장가격은 0으로 간주함
 - ▶ 재택근무 관련 자산취득비용이 2,5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연도(첫 번째 회계연도) 다음(두 번째) 회계연도 이내 양도하면 재택근무 관련 자산취득비용의 50%를 공개시장가격으로 간주함
 - 세 번째 회계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관련 자산취득비용의 25%를 공개시장가격으로 간주함
 - 네 번째 또는 후속 회계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개시장가격은 0으로 간주함

〈표 III-1〉 재택근무 관련 자산 공개시장가격 산정

재택근무 관련 자산 취득비용	공개시장가격
2,500싱가포르달러 이하	0(양도하는 연도에 상관없음)
2,500싱가포르달러 초과	자산취득비용의 50%(두 번째 회계연도 이내 양도할 경우)
	자산취득비용의 25%(세 번째 회계연도 이내 양도할 경우)
	0(네 번째 또는 후속 회계연도에 양도할 경우)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Tax Treatment of Expenses Incurred on Work-Related Assets to Facilitate Working from Home," <https://www.iras.gov.sg/news-events/singapore-budget/covid-19-support-measures-and-tax-guidance/tax-guidance/for-companies-self-employed-partnerships/tax-treatment-of-expenses-incurred-on-work-related-assets-to-facilitate-working-from-home>, 검색일자: 2021. 10. 25.

[tax-guidance/for-companies-self-employed-partnerships/tax-treatment-of-expenses-incurred-on-work-related-assets-to-facilitate-working-from-home](https://www.iras.gov.sg/news-events/singapore-budget/covid-19-support-measures-and-tax-guidance/tax-guidance/for-companies-self-employed-partnerships/tax-treatment-of-expenses-incurred-on-work-related-assets-to-facilitate-working-from-home), 검색일자: 2021. 10. 25.

343) IBFD, "COVID-19 Pandemic: Tax Authority Publishes Guidelines for Simplified Tax Treatment of Assets Purchased for Home Office Arrangements," 2021. 10.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01_sg_1.html, 검색일자: 2021. 10. 25.

344) 2021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7만원임

- ▼ 싱가포르 국세청이 발표한 공개시장가격 산정과 관련된 세무처리 지침은 회계연도 2021년과 2022년에 취득한 재택근무 관련 적격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 ▶ 재택근무 관련 적격자산은 싱가포르 「소득세 자동화 장비 규정 2004」³⁴⁵⁾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득비용이 5천싱가포르달러³⁴⁶⁾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³⁴⁷⁾

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중재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1-11호]

-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1년 10월 23일, 이중과세방지협약(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의 중재(arbitration)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함³⁴⁸⁾
 - ▶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진행 중인 납세자가 이중과세 등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방법 등이 포함됨
- ▼ 세법상 거주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과세 결과가 DTA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³⁴⁹⁾
 - ▶ 납세자가 제기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 절차로 DTA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하지만, 이러한 상호합의 절차가 상호합의 시작일로부터 2~3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즉,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정 기간

345) 싱가포르 국세청, "Income Tax (Automation Equipment) Rules 2004,"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prescribed-automation-list-\(merged\).pdf?sfvrsn=a3c694dd_2](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prescribed-automation-list-(merged).pdf?sfvrsn=a3c694dd_2), 검색일자: 2021. 11. 4.

346) 2021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4만원임

347) 싱가포르 국세청, "INCOME TAX ACT(CHAPTER 134),"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prescribed-automation-list-\(merged\).pdf?sfvrsn=a3c694dd_2](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prescribed-automation-list-(merged).pdf?sfvrsn=a3c694dd_2), 검색일자: 2021. 10. 25.

348) IRAS e-tax Guid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2021. 10. 23.,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 검색일자: 2021. 11. 23.

349) IBFD, "Singapore Updates Tax Treaty Guidelines to Include Guidance on Arbitration," 2021.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5_sg_1.html, 검색일자: 2021. 11. 23.

(2~3년) 이내에 합의되지 못했으며, 합의를 위해 기간 연장 등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함³⁵⁰⁾

▶ 중재 절차 신청방법은 중재 절차가 필요한 이유 등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싱가포르 국세청 국제조세 관련 부서³⁵¹⁾에 제출하면 됨

▣ 중재 절차 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final offer’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들이 해결책을 각각 제시하면 인선된 중재 패널이 제시된 해결책 중 한 가지를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함³⁵²⁾

▶ 단, 중재 절차가 진행된 후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중재 절차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종결됨

4 인도

가. 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 추가 연장안 발표

[조세동향 21-09호]

▣ 인도 정부는 2021년 소득세 신고서 및 양식 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함³⁵³⁾

▶ 코로나19를 비롯한 납세자와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비롯한 직·간접세의 제출기한 및 납부기한을 연장함

- 이러한 연장은 2021년 5월에 실행되었던 연장 조치³⁵⁴⁾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임

350) IRAS e-tax Guid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2021. 10. 23.,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 검색일자: 2021. 11. 23.

351) 싱가포르 국세청 국제조세 관련 부서의 명칭은 “The Competent Authority International Tax and Relations Division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임

352) IRAS e-tax Guid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2021. 10. 23.,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 검색일자: 2021. 11. 23.

353) IBFD, “India Further Extends Various Compliance Deadlin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10_in_1.html 검색일자: 2021. 9. 14.

354) IBFD, “COVID-19 Pandemic: India Extends Compliance Deadlines under Income Tax Act,” <https://research>,

- ▶ 2021/22의 소득세 관련 신고서에 대한 마감일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마감일로부터 재연장됨
 - 2021년 7월 31일 마감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10월 31일 마감 → 2022년 2월 15일까지
 - 2021년 11월 30일 마감 → 2022년 2월 28일까지
- ▶ 2021년 9월 30일이 제출 마감일인 2020/21 감사보고서는 2022년 1월 15일로 제출기한이 연장됨
- ▶ 2021년 10월 31일이 제출 마감일인 2020/21에 대한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회계사의 보고서는 2022년 1월 31일로 제출기한이 연장됨

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조세동향 21-11호]

- ▾ 인도 정부는 소비 증진과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함³⁵⁵⁾
 - ▶ 인도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석유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2021년 유가 급등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음³⁵⁶⁾
 - 가격 인하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의 약 52%, 경유 가격의 약 47%를 차지했음
 - ▶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대한 인도의 유류세는 1리터당 5루피,³⁵⁷⁾ 경유는 10루피³⁵⁸⁾로 인하됨
 - 이러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연방 정부는 5,500억루피³⁵⁹⁾에서 6천억루피³⁶⁰⁾ 사이의 세입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5-21_in_1%23tns_2021-05-21_in_1, 검색일자: 2021. 9. 14.

355) Taxnote, "India Lowers Fuel Taxes to Ease Impact Of Rising Prices," 2021. 11. 8.

356) REUTERS, "India cuts fuel taxes ahead of festive season to boost economy",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reduces-excise-duty-petrol-diesel-source-2021-11-03/>, 검색일자: 2021. 11. 24.

357)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3원임

358)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6원임

359) 2021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조 7,670억원임

360) 2021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조 5,640억원임

5

인도네시아

가.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조세동향 21-08호]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매상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발표함³⁶¹⁾

 - ▶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매공간의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정부가 부담함을 발표함
 - 해당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은 2021년 8~10월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함
 - ▶ 해당 세제 인센티브는 독립형 상점 및 아울렛과 쇼핑센터, 쇼핑단지, 아파트, 호텔, 병원, 교육 건물, 대중교통 건물, 사무실 건물 및 공공시장에 위치한 상점에 사용할 수 있음

- ▣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월에 실시하였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연장함³⁶²⁾

 - ▶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월에 실시하였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연장함
 - 해당 인센티브는 3월 최초 실시 발표 당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과세기간에 유효하였으나, 해당 연장 조치로 2021년 12월까지 유효함
 - ▶ 해당 인센티브는 신규 주택 및 아파트 취득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억루피아³⁶³⁾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판매가격의 VAT는 전액, 2억루피아에서 5억루피아³⁶⁴⁾ 사이의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가격의 VAT은 50%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³⁶⁵⁾

361)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Announces VAT Incentive on Leased Spaces for Retail Trad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04_id_2.html 검색일자: 2021. 8. 17.

362)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Extends VAT Incentive for New Residential Proper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3_id_1.html 검색일자: 2021. 8. 17.

363) 2021년 8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642만원임

364) 2021년 8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105만원임

36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제3호, 「인도네시아 - 부동산 및 자동차 부문 등의 구입에

나. 국내 투자자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조세동향 21-09호]

-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투자자의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³⁶⁶⁾

 - ▶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거주납세자의 채권 이자소득 수취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함
 - 이러한 조치는 기존 조세정책상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에 비해 10%라는³⁶⁷⁾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와의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임
 - ▶ 국내 투자자에 대한 인화된 원천징수세율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적용됨

다. 세법 개정안 통과

[조세동향 21-10호]

- ▣ 인도네시아 하원은 2022년 세제 개혁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킴³⁶⁸⁾

 -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해 개정함
 - 개인 소득세에 대한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상한을 6천만루피아³⁶⁹⁾로 인상하며 5억루피아³⁷⁰⁾ 이상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을 35%로 인상함

관한 조세혜택 실시」

366) IBFD, “Indonesia Lowers Withholding Tax on Interest from Bonds for Domestic Investo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9-06_id_1.html 검색일자: 2021. 9. 14.

367) IBFD, “Indonesia Issues Implementing Regulation for Lower Withholding Tax Rate on Interest Paid to Non-Residents,”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1-03-24_id_1.html#tns_2021-03-24_id_1 검색일자: 2021. 9. 14.

368) IBFD, “Indonesia Passes into Law Tax Reform Bil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08_id_1.html, 검색일자: 2021. 10. 20.

369) 2021년 10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3만 4천원임

370) 2021년 10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1,950만원임

〈표 III-2〉 소득세 과세구간 및 한계세율 개정 비교

(단위: 루피아, %)

과세구간		한계세율	
기존	개정	기존	개정
5천루피아 이하	6천루피아 이하	5	동일
5천 초과~2억 5천루피아 이하	6천 초과~2억 5천루피아 이하	15	동일
2억 5천 초과~5억루피아 이하	동일	25	동일
5억루피아 초과	동일	30	35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2년 과세연도부터 표준 법인세율을 22%로 유지함
-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서비스 및 기타 여러 유형의 서비스와 같이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기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VAT를 면제하는 등 면세 축소
- VAT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 4월부터 10%에서 11%로, 이후 2025년부터 12%로 VAT 세율 인상
- ▶ 해당 세제 개혁안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도입되는 납세자의 미공개 자산 신고를 허용하는 조세 사면 프로그램과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탄소세가 포함됨

라. 세법 개정안 대통령 비준

[조세동향 21-11호]

- ▼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9일, 지난 9월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을 비준함³⁷¹⁾
 -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사치세법」 등에 대해 개정함
 - 개인 소득세에 대한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상한을 6천만루피아³⁷²⁾로 인상하며 50억루피아³⁷³⁾ 이상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을 35%로 인상함

371) IBFD, "President Ratifies Tax Reform Bil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05_id_1.html, 검색일자: 2021. 11. 16.

372) 2021년 10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3만 4천원임

〈표 III-3〉 소득세 과세구간 및 한계세율의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과세구간	기존 한계세율	개정 과세구간	개정 한계세율
1	~5천만루피아 이하	5%	~6천만루피아 이하	5%
2	5천만 초과~2억 5천루피아 이하	15%	6천만 초과~2억 5천루피아 이하	15%
3	2억 5천 초과~5억루피아 이하	25%	2억 5천 초과~5억루피아 이하	25%
4	5억 루피아 초과~	30%	5억 초과~50억루피아 이하	30%
5	-	-	50억 루피아 초과~	35%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2년 과세연도부터 표준 법인세율을 22%로 유지함
-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서비스 및 기타 여러 유형의 서비스와 같이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기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VAT를 면제하는 등 면세범위를 축소함
- VAT 세율을 2022년 4월부터 10%에서 11%로, 이후 2025년부터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 해당 세제 개혁안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도입되는 납세자의 미공개 자산 신고를 허용하는 조세 사면 프로그램이 도입됨
- 이전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 납세자는 미신고 자산별로 6~11% 세율이, 그 외의 개인 납세자는 자산별로 12~18%의 세율이 과세됨

〈표 III-4〉 조세사면 프로그램 비교

구분	정책 1	정책 2
주체	(이전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 납세자	개인 납세자
범위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조세 사면 프로그램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산	• 2020년 연간 세금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한 자산
최종 세율	• 인도네시아로 송금되지 않은 외국 자산 신고의 경우 11% •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8%	• 인도네시아로 송금되지 않은 외국 자산 신고의 경우 18% •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14%

373) 2021년 10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1,950만원임

〈표 III-4〉 의 계속

구분	정책 1	정책 2
최종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증권/천연 자원 처리 부문(다운스트림)/재생 에너지 사업 활동에 투자된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증권/천연 자원 처리 부문(다운스트림)/재생 에너지 사업 활동에 투자된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12%

자료: IBFD, "President Ratifies Tax Reform Bill"

- ▶ 2022년 4월 1일부터 탄소세가 도입됨
 -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 환산(CO₂e) 1kg당 30IDR³⁷⁴)로 탄소세가 부과됨

6 호주

가. 무형자산 국제거래 실무이행지침 초안 공개

[조세동향 21-07호]

- ▣ 호주 국세청은 2021년 5월 19일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DEMPE) 관련 국제거래 실무이행지침³⁷⁵(PCG2021/D4) 초안을 공개함³⁷⁶
 - ▶ 동 지침은 납세자가 고위험 거래를 식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문서화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문서화 요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됨. 상업적 의사결정의 이해와 입증, 법적 형식의 이해, 무형자산 DEMPE 활동의 식별 및 입증, 거래 관련 세금 및 손익분석

374)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원임

375) 실무이행지침(PCG)은 국세청이 관련 거래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할 뿐, 납세자나 국세청을 구속하는 규정이 아님(International taxreview, "Australia: Launch of the patent box regime and guidance on intangible arrangements," 2021. 7. 2.,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b1sj36sg4s5819/australia-launch-of-the-patent-box-regime-and-guidance-on-intangible-arrangements>, 검색일자: 2021. 7. 21.)

376) 호주 국세청, "Draft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PCG2021/D4, Intangibles Arrangements),"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DPC/PCG2021D4/NAT/ATO/00001>, 검색일자: 2021. 7. 21.

▶ 동 지침은 총 12개의 거래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무 관점에서 고위험 거래로 제시한 다섯 가지 사례는 <표 III-5>와 같음

<표 III-5> 세무상 고위험 무형자산 국제거래 관련 자산 공개시장가격 산정

사례유형	거래 구조/내용	대가흐름
1. 무형자산 국외 집중화	(현) 호주법인이 무형자산 개발/소유 (변경) 1) 무형자산 이전(국내→국외) 2) 호주법인 개발 지속(기존+신규) 3) 신규 무형자산 귀속: 국외법인 4) 국외법인: 제한된 개발활동	(국외 → 호주 법인) 1) (신규개발) 원가 보상 2) (기존자산) 매년 감소하는 로열티 지급 (호주 → 국외 법인) 1) (신규자산) 로열티 지급
2. 무형자산 국내/외 이원화	(현) 호주법인이 무형자산 개발/소유 (변경) 1) 무형자산 국외판권만 이전(국내 → 국외) 2) 호주법인 개발 지속(국내외) 4) 국외법인: 제한된 개발활동	(국외 → 호주 법인) 1) (판권대가) 일회성 지급 2) (개발활동) 원가 보상
3. 국내 무형자산 미인식	1) 호주법인이 무형자산을 개발/소유 2) 호주법인: 신제품 개발 강화 3) 국외법인: 호주법인 무형자산에 접근 가능하며 신제품 이익 증가	(국외 → 호주 법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4. 상업화 이전 무형자산 이전	1) 호주법인이 개발 중인 무형자산을 상업화 이전에 국외로 이전 2) 호주법인: 개발활동 지속 3) 국외법인: 제한된 개발활동	(국외 → 호주 법인) 1) (개발활동) 원가 보상 2) 세계시장 판매 로열티
5. 독립기업원칙 미고려 약정	1) 국외법인: 무형자산을 소유 2) 호주법인: 용도 없는 국외법인 소유 무형 자산 사용권을 확보	(호주 → 국외 법인) 1) 구매항목에 대한 대가 2) 로열티

자료: 호주 국세청, "Draft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PCG2021/D4, Intangibles Arrangements),"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DPC/PCG2021D4/NAT/ATO/00001>, 검색일자: 2021. 7. 21.

▶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1년 7월 16일이며, 확정 시 소급적용 예정임³⁷⁷⁾

377) 동 지침 §11

나. 라이프스타일 자산(Lifestyle assets) 세무조사

[조세동향 21-08호]

- ☐ 호주 국세청은 2021년 7월 14일, 고가(高價)의 라이프스타일 자산 세무조사 계획을 공지함³⁷⁸⁾

 - ▶ 항목별 자산가치가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 자산으로 분류되며, 보험사의 2020회기부터 2022회기까지의 보험가입 정보를 통해 식별됨
 - 항공기 15만호주달러³⁷⁹⁾
 - 선박 및 미술품 10만호주달러³⁸⁰⁾
 - 자동차 및 순종 말 6만 5천호주달러³⁸¹⁾
 - ▶ 주요 점검항목은 아래를 포함함
 - 신고한 소득이 해당 자산 구매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가
 - 신고하지 않은 자산 처분이 있는가
 -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 Tax Notes 기사에 따르면, 특정 자산가치가 급등하였을 때, 이를 담보로 다른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평가이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이 있다고 함³⁸²⁾
 - ▶ 동 조치는 2016년 2월 최초 시행되었고, 2013회기 이후의 관련 보험 거래에서 식별된 자산항목들이 조사되어 왔으며, 호주 국세청은 금번 계획과 관련하여 연간 약 30만건의 데이터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함

378) 호주 국세청, "Lifestyle Assets 2013-14 to 2022-23 data-matching program protocol," <https://www.ato.gov.au/General/Gen/Lifestyle-Assets-2013-14-to-2022-23-data-matching-program-protocol/>, 검색일자: 2021. 8. 18.

379) 2021년 8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천만원임

380) 2021년 8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00만원임

381) 2021년 8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00만원임

382) Tax Notes International, "Australia Examines Insurance Data For 'Lifestyle assets' Reviews," Volume 103, p. 745, 2021. 8. 9.

다. 2019~20 기업 조세 투명성 보고서 발행 개정안 통과

[조세동향 21-12호]

- ▾ 호주 국세청(ATO)은 2021년 12월 10일, 2019/20 기업 조세 투명성 보고서(corporate tax transparency report)를 발행함³⁸³⁾

 - ▶ 검토 모집단은 호주에 위치한 2,370개³⁸⁴⁾ 기업이며, 이 중 782개사(33%³⁸⁵⁾)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 ATO 부위원장(deputy commissioner)인 레베카 세인트(Rebecca Saint)는 ATO가 상기 회사들의 손실이 조세회피약정(tax avoidance arrangements)³⁸⁶⁾이 아닌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실제로 조사함으로써(손실 신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confidence)를 확보하였다고 언급함³⁸⁷⁾
- ▾ 상기 기업 조세 투명성 보고서는 납세신고 이행과 관련한 위험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ATO의 방법론 및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³⁸⁸⁾

 - ▶ ATO는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의 수준(overall level of assurance)과 관련하여 100대 납세의무자 중 ① 49%에 높음(high) ② 33%에 중간(medium) ③ 18%에 낮음(low) 등급을 부여함
 - ‘높음’ 등급은 ATO가 세액이 올바르게 신고되었다는 확신(assurance)을 얻었음을 의미함

383) 호주 국세청, “Corporate tax transparency report 2019 - 20 income year,” 2021. 12. 10., <https://www.ato.gov.au/Business/Large-business/In-detail/Tax-transparency/Corporate-tax-transparency-report-2019-20-income-year/>, 검색일자: 2021. 12. 22.

384) 법인세 세수의 65%를 차지함

385) 전년 대비 1%p 증가함

386) ATO 부위원장은 일부 회사들이 여전히 대출이자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싱가포르와 같은 저세율 관할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ABC.net, “More big companies paid no tax during the COVID crisis - ATO transparency data reveals,” 2021. 12. 9., <https://www.abc.net.au/news/2021-12-10/companies-multinationals-corporate-tax-transparency-ato-covid19/100687574>, 검색일자: 2021. 12. 22.)

387) ATO 부위원장은, 또한 국외로의 이익이전 등을 통해 회계실적 고려 시 기업이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보다 8.3% 적은 세액이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동 수치를 2020/21회기에는 4%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Business Insider Australia, “A third of all major companies in Australia don't pay any tax - the ATO says,” 2021. 12. 10., <https://www.businessinsider.com.au/a-third-of-all-major-companies-in-australia-dont-pay-any-tax-the-ato-says>, 검색일자: 2021. 12. 22.)

388) 호주 국세청, “Corporate tax transparency report 2019 - 20 income year,” 2021. 12. 10., <https://www.ato.gov.au/Business/Large-business/In-detail/Tax-transparency/Corporate-tax-transparency-report-2019-20-income-year/>, 검색일자: 2021. 12. 22.

- ‘중간’ 등급은 ATO의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낮음’ 등급은 특정한 우려사항(specific concerns)을 인지했음을 의미함
- ▶ ATO는 납세의무자의 조세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tax risk management and governance)와 관련하여 100대 납세의무자 중 ① 8%에 3단계 ② 56%에 2단계 ③ 32%에 1단계 ④ 3%에 적색 ⑤ 1%에 미분류 등급을 부여함
- ‘3단계’ 등급은 납세의무자가 조세통제 프레임워크(framework)가 존재하고, 유효하게 설계되었으며(designed effectively), 실제로 유효하게 운영되었다는(operated effectively in practice) 증거를 제공했음을 의미함
- ‘2단계’ 등급은 납세의무자가 조세통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 유효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했음을 의미함
- ‘1단계’ 등급은 납세의무자가 조세통제 프레임워크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했음을 의미함
- 그 이외의 등급은 납세의무자가 조세통제 프레임워크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ATO가 유의미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 ATO는 납세의무자의 회계실적-세액 부합도(alignment of tax and accounting outcomes)와 관련하여 100대 납세의무자 중 ① 58%에 높음 ② 38%에 중간 ③ 4%에 낮음 등급을 부여하였고 ④ 적색 등급은 부여하지 않았음
- ‘높음’ 등급은 ATO가 회계실적과 세액 간 차이를 이해했음을 의미함
- ‘중간’ 등급은 회계실적과 세액 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 분석 및 설명이 필요함을 의미함
- ‘낮음’ 등급은 회계실적과 세액 간 차이와 관련한 우려 항목이 식별되었음을 의미함
- ‘적색’ 등급은 회계실적과 세액 간 차이를 이해·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함

7

뉴질랜드

가. 결제정보 기반 사업소득 검증 강화

[조세동향 21-08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1년 7월 6일, 지급결제 정보에 기반한 사업소득 신고 검증 강화 초안을 공개하였음³⁸⁹⁾
 - ▶ 동 초안이 시행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 회사는 지급결제 정보를 분기별로 뉴질랜드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05년 이후 필요시마다 관련 정보를 관련 법령 및 요청에 기반하여 수집하여 왔으며, 금번 초안은 이를 정례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 ▶ 해당 지급결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며, 고객정보는 수집되지 않음
 - 포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상호명, 위치, 연락처, 월 결제액, 은행계좌 외
 - ▶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제시한 활용유형의 세 가지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예시1) 신규 사업체의 매출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기준금액 초과 예상 시 각종 세무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
 - (예시2) 현금결제 비중을 업종별로 산출한 후, 업종 대비 비정상 패턴을 보이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예시3) 회사 주소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법인을 복수로 설립하여 인적 공제혜택을 중복으로 받았는지 조사
 - ▶ 동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1년 8월 20일이며,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음

나. 암호자산(cryptoassets)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정비

[조세동향 21-09호]

- ▼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9월 8일, 암호자산(cryptoassets)³⁹⁰⁾ 관련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규정 개정안을 포함하는 2021/22회기 세율안을 의회에 제출함^{391), 392)}
 - ▶ 금번 변경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암호자산을 명시적(expressly)으로 제외시

389) 뉴질랜드 국세청, "Regular dataset collection from payment service providers," Tax Policy, 2021. 7. 6., <https://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21/2021-dd-regular-dataset-collection>, 검색일자: 2021. 8. 18.

390)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의미와 동일함

391) 뉴질랜드 의회, "Taxation(Annual Rates for 2021-22, GST, and Remedial Matters) Bill," https://www.parliament.nz/mi/pb/bills-and-laws/bills-proposed-laws/document/BILL_115767/taxation-annual-rates-for-2021-22-gst-and-remedial-matters, 검색일자: 2021. 9. 15.

392) 뉴질랜드 국세청, "Taxation(Annual Rates for 2021 - 22, GST, and Remedial Matters) Bill," <https://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21/2021-commentary-argrm-bill>, 검색일자: 2021. 9. 15.

- 켰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5%)됨
- (과세 대상 1)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또는 NFT) 거래
 - (과세 대상 2) 암호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
- ▶ 기존 부가가치세 규정은 암호자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 자산에 대한 규정 적용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었으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들이 존재하였음
- 암호자산의 일반 공급에는 15%의 일반세율, 금융거래에는 면세, 비거주자에 대한 공급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암호자산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왜곡(distortion) 및 선호(preference)를 발생시켰음
 - 암호자산이 취득될 때와 법정화폐로 교환될 때,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면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발생시켰음
 - 가상자산의 기능과 거래의 속성별로 부가가치세의 취급이 달라지면서, 납세자의 이행비용(compliance costs)을 증가시켰음
- ▶ 한편, 암호자산을 발행하여 차입(debt) 혹은 자본(equity) 성격의 자금을 조달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조달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공제 가능 항목은 법률·자문 서비스(legal or advisory services) 등임
- ▶ 법안 통과 시 암호자산의 부가가치세 제외 규정은 2009년 1월, 암호자산을 통한 조달 부대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규정은 2017년 4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임

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관련한 조세 해석서 발행

[조세동향 21-10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1년 9월 28일,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 creators)와 관련한 조세쟁점에 대한 해석서(interpretation statement)를 발행함³⁹³⁾

393) 뉴질랜드 국세청, "Content creators - tax issues, Interpretation statement," 2021. 9. 28.,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media/project/ir/tt/pdfs/interpretation-statements/2021/is-21-08.pdf?modified=20210927204625>, 검색일자: 2021. 10. 22.

- ▶ 동 해석서는 현행 「소득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소득원을 예시함
 -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다음의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의미함: ①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디오·이미지·글 등을 게시 ② 블로그 활동(blogging) ③ 영향력 행사(influencing) ④ 온라인게임 대회에서 경쟁(competing) 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게임영상을 송출(streaming)
 -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소득원은 다음을 포함함: ① 조회 수 연동 수취금액 ② 구독자 수 연동 수취금액 ③ 온라인 콘텐츠에서 제품·브랜드에 대한 판촉 대가 ④ 온라인 콘텐츠에 내재된 광고 대가 ⑤ 제휴마케팅·링크 수수료 ⑥ 상품·서비스 판매금액 ⑦ 기부(donations) 또는 선물(gifts) ⑧ e-스포츠 경쟁 등에서의 상금
- ▶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 비금전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적용면제 기준을 제시함
 - 콘텐츠 창작활동(content-creation activity)에 대한 대가로 규칙성(regularity) 있게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을 구성하며, 부업(side activity)으로 발생한 소득 및 활동 중단 계정 등에서 발생하는 수동(passive) 소득도 포함됨
 - 인터넷 사용료, 관련 장비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소득 창출과 관련이 있고 사업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공제 가능함
 - 비금전(non-monetary) 수취물은 환금성(convertibility into money)이 있는 경우 수령시점이 속한 기간에 재판매가치(resale value) 기준으로 과세되며, 재판매가치는 합리적인 추정(reasonable estimate)이 인정됨
 - 연간 200뉴질랜드달러³⁹⁴⁾ 이하 또는 18세 미만의 학생의 소득은 신고·납세의무가 면제됨
- ▶ 그 밖에도 국제조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등의 적용 기준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 뉴질랜드에 항구적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가 없고 1년 중 325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비거주자로 취급되며,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함³⁹⁵⁾
 - 구분과세(schedular) 항목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394)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환 환산 시 약 17만원임

395) 이중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 ① 판촉출연료(promotional appearance fees, 상품판촉을 위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이벤트에 참여하고 자신의 명성(fame)을 이용) ② 미디어 제작수수료(광고주를 위해 비디오를 제작) ③ 스포츠·강의·공연 등의 콘텐츠 제작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 금액 등
-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연간 공급금액이 6만뉴질랜드달러³⁹⁶⁾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GST) 납부의무가 발생함

396)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00만원임

IV 국제기구

1 OECD

가. 디지털세 필라 1·2 골격 국제합의 사실 발표

[조세동향 21-10호]

- ▼ OECD는 2021년 10월 8일, 디지털세 필라 1·2 골격과 관련한 국제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함³⁹⁷⁾
 - ▶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 공정한 세금(a fair share of tax)을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필라 1·2의 개념³⁹⁸⁾이 2018년 12월 확정되었고, 2020년 10월 중간보고(Blueprint), 2021년 7월 중간 합의 이후, 금번에 최종 골격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 금번 국제합의에는 140개국 중 136개국³⁹⁹⁾이 참여하였으며, 애플·구글·페이스북 등이 위치해 있고 2021년 7월 유보 의견을 표명했던 아일랜드는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함
 - ▶ OECD는 디지털세 필라 1로 인한 국별 수익재분배 규모 합계를 1,250억달러,⁴⁰⁰⁾ 필라 2로 인한 글로벌 세수 증가 규모를 1,500억달러⁴⁰¹⁾ 규모로 예상함⁴⁰²⁾

397)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strikes a ground-breaking tax deal for the digital age," 2021. 10. 18., <https://www.oecd.org/newsroom/international-community-strikes-a-ground-breaking-tax-deal-for-the-digital-age.htm>, 검색일자: 2021. 10. 22.

398) 필라 1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소비·이용자 거주국에 세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과세 근거 마련, 필라 2는 저세율국을 통한 조세회피 억제방안을 골자로 함

399) 금번 국제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4개국은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이며, 2021년 7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 중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가 합의에 동참하였음

400)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7조원임

401)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3조원임

402) 금번 국제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세부 쟁점 논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있음(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여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 10. 1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dId1=MOSF_000000000057044&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1. 10. 22.)

- (필라 1)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유로 이상이고 수익성이 10% 이상인 약 100개의 다국적 기업⁴⁰³⁾으로부터 1,250억달러의 수익이 국가 간 재배분될 것으로 예상함
- (필라 2) 매출 7억 5천만유로⁴⁰⁴⁾ 이상인 기업⁴⁰⁵⁾에 대해 15%로 설정된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세수가 약 1,5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 금번 합의는 7월 합의에서 범위로 표현되었던 핵심 쟁점 수치를 확정함으로써 주요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제거함⁴⁰⁶⁾
 - (필라 1) 통상이익률(10%) 초과이익에 대한 재배분 비율(배분 총량)을 25%로 확정함(↔ 2021년 7월, 20~30%)
 -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함(↔ 2021년 7월, '최저' 15%)
- ▶ 금번 합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
 -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금번 국제합의를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다자주의의 주요한 승리(a major victory for effective and balanced multilateralism)'라고 표현함
 - 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은 통상이익(10%) 자체는 재분배되지 않는 점과 최저한세율이 20%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냄⁴⁰⁷⁾
 - 홍콩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합의를 환영하되 잔여 쟁점 논의과정에서 국별 산업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⁴⁰⁸⁾
- ▶ 디지털세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기술적 세부사항 합의 및 국별 비준이 마무리되어야 함
 - 기존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유사 과세는 2021년 10월 8일 이후 신규로 도입하지 않고, 필라 1 시행 시 폐지하기로 함

403)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됨

404) 2021년 10월 22일 기준 원환 환산 시 약 1조원임

405)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국제해운업은 적용에서 제외됨

406) 기타 합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에 설명됨(기획재정부,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합의문 공개」, 2021. 10. 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692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1. 10. 22.)

407) Tax Notes International, "OECD Global Tax Agreement Draws Mixed Reactions," Volume 104, 2021, pp. 342~343.

408)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보도참고자료, 2021. 10. 14.,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6986&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1. 10. 22.

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현황보고서 발행

[조세동향 21-11호]

- ▣ OECD는 2021년 10월 27일, G20 국가들의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탄소가격제의 적극적 확대 및 국내의 정책 조율·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함⁴⁰⁹⁾

 - ▶ 2021년 기준 탄소배출량 대비 유효(effective) 탄소가격제 적용률(coverage) 항목에서 한국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96.5%)를 기록하였으며,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제 적용률 항목에서는 3위(79.6%)를 기록함
 - 유효(effective) 탄소가격제 적용률은 전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s), 탄소세(carbon tax), 연료소비세(fuel excise)가 가격에 가산된 CO₂ 배출량의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37.2%에서 2021년 48.7%로 11.5%p 상승함
 - 2021년 유효 탄소가격제 적용률(coverage)은 한국 96.5%(1위), 캐나다 88.2%(2위), 독일 88.1%(3위), 이탈리아 85.1%(4위), 일본 78.6%(5위), 영국 68.3%(8위), 중국 47.5%(11위), 미국 38.4%(14위), 호주 22.4%(15위)를 기록함
 -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제 적용률은 전체 CO₂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가 가격에 가산된 CO₂ 배출량의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15.5%에서 2021년 28.4%로 12.9%p 상승함
 - 2021년 명시적 탄소가격제 적용률은 캐나다 85.5%(1위), 독일 85.3%(2위), 한국 79.6%(3위), 일본 77.2%(4위), 프랑스 67.3%(5위) 순임
 - ▶ 2021년 기준 CO₂ 1톤당 배출가격 항목에서, 한국은 G20 국가 중 유효(effective) 탄소가격 5위(43.03유로⁴¹⁰⁾),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 6위(10.34유로)를 기록함
 - 유효(effective)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배출권거래제 가격, 탄소세, 연료소비세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16.82유로에서 2021년 18.71유로로 1.89유로 상승함

409) OECD, "G20 economies are pricing more carbon emissions but stronger globally more coherent policy action is needed to meet climate goals," 2021. 10. 27., <https://www.oecd.org/tax/tax-policy/g20-economies-are-pricing-more-carbon-emissions-but-stronger-globally-more-coherent-policy-action-is-needed-to-meet-climate-goals-says-oecd.htm>, 검색일자: 2021. 11. 23.

410)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341원임

- 2021년 유효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영국 95.95유로(1위), 이탈리아 93.99유로(2위), 프랑스 93.10유로(3위), 독일 78.22유로(4위), 한국 43.03유로(5위), 일본 31.59유로(7위), 미국 15.23유로(13위), 중국 8.59유로(15위)를 기록함
-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배출거래제 가격과 탄소세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1.59유로에서 2021년 3.62유로로 2.03유로 상승함
- 2021년 명시적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독일 30.26유로(1위), 프랑스 29.43유로(2위), 캐나다 21.78유로(3위), 영국 17.56유로(4위), 이탈리아 15.44유로(5위), 한국 10.34유로(6위) 순임
- ▶ OECD는 탄소가격제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탄소가격제가 완벽한 해결책(silver bullet)은 아니므로 국내외 정책 공조와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함
- G20 국가 탄소배출량의 절반가량에 아직 탄소가격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부과되는 가격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므로 좀 더 유의미한(significant) 진전이 필요함
- 생산기지를 규제가 약한 해외로 옮기는 탄소 누출(leakage)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등 국제적 조율(co-ordination)이 중요함
- 명시적 탄소가격제가 정책효과⁴¹¹⁾ · 부작용 억제⁴¹²⁾ · 국가세수 · 공기정화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정책수단임을 설명하고, 연료소비세를 탄소 함유량에 연동시키는 등의 탄소가격제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 여지가 있음을 언급함

다. 디지털세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공개

[조세동향 21-12호]

-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1년 12월 20일, 디지털세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을 공개함⁴¹³⁾

411) 가격을 통한 통제는 사용자에게 절감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하게 되며, 가격 대신 기준(standards) 요건을 부과할 경우 기준을 달성 시 추가적인 개선 유인이 사라지게 됨

412)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기준(energy efficiency standards)에는 사용 단가를 낮춰서 소비를 늘리는 반동효과(rebound effects)가 존재함

413) OECD, "OECD releases Pillar Two model rule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15% global minimum tax," <https://www.oecd.org/tax/oecd-releases-pillar-two-model-rules-for-domestic-implementation-of-15-percent-global-minimum-tax.htm>, 검색일자: 2021. 12. 21.;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tax-challenges>

- ▶ 모델규정은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도입되고,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Anti Global Base Erosion, GloBE) 규칙의 각 실행시기를 정함
 - 공통접근 방식에 따르면 각국은 GloBE 규칙을 도입할 의무는 없으나 다른 관할국이 GloBE 규칙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가 있고, GloBE 규칙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모델규정에 따라야 함⁴¹⁴⁾
 - 소득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을 포함하여 모델규정은 2023년, 비용공제부인 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은 2024년부터 실행될 예정임
- ▶ 모델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은 추후 합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임
 - 모델규정 각 조항에 관한 설명 및 적용 예시를 규정한 주석서(Commentary)를 공개할 예정임
 - GloBE 규칙과 미국 GILTI 규정⁴¹⁵⁾과의 관계를 공개할 예정임
 - 원천지국 과세 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과 관련하여 2022년 3월에 모델규정·주석서 및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다자기구를 공개할 예정임⁴¹⁶⁾
- ▣ 필라 2 모델규정은 GloBE 규칙(IIR 및 UTPR)을 적용하여 다국적 기업그룹의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부담하도록 함⁴¹⁷⁾
 - ▶ GloBE 규칙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 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⁴¹⁸⁾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이며, 다국적 기업그룹의 최종 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및 고정사업장이 구성기업에 해당함
 - ▶ 관할국별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GloBE 이익·손실과 조정된 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를 통해 산정한 후, 추가세액을 결정함

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global-anti-base-erosion-model-rules-pillar-two.pdf, 검색일자: 2021. 12. 30.

414)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Pillar Two)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oecd.org/tax/beps/pillar-two-model-GloBE-rules-faqs.pdf>, 검색일자: 2022. 1. 6.

415)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규정이란,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제로, 미국의 무형자산을 통해 해외에서 수익을 얻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정 세율 이하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임

416) OECD, “Planned stakeholder input in OECD tax matters,” <https://www.oecd.org/tax/planned-stakeholder-input-in-oecd-tax-matters.htm>, 검색일자: 2021. 1. 3.

417) OECD, “Overview of the Key Operating Provisions of the GloBE Rules,” <https://www.oecd.org/tax/beps/pillar-two-GloBE-rules-fact-sheets.pdf>, 검색일자: 2021. 12. 30.

418) 2021년 12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76억 1,750만원임

- GloBE 이익·손실은 회계상 순이익·손실이며, 고정사업장 및 도관기업의 경우 이익·손실 귀속의 특별 규정을 두고 국제해운 이익은 제외함
- 조정된 대상 조세는 당기법인세비용 중 관련 대상 조세 조정, 고정사업장·도관기업·CFC 등의 대상 조세 배분, 일시적 차이의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를 통하여 산정함
- 추가세액 산정 시 실질 기반 소득 제외(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를 규정하여 구성기업의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 비율을 순GloBE 이익에서 공제하며 10년간 점진적으로 비율을 인하함
- 최소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고, 소수지분 구성기업은 별도로 실효세율을 산정함
- ▶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GloBE 규칙을 적용하여 과세방식을 정함
 - IIR은 추가세액을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하도록 하고, 하향식 접근방법을 통해 상위 모기업 관할국부터 IIR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UTPR은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구성기업의 관할국으로 과세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각 관할국은 비용공제 부인 등으로 국내법상 조정을 시행함
- ▶ 합병·인수 등 사업구조 개편, 공동기업 및 투자펀드 등과 관련한 특별규정, GloBE 규칙이 처음 적용되는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및 여타 조세행정 관련 규정을 둠

2 EU

가.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제출

[조세동향 21-07호]

-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법안 패키지를 제출함⁴¹⁹⁾

419) 유럽 집행위원회, "Commission proposes new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revision of the Energy Taxation Directive, as part of the EU Green Deal," 2021. 7. 14.,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commission-proposes-new-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and-revision-energy-taxation_en, 검색일자: 2021. 7. 20.;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Green Deal: Commission proposes transformation of EU

-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및 에너지 과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CBAM은 EU의 강화된 기후 목표에 따른 비EU 회원국으로의 탄소누출⁴²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CBAM이 적용되는 EU 수입업체는 매년 수입제품에 내재된 총 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함⁴²¹⁾
 - ▶ 다만, 수입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미 탄소가격이 지불되었음을 수입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수입업체의 비용에서 제외됨
 - ▶ CBAM 인증서 가격은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됨
 - ▶ 2023년부터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부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는 전 부문에 도입할 예정임
- ▣ 에너지 과세지침 개정안은 에너지 제품에 대한 과세를 EU 에너지 및 기후 정책과 일치시키고 청정기술을 촉진하며,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⁴²²⁾
 - ▶ 환경에 가장 유해한 연료에 가장 많이 과세되도록 에너지 제품 분류방식을 단순화함
 - ▶ 특정 제품 및 난방에 대한 과세 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화석연료가 최소 세율 미만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
 - ▶ EU 내 항공 및 해상운송, 어업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완전 과세 면제를 폐지함

economy and society to meet climate ambitions,” 2021. 7.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3541, 검색일자: 2021. 7. 20.

420) 탄소누출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강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의미함(유럽 집행위원회, “Carbon leakage,”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allowances/leakage_en, 검색일자: 2021. 7. 20).

421) 유럽 집행위원회,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reen-taxation-0/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검색일자: 2021. 7. 20.

422) 유럽 집행위원회, “Revision of the Energy Taxation Directive,”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reen-taxation-0/revision-energy-taxation-directive_en, 검색일자: 2021. 7. 20.

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법안 제출

[조세동향 21-08호]

- ▣ 2021년 7월 20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EU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4개의 입법 제안 패키지를 제출함⁴²³⁾

 - ▶ 새로운 EU 자금세탁방지 기관(AML Authority)을 설립함
 - EU의 AML/CFT 감독을 혁신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EU 기관을 설립하여 각 회원국에서 관련 EU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함
 - ▶ AML/CF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
 - 고객확인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분야를 포함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신설함
 - EU 전역에서의 현금 지급 한도를 최대 1만유로⁴²⁴⁾로 제한함
 - ▶ 기존의 자금이체에 관한 2015년 규정(Regulation 2015/847/EU)을 개정하여 암호화된 자산의 이체를 추적할 수 있게 함
 - ▶ AML/CFT에 관한 기존 지침인 Directive 2015/849/EU는 폐지하며, 새로운 지침⁴²⁵⁾으로 대체함

423) 유럽 집행위원회,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legislative package," 2021. 7. 20.,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10720-anti-money-laundering-countering-financing-terrorism_en#acla, 검색일자: 2021. 8. 13.; 유럽 집행위원회, "Beating financial crime: Commission overhauls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rules," 2021. 7. 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3690, 검색일자: 2021. 8. 13.; IBFD,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New Anti-Money Laundering Rules," 2021. 7.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2_e2_1.html, 검색일자: 2021. 8. 13.

424)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9만원임

425) 유럽 집행위원회,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echanisms to be put in place by the Member States for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repealing Directive(EU) 2015/849," 2021. 7. 20., https://ec.europa.eu/finance/docs/law/210720-proposal-amld6_en.pdf, 검색일자: 2021. 9. 3.

다. BEPS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지침 입법 계획

[조세동향 21-10회]

- ▼ EU는 2021년 10월 13일, BEPS OECD/G20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EU 지침(directive)을 입법할 계획임⁴²⁶⁾

 - ▶ EU 집행위원회는 OECD/G20이 2021년 10월 8일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12월까지 입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EU 직접세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고 OECD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면 신속하게 지침을 공표할 것이며, 필라 2 내용을 입법하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함
 - EU 27개국 중 사이프러스(Cyprus)를 제외한 26개국이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국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에 합의함
 - ▶ 지침은 BEPS 필라 2 협정에 포함된 기업들이 관할국별로 납부하는 실효세율을 공표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라. CbCR 지침의 공식 채택 최종 승인

[조세동향 21-11회]

- ▼ EU 의회는 2021년 11월 11일, CbCR 지침(Directive)의 공식 채택을 최종 승인하였음⁴²⁷⁾

 - ▶ EU 및 EU 역외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이 EU 내에서 지점 및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최근 2개의 연속된 회계연도의 연결 총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⁴²⁸⁾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 및 여타 조세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426) European Commission, "Statement by Commissioner Gentiloni on the G20's endorsement of the agreement on international taxation reform,"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1_5247, 검색일자: 2021. 10. 21.; Bloomberg, "EU to Start Process of Implementing Global Tax Pact in December,"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50HIFGO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MWY1YzQ3ZGRiZjQ1NGQwODdkNGZlNzU2MjFmZmRjNGMiXV0-e7f43ada1039a46e00301f552cfe76699c02a43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10. 21.

427) EY, "European Parliament provides final approval needed for formal adoption of public CbCR Directive," https://www.ey.com/en_gl/tax-alerts/european-parliament-provides-final-approval-needed-for-formal-adoption-of-public-cbcr-directive, 검색일자: 2021. 11. 29.

428) 2021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01억 7,500만원임

- 상세 관련 정보는 모든 27개 EU 회원국 및 조세 목적을 위한 EU 비협력 지역 목록 부록 1, 2에 포함된 관할국에 공개되어야 하며, 다른 관할국에는 총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으로 충분함
- ▶ 지침은 서명 후 관보에 공표되고 그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발효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은 지침을 내국법으로 입법해야 함
-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12일 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은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CbCR과 관련한 Action 13에 기초한 것으로 OECD/G20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의무를 요구함
 - ▶ 해당 제안은 2019년 EU 경쟁이사회(COMPET)에서 동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21년 2월 25일 다시 제안되어 회원국의 필요한 동의를 얻어 2021년 6월 1일 지침 규정과 관련한 최종 협의를 마쳤음
 - ▶ EU 경쟁이사회는 2021년 9월 28일 아래 두 가지의 중요한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종 협의의 내용과 유사하게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하기로 함
 - 조세 목적을 위한 EU 비협력 지역 목록의 부록 2에 포함된 관할국 정보의 국가별 보고 기준 명확화
 -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산점

마. 디지털세 필라 2 실행지침 발표

[조세동향 21-12호]

-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22일,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과 관련한 실행지침(directive)을 발표함⁴²⁹⁾
 - ▶ 필라 2 모델규정은 각국이 공통접근 방식으로 도입하면 되지만, EU 회원국 간 일관된 적용을 위해 지침으로 규정함

42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ensuring a global minimum level of taxation for multinational groups in the Un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ystem/files/2021-12/COM_2021_823_1_EN_ACT_part1_v11.pdf, 검색일자: 2021. 12. 28.; European Commission, "Minimum corporate taxat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1/minimum-corporate-taxation_en?pk_campaign=minimum_corporate_taxation&pk_source=twitter&pk_medium=social, 검색일자: 2021. 12. 28.

- ▶ EU 집행위원회는 필라 2 모델규정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규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 기존 EU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함
 - EU 집행위원회는 필라 2 적용 대상인 EU 내 기업들에 대하여 관할국별 실효세율 공개 의무를 규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22년 내 발표할 것임
 - 지침은 필라 2 모델 규정의 도입으로 ‘EU 이자 및 로열티 지침’ 개정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 ▣ EU 지침은 전반적으로 필라 2 모델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관련 제재 규정 등 일부 추가적인 내용을 규정함⁴³⁰⁾
 - ▶ 다국적 기업그룹 이외에도 연결 총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⁴³¹⁾ 이상인 대규모 내국 기업그룹(그룹 내 모든 기업이 EU 내에 있는 경우)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
 - ▶ 다국적 기업그룹이 신고기한(15개월) 내에 추가세액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관련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어도 구성기업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담 규정을 도입하도록 함⁴³²⁾

- ▣ EU 지침은 회원국에 회원국 내에 위치한 구성기업에 대하여 내국 추가세액(domestic top-up tax)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
 - ▶ IIR을 적용하는 구성기업의 EU 회원국은 구성기업의 국외 자회사 이외에도 회원국 내 모든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이 최저한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함
 - 선택권을 행사하면 IIR을 적용하는 모기업은 관할국의 추가세액을 산정할 때 적격 내국 추가세액을 공제할 의무가 있음
 - 이 규정의 도입으로 관할국이 추가세액 전액을 최종 모기업에 징수하는 대신, 저과세 관할국에서도 추가세액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음
 - ▶ 필라 2 모델규정은 IIR을 적용하는 관할국이 국외 구성기업의 실효세율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은 모델규정의 주석서가 제공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권을 규정함

430) European Commission, “Fair Taxation: Commission proposes swift trans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minimum taxation of multinational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7028, 검색일자: 2022. 1. 3.

431) 2021년 12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76억 1,750만원임

432) KPMG,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Directive to implement Pillar Two in the EU,” 2021. 12. 22.,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1/12/etf-463-european-commission-proposes-directive-to-implement-pillar-two-in-the-eu.html>, 검색일자: 2021. 12. 30.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제2호

2021년 12월 29일 인쇄

202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